

사람이 먼저인 화성!

# 2016 시민옴부즈만 운영보고서



The Way to Better Living

길이 열리는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 목 차

<b>제1부 총 평</b> .....	3
1. 시민옴부즈만 인사말 .....	5
2. 2016년 시민옴부즈만 활동 개요 .....	6
3. 2017년 시민옴부즈만 운영방향 .....	8
<b>제2부 옴부즈만 제도 소개</b> .....	9
1. 옴부즈만 개념 .....	11
2.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 .....	11
3. 옴부즈만 기능과 특징, 효용성 .....	13
<b>제3부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개요</b> .....	15
1. 도입배경과 추진경과 .....	17
2. 시민옴부즈만 소개 .....	18
3. 시민옴부즈만 운영 일반 .....	19
4. 고충민원 처리절차 .....	20
<b>제4부 시민옴부즈만 운영성과</b> .....	23
1. 고충민원 처리 현황 .....	25
2. 옴부즈만 직접조사 결정 민원 처리현황 .....	29
3. 기타 민원처리 현황 (이첩·각하·상담처리 등) .....	35
<b>제5부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주요 처리사례</b> .....	41
1. 그린피아 호텔과 정남IC간 도로확장 계획에 따른 건의 .....	43
2. 그린벨트 내 탈의실 설치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요청 .....	45
3. 보안등 전구 교체 요청 .....	49
4. 양육수당 소급지급 요청 .....	50
5. 개발행위허가 준공 관련 조속한 처리 요청 .....	54
6. 도로점용료 과다부과 해결 요청 .....	58
7.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피해 방지 및 도로이용 관련 민원 .....	60

# 목 차

8. 취득세 부과 취소 요청 .....	63
9. 매향리 횡집상가 영업권 및 생존권 보장 요구 .....	65
10.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청에 따른 진단서 제출 관련 부당한 처리 시정 요청 .....	67
11. 다세대주택(해피하우스) 진출입로 문제해결 요청 .....	69
12. 농지 농업용수 보장 요청 .....	72
13.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버섯재배사 영업보상 요구 .....	74
14. 압류등기 말소 신청 .....	77
15.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부당 .....	79
16. 부동산 압류해제 요청 .....	83
17. 공장신설 승인 신청 관련 조속한 처리 요청 .....	85
18. 지하수 고갈에 따른 피해발생 및 대책 요망 .....	93
19. 생활오폐수로 인한 피해방지 요청 .....	95
20. 부적법하게 말소된 건축물대장 복원 요청 .....	97
21. 정당한 권원없이 국유지로 편입된 개인 사유지 소유권 회복 요청 .....	102
22.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한 개발행위허가 어려움 호소 및 해결 요청 .....	105
23. 수원~인천 간 복선전철사업으로 인한 완충녹지 해제 요청 .....	108
24. 고온항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국유지상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 요구 .....	110
25. 동탄2 신도시 유보지내 가림막 및 휨스 설치 요청 .....	114
26.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부당 .....	116
27. 도로 방음벽 높이 변경 요청 .....	118
28.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관련 이용불편 시정 요청 .....	119
29. 동탄보건지소 이용불편 호소 및 모자보건실 개선 요청 .....	121
30. 상수도 관로 재설치 요청 .....	123
<b>제6부 부 록</b> .....	<b>125</b>
1. 언론보도 등 홍보사항 .....	127
2.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35
3.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142
4.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세칙 .....	146

# 제 1 부

## 총 평





# 제1부 총 평

## 1. 시민옴부즈만 인사말

2015년 6월 1일 출범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이 설립된 지 1년 7개월이 지나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열린 소통창구로의 정착’을 목표로 활동했던 지난 해의 다소 아쉬웠던 활동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출범 3년차를 맞아 금년은 ‘시민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목표로 고충민원의 적극적 해소는 물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찾아내 개선하여 민주적 시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더욱 매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의 시민옴부즈만 활동성과를 되돌아보면, 시민옴부즈만은 총143건의 민원을 직접 상담하여 그 중 62건을 즉시 상담 해소 등으로 처리하였고, 나머지 81건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그 중 34건을 직접 조사·처리하였으며, 나머지 청소, 수도 등 생활불편 민원 34건은 해당부서에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담당부서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직접 조사한 34건 중 2016.12.31.현재 조사가 완료된 32건의 처리현황을 보면, 시정권고 7건, 의견표명 3건, 조정·합의 4건, 심의해소 7건 등 21건은 시민고충이 해소·인용처리 되어 65.6%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고, 의견표명이나 시정권고 사항의 경우 집행부서의 수용률은 87.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시민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목표로 보다 적극적으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자 면밀한 현장조사와 긍정적이고 시민 친화적 법 해석 및 판단으로 ‘신뢰받는 옴부즈만, 억울함이 없고 열린 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이 구현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화성시민께 드리며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2016년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공표합니다.

2017. 2.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일동

## 2. 2016년 시민옴부즈만 활동 개요

인구 100만 대도시로의 발전을 목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시는 각종 개발수요 증가 및 인구유입으로 복잡다기한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6월 시민옴부즈만이 출범하게 되었다.

제1기 시민옴부즈만은 3명으로 감사원 공공감사국 부이사관을 역임한 박종풍 위원이 대표 시민옴부즈만을 맡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화성시의회 의장 출신인 김진환 위원과 화성서부경찰서 경무과장을 역임한 조중익 위원은 우리시 지역사정에 밝고 대시민 소통능력에 강점이 있어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다하고 있다.

시민옴부즈만은 반 상근(주20시간) 근무를 하며 매주 월요일은 합동근무를 하고 있다. 또한 고충민원 처리는 주간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운영회의를 통하여 조사여부 결정 및 주관 옴부즈만을 선정하고 민원접수 후 처리기간 60일 이내 조사를 완료하여 조사결과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게 된다.

한편, 운영 2년차인 2016년은 시민의 열린 소통창구로서의 확고한 정착을 목표로 고충민원 해결에 매진하여 전년 대비 직접조사율(32% ⇨ 42%)과 인용률(37.5% ⇨ 65.6%)이 개선되어 나름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 냈다. 이는 민원처리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시민들에게 공정한 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고 행정기관에는 고질적인 관료주의의 한계에 벗어나 자기시정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적으로는 시민의 권익보호와 우리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시민옴부즈만 제63차 운영회의 (2016.11.28.)



고충민원 상담 (2016.12.26.)

2016년 접수 처리한 민원은 총 81건으로 그 중 내용이 단순하고 생활불편 해소 요구 등 해당부서에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민원(34건)은 이첩 처리하였고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열거된 직무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및 사인간의 권리관계 등 관련 민원(13건)은 각하 하였으며, 나머지 34건을 시민옴부즈만이 직접 조사 처리하였다. 또한 접수방식별 현황을 살펴보면 방문 접수(35건), 인터넷 접수(35건), 팩스 접수(6건), 우편 접수(5건) 순이었다.

직접조사 민원은 주로 도로교통 분야, 인허가 분야 관련 사항이 많았고 전체 34건 중 21건이 인용처리 되었으며 그 중 양육수당 소급 지급 요청 및 개발행위 준공 관련 조속한 처리 요청, 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버섯재배사 영업보상 요구, 舊화성군에 의한 원인불명의 압류등기 해제 요구 등 10건에 대하여는 의견표명·시정권고를 하였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피해대책 요청 및 생활 오폐수로 인한 피해방지 요청 등 4건에 대해서는 관련 이해당사자간 조정·합의 처리하였고 동탄 보건지소 모자보건실 개선 요청 등 7건은 심의과정에서 그 민원이 해소 처리되었다.

고충민원 처리 시 시민의 입장에서 그 원인을 파악하여 행정기관의 부적절한 관행 및 담당공무원의 소극적인 법령해석 관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다. 물론 일부 민원은 그 내용이 타당하지 않고 무리한 주장인 경우도 있었고, 다수 이해관계인의 입장이 달라 중재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민원인들은 시민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는 시민옴부즈만이 행정통제의 한 축으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시민권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시는 비교적 다른 시군에 비해 옴부즈만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어 남양주시, 여수시 등에서 우리시 옴부즈만 운영현황 및 방법 등에 대해 벤치마킹 한 바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지방옴부즈만 협의회도 가입하여 지방옴부즈만 제도 확산에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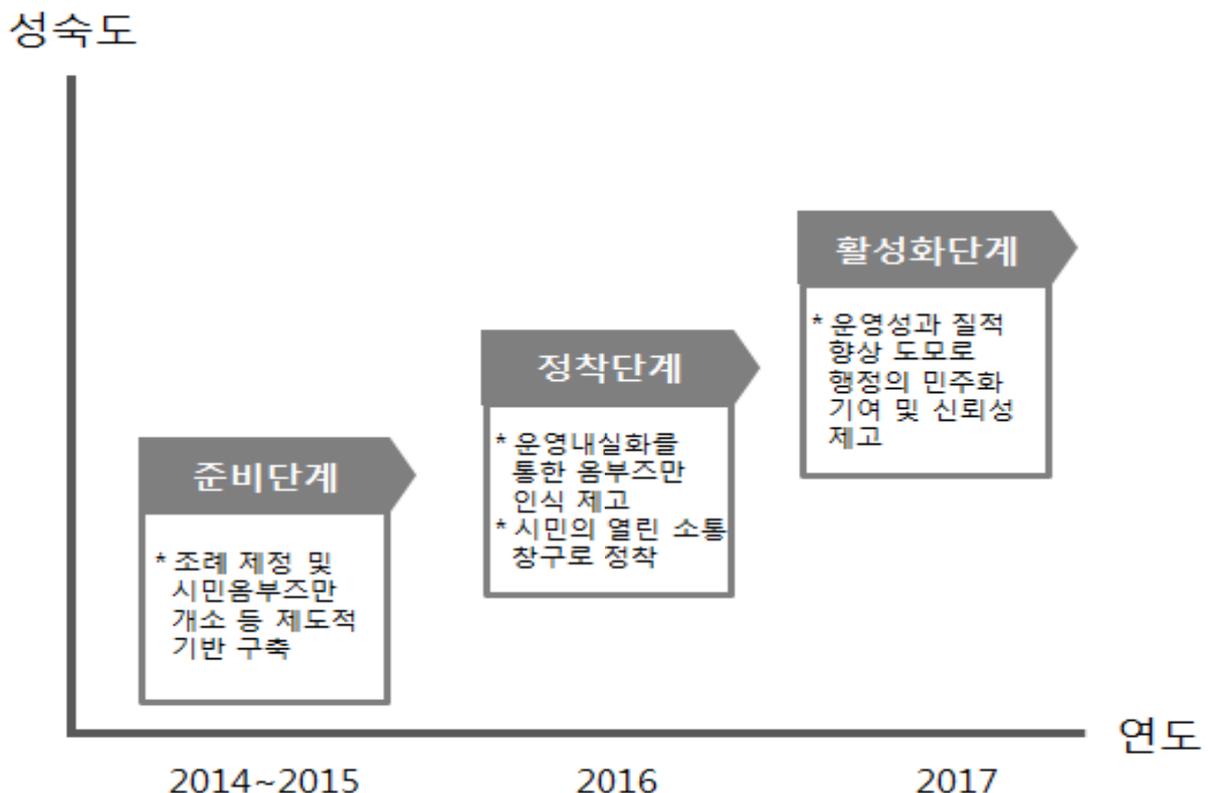
우리시 옴부즈만 운영현황 벤치마킹\_여수시 (2016.09.01.) 지방옴부즈만 협의회 구성 관련 간담회 참가 (2016.12.08.)

### 3. 2017년 시민옴부즈만 운영방향

2016년은 시민의 열린 소통창구로의 정착을 위한 노력의 한해였다면 2017년에는 시민옴부즈만 활동의 실질적 운영성과 확보와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고충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통제의 한 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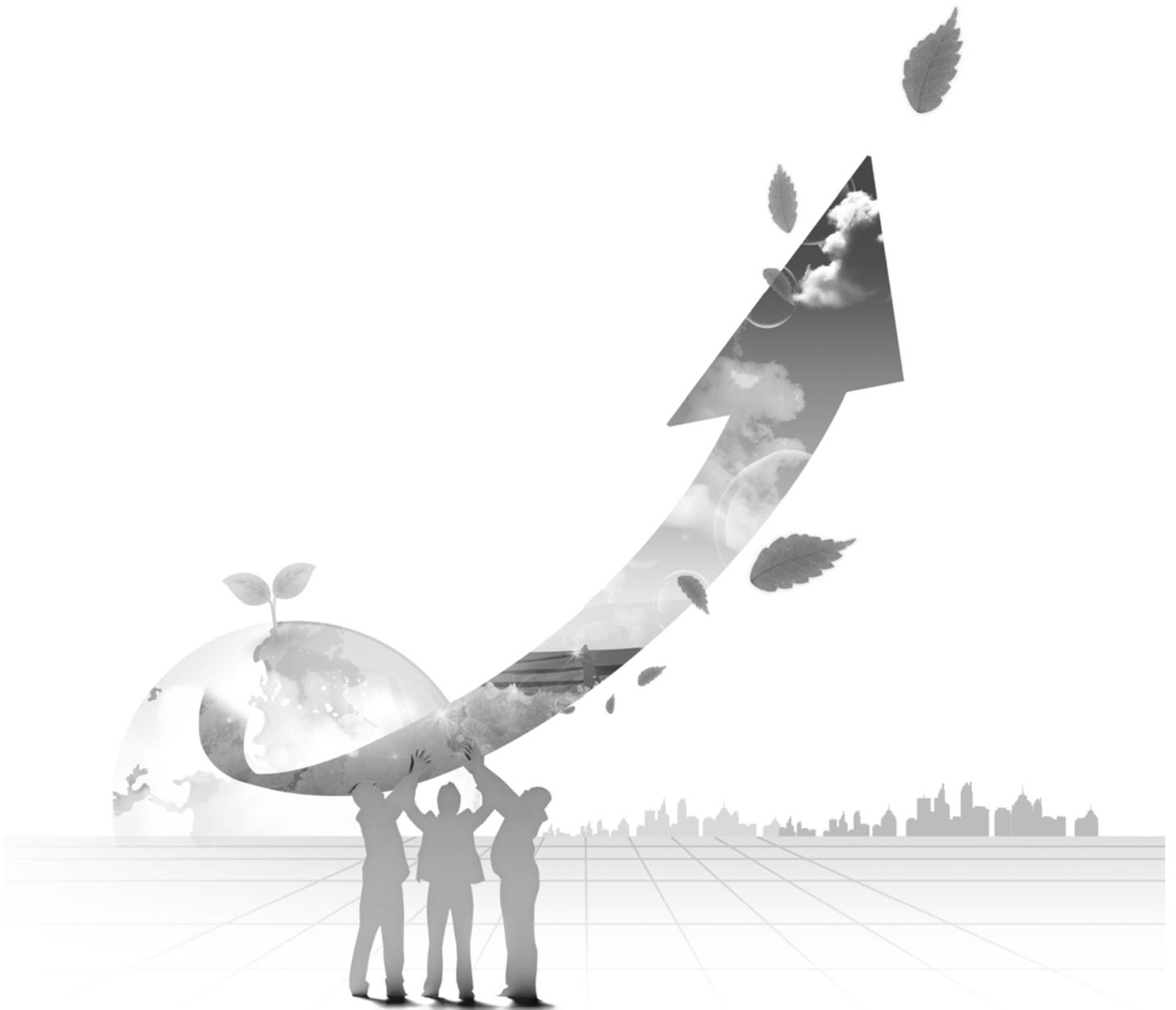
이에 2017년은 시민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단계로 규정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시민옴부즈만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대한 수용률을 제고하여 실질적으로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실시 및 적극적인 홍보 등을 전개하여 시민 및 행정 내부의 옴부즈만에 대한 인지도를 넓혀 나가고 국민권익위 주관 지방옴부즈만 협의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이 한층 더 진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방향 로드맵



## 제 2 부

# 옴부즈만 제도 소개





## 제2부 옴부즈만 제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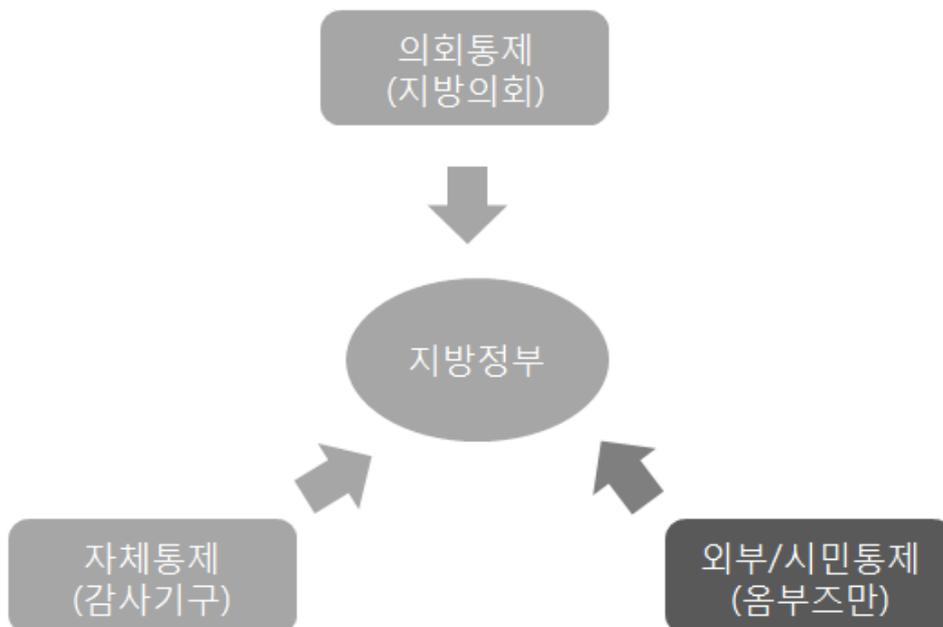
### 1. 옴부즈만 개념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뜻이며,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또는 비사법적 시민권의 보호제도임.

### 2.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

#### (1) 행정의 권한 증대 및 다양화·복잡화·전문화

복지국가 지향에 따른 행정권 강화 현상은 행정재량권의 확대를 초래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고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입법부나 사법부는 행정의 전문성 및 정보가 부족하고, 정당·압력단체(pressure group) 등은 상대적으로 권한과 기능이 약화되어 행정통제 및 견제 기능 미흡하며, 특히 행정재량의 영역은 복잡·다양하여 의회에서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개별적이며, 사법제도로 다루기에는 추상성을 띠고 있어 통제가 필요함.



(2) 기존 권익침해 구제제도의 한계

사법적 구제수단의 경우 사후통제 수단으로 소송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나 방법 또한 까다롭고 복잡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의 시민권익 침해 현상이 증가하면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기존의 권리구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구 분	옴부즈만	행정심판	행정소송
목 적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불편·부담을 받은 경우 권익구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행정 감독	행정작용에 의하여 침해된 시민의 권익구제
성 격	비쟁송제도	쟁송제도	쟁송제도
기 간	제한 없음	행정처분후 90일 이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범 위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 부작위, 불편·부담 등 포괄적	행정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	행정의 적법성 유무 (재량권 일탈·남용 포함)
접근성	접근성 높음	행정소송보다는 접근이 용이	접근성이 매우 어려움
비 용	무료	행정소송보다는 경제적 부담은 적은 편	경제적 부담이 높음

(3) 행정의 자기시정을 통한 신뢰성 확보

지방옴부즈만이 지자체 관할 내의 고충민원에 대해 전문적·중립적 시각에서 판단하여 시민과 행정 양자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행정의 자기시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행정 간 완충 역할 및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장치로 기능할 수 있으며, 특히 법규만능주의, 소극적 행정처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지자체가 신속히 시정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심리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4) 고객중심의 행정가치 대두

과거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주로 국가 통치행위의 일부로 간주되어 왔으나, 국가도 공공재 제공의 한 주체이며 국민은 ‘공공 서비스 소비자’라는 시각이 대두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객중심의 행정 가치는 국민인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져, 이를 위한 고객 현장제도가 널리 확산·보급됨.

### 3. 옴부즈만 기능과 특징, 효용성

#### (1) 옴부즈만의 기능

##### ① 행정통제 기능

옴부즈만은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이를 조사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

##### ②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기능

옴부즈만은 행정과 시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조정역할을 함으로써 사법구제 제도의 한계로 인해 양자 간 해결할 수 없는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비용의 부담 없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조사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도 있음.

##### ③ 행정개혁 기능

행정의 속성상 한번 결정되면 그 결정 내용을 선례로 삼아 이를 계속 지속하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어 행정기관 스스로 개선이 어려우며, 옴부즈만은 이러한 관성을 깨트리 위법·부당한 행정 관행이 개선되도록 자극을 줄 수 있어 행정개혁을 이루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특히, 의견표명·시정권고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부드러운 법률(soft law)”의 적용을 통해 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등을 할 때에 처리기준이 될 수 있으며,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 행정 행태를 바로잡는 순기능이 있음.

##### ④ 행정정보의 공개 기능

옴부즈만은 제기된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정보공개 요청 시 신청인에게 열람·복사하여 줄 수 있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

##### ⑤ 민주적·정치적 대변(代辯) 기능

계층·부문·지역·집단 간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가질 수 있고, 이해가 상충될 경우 행정기관은 대체로 힘 있는 다수를 대표하는 결정을 하게 됨. 이러한 과정에서 소수집단, 소외 및 취약계층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옴부즈만은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

## (2) 옴부즈만의 특징

- 옴부즈만은 행정부 및 입법부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짐.
- 옴부즈만은 법률·행정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이 뛰어난 인격자 중에서 선출.
-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처분과 달라 행정작용을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취소 및 변경을 관계기관에 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음.
-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접근 용이성을 가지고 있음.
- 민원을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기 때문에 대개 무료.
- 옴부즈만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
- 대부분 개인의 고충민원 처리와 관계됨.

## (3) 옴부즈만의 효용성

- 지방단위에서 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옴부즈만의 존재만으로도 옴부즈만이 없을 때보다도 더 신중한 행정행위를 할 것이 예상됨.
- 지방의회는 행정절차와 실무를 감독하고 개선하는데 더욱 용이하게 되어 이를 더 관찰하고 개선할 수 있음.
- 옴부즈만은 행정행위로부터 기인하는 대중의 불만과 어려움을 감소시키며, 시민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도울 수 있음.
- 시민들이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상당부분 관계를 맺고 있는 관료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 인식을 감소키는 효과가 있음.
- 특히 지방자치 단체가 자기 사무에 대한 고충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지역차원의 자율적 해결을 유도해 내고, 이로 인해 중앙으로부터 독립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음.



## 제 3 부

#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개요





## 제3부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개요

### 1. 도입배경과 추진경과

#### (1) 도입배경

- 우리시는 급속한 개발과 인구유입으로 10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행정구제 제도만으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 직제와는 별개의 독립적 조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추진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 (2) 운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세칙」

#### (3) 추진경과

- 2013.08.19.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설치 기본방안 수립
- 2013.12.31.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 2014.06.27.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공포
- 2015.02.27.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공포
- 2015.03.11.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015.03.12. : 시민옴부즈만 공개모집 공고
- 2015.04.17. :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통한 시의회 동의대상자(위촉예정자) 선정
- 2015.05.20. : 시의회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통과
- 2015.05.26. : 제1기 시민옴부즈만 위촉
- 2015.06.01. : 시민옴부즈만 개소
- 2016.02.11. : 2015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시장)
- 2016.02.22. : 2015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시의회)
- 2017.01.09.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공포

## 2. 시민옴부즈만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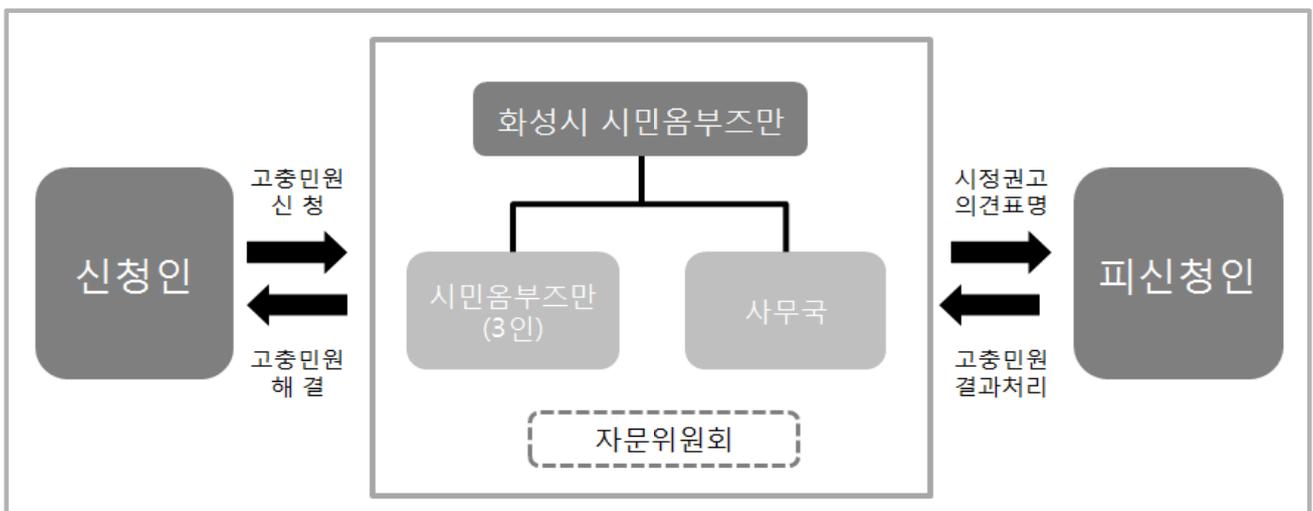
### (1) 시민옴부즈만 구성개요

- 시민옴부즈만 수 : 3명
- 임가·신분 : 2년(1회에 한해 연임가능), 비상임 명예직
- 직 무 : 고충민원 상담 및 조사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

### (2) 시민옴부즈만 1기 구성현황

옴부즈만		주요경력	위촉기간
박종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원 공공감사국 등 부이사관</li> <li>○ 재단법인 국가관세정보망 연합회 상임감사</li> </ul>	2015.06.01. ~ 2017.05.31.
김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성시의회 부의장</li> <li>○ 화성시의회 의장</li> </ul>	2015.06.01. ~ 2017.05.31.
조종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성서부경찰서 경무과장</li> <li>○ 화성동부경찰서 동탄, 안용 지구대장</li> </ul>	2015.06.01. ~ 2017.05.31.

### (3) 시민옴부즈만 운영체계



### 3. 시민옴부즈만 운영 일반

#### (1) 시민옴부즈만의 자격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2) 시민옴부즈만의 임기 및 구성

-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옴부즈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하며, 화성시 시의회 동의 후 시장이 위촉

#### (3) 시민옴부즈만의 직무

- 주민들의 권익 보호·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에 대한 조사·처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가 옴부즈만에게 위임·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 기타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4) 시민옴부즈만 직무관할

-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5) 시민옴부즈만의 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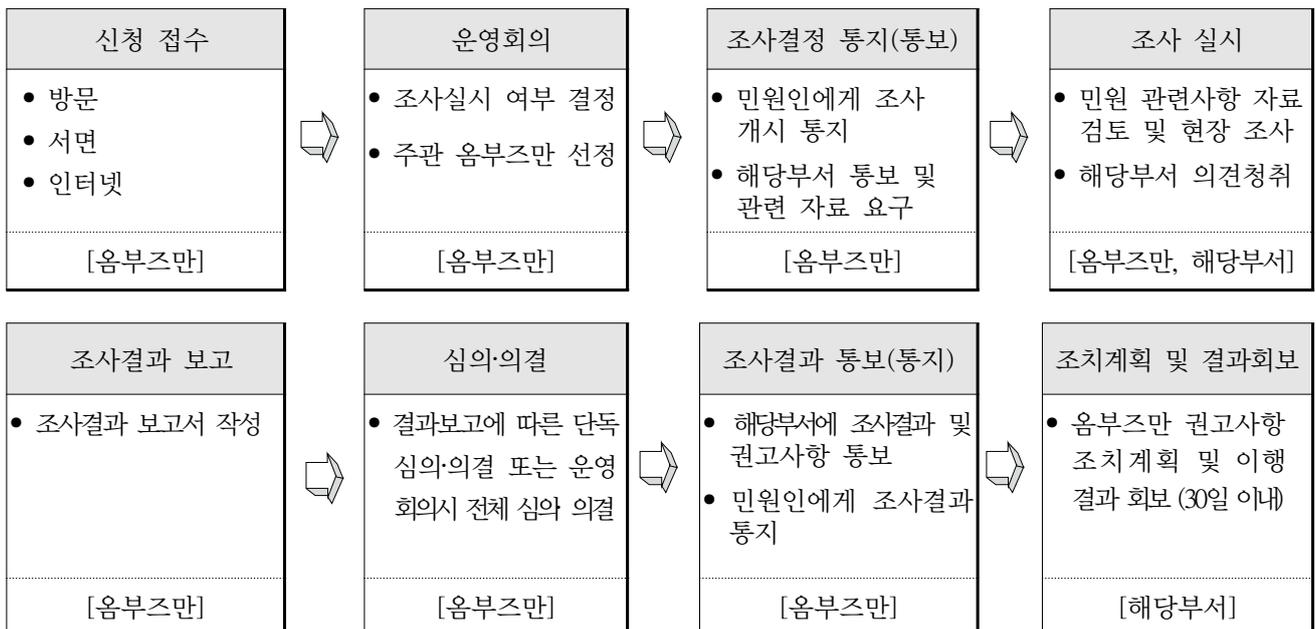
- 관계 소속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 조사내용에 대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관계 소속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감사의뢰

## 4. 고충민원 처리절차

### (1) 고충민원의 개념

구 분	일반적 정의	구체적 정의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 (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li> <li>○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 지연 등 행정기관 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li> <li>○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 요구</li> <li>○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li> </ul>

### (2) 고충민원 처리절차



### (3) 고충민원 신청방법

- 직접방문, 모사전송 및 우편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시민옴부즈만실(본관 1층)
- 인터넷 신청 : 고충민원 게시판에서 신청 가능

( www.hscity.net : 홈 > 시민참여 > 시민옴부즈만 > 고충민원 신청 )



[ ※ 시 홈페이지 고충민원 신청 게시판 화면 ]

- 문의전화 : 031-369-3704, 3227 (팩스 031-369-1788)

### (4) 고충민원 제외(이첩·각하) 대상

- 단순 일반민원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만 직무관할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5) 고충민원 처리결과 유형

구 분	직접조사 여부	내 용
시 정 권 고	여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의 견 표 명	여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도 개 선	여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 정	여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원에 의하여 조정
합 의	여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또는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 성립된 경우
기 각	여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 의 해 소	여	신청인의 요구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신속히 해결방안을 안내하여 해소되거나 피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해소된 경우
심 의 종 결	여	신청인의 요구사항 관련 행정기관에서 수용하기가 어렵거나 뚜렷한 해결방안 제시 또는 관계인과 조정·중재가 불가하여 조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이 첩	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첩하는 경우
각 하	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여 각하하는 경우
상 담 안 내	부	민원상담 과정에서 단순민원 내용으로 해당부서로 안내 또는 관련 부서 담당자 연계 처리 하는 경우
상 담 해 소	부	민원상담 과정에서 단순민원 내용으로 해당부서 담당자 의견청취 및 관계 법령 확인을 통해 민원내용을 즉시 해소하는 경우

## 제 4 부

# 시민옴부즈만 운영성과





## 제4부 시민옴부즈만 운영성과

### 1. 고충민원 처리 현황

#### (1) 민원 접수 및 접수의 상담처리 현황

접수(계)	직접조사	이첩	각하	접수 외 상담처리(계)	상담안내	상담해소	총 계
81	34	34	13	62	61	1	143

#### (2) 접수 방식별 현황

총계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81	35	35	5	6

#### (3) 월별 접수현황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81	8	2	8	7	7	5	10	11	3	9	4	7

#### (4) 민원 분야별 접수현황

총계	도시 계획	도로 교통	환경	위생	안전	세무 회계	복지 교육	인허 가	공원 체육	불법 행위	상하 수도	일반
81	3	21	7	1	1	5	5	12	1	3	1	21

#### (5) 직접조사 결정 민원 처리현황

직접조사 (계)	완료	진행	조사완료 (계)	취하	기각 (심의종결)	심의 해소	합의 (조정)	의견 표명	시정 권고
34	32	2	32	2	9	7	4	3	7

(6) 옴부즈만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대한 관련부서 수용여부 현황 : 수용률 87.5% (수용 7, 불수용 1, 진행 중 2)

연번	민원내용	시정권고(의견표명)	관련부서 회신사항	수용여부	옴부즈만
1	신청인: 황○○	<b>【시정권고】</b>	도시정책과	부	김진환
	그린벨트 지역인 화성시 비 봉면 남전리 ㉠㉠번길 ㉡㉡번지에 탈의실 설치 관련 담당공무원의 법리해석 혼선에 따른 부당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아 이의 취소를 요청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과된 이행강제금(금 2,070,900원) 중에서 불법건축물 부분(금 1,597,500원)은 부과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함	신청인이 행정소송 (2016구합 61540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처분 취소)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 (1심 신청인 패소, 2심 진행중)		
2	신청인: 이○○	<b>【의견표명】</b>	여성보육과	여	박종풍
	'15년 3월 출생신고 및 '15년 5월 전입신고 시 양육수당에 대해 안내를 못받아 양육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이를 소급 지급해 줄 것을 요청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신청일이 아닌 전입일로부터 소급하여 8개월분 양육수당 160만원을 지급하도록 의견 표명함	미지급된 양육수당 160만원을 전입일로부터 소급하여 2016. 5.25. 지급 처리함		
3	신청인: 한○○	<b>【시정권고】</b>	허가민원2과	여	조중익
	화성시 팔탄면 울암리 ㉠-㉡번지에 개발행위 준공신청을 하였는데, 주변 민원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니 이의 해결을 요청	당초 개발행위허가 내용대로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인접 토지 배수피해 민원 관련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 또한 확인하기 어려워 개발행위 준공을 지연처리 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아 조속히 준공 처리하도록 시정 권고함	시민옴부즈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2016.3.26. 개발행위 준공 처리함		
4	신청인: 차○○	<b>【시정권고】</b>	건설과	여	박종풍
	태안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관련 화성시 송산동 ㉠㉠번지 일원에서 20년간 버섯재배를 해왔는데,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여 영업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	해당 버섯재배사는 '86년 1월 이전 건축되어 버섯 재배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보칙 (2007.4.12.) 개정으로 '89년 1월 이전 무허가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영업보상을 해줄 것을 시정 권고함	시민옴부즈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신청인에게 영업보상비(금 12,791천원)를 2016.10.05. 지급결정 함		

연번	민원내용	시정권고(의견표명)	관련부서 회신사항	수용여부	옴부즈만
5	신청인: 이○○	<b>【시정권고】</b>	자치행정과(징수과)	여	박종풍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번지는 1987.05.27. 화성군에 의해 원인불명하게 압류되었고 이의 원인을 밝혀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	재정시효 5년이 경과하여 압류시효가 소멸되었고 2015년 화성시 결산서상 해당 채권이 부존재 함으로 즉시 압류 해제함이 타당하고 유사민원에 대해 처리방침을 정할 것을 시정 권고함	사무조정 검토 결과,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의 사무와 세외수입 체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징수과에서 처리토록 지정하였고 해당 부동산은 2016.07.06. 압류 해제함		
6	신청인: 김○○	<b>【시정권고】</b>	자치행정과(징수과)	여	박종풍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번지는 1964.12.30. 화성 군에 의해 압류되었는데, 오래전 일이라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이를 해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 요청	재정시효 5년이 경과하여 압류시효가 소멸되었고 2015년 화성시 결산서 상해당 채권이 부존재 하므로 즉시 압류 해제함이 타당하고 유사민원에 대해 처리방침을 정할 것을 시정 권고함	사무조정 검토 결과,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의 사무와 세외수입 체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징수과에서 처리토록 지정하였고 해당 부동산은 2016.12.23. 압류 해제함		
7	신청인: 박○○	<b>【시정권고】</b>	허가민원 1과	진행중	박종풍
	우정을 먹우저수지 부근에 공장 신설 승인신청 관련 담당부서 요구대로 수계 흐름에 반대방향으로 배수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제한규정 등을 이유로 승인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조속히 공장승인이 될 수 있도록 요청	먹우저수지 반대방향으로 돌리는 자연배수로를 설치하여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 할 경우, 저수지 상류에 해당 하지 않아 농어촌정비법 제22조를 이유로 공장 설립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조속히 승인처리하도록 시정 권고함	2016.09.28.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결과, 부결되었고 2016.12.22.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 의뢰하여 관련법령 해석 이견에 대해 검토 진행 중		
8	신청인: 서○○	<b>【의견표명】</b>	건축과	여	박종풍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번지에 토지분할이 있었고 그에 따른 실제 현황과 부합 되지 못한 채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 불법건축물이 되었으니 원래대로 건축물 대장을 복원해 줄 것을 요청	'94년부터 실제 존재한 건축물이 잘못된 지번에 등재된 사유 등으로 말소된 건축물 대장을 실제와 부합되도록 복원시키거나 또는 양성화 조치 등을 통해 건축물 대장을 신규 등록할 수 있도록 의견 표명함	건축주 본인이 신청에 의해 철거신고가 접수되어 처리된 것으로 절차상 행정 오류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복원은 불가하나 해당 건축물 양성화 신청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할 시 건축물대장 생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연번	민원내용	시정권고(의견표명)	관련부서 회신사항	수용여부	음부즈만
9	신청인: 박○○	<b>【의견표명】</b>	허가민원2과(도시정책과)	진행중	조중익
	신규 공장증설 예정부지가 첨단업종만 허용토록 하여 공장승인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의 해결을 요청	신규 공장증설이 예정된 향남읍 상신리 ㉠㉠번지는 첨단업종만 입지 가능한 것인데, 기존 공장이 첨단 및 비첨단업종으로 혼재되어 있지만 이를 구분 분리해서 첨단업종으로 개발 행위허가 검토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의견 표명함	상급기관 질의를 통한 기술적 검토 진행 중		
10	신청인: 양○○	<b>【시정권고】</b>	해양수산과	여	박종풍
	고온항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국유지(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번지)상 무허가 건물(난방, 가스, 전기시설 포함 / 32㎡)에 대한 보상 요구	무허가 건물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당초 보상계약을 반복하여 보상이 불가하다고 한 것은 신의성실 및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손실보상을 하도록 시정 권고함	시민음부즈만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2017.01.06. 관련법에 의거 손실보상금(금7,146,6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함		

## 2. 읍부즈만 직접조사 결정 민원 처리현황

연번	접수 일자	접수 유형	신청인	민원제목	처리결과	주 관 읍부즈만	완료 여부
1	1. 5.	방문	신○○	그린피아 호텔과 정남IC간 도로확장 계획에 따른 건의	신청인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도로선형이 조정된 계획(안)으로 도로과와 조정 해결	박종풍	완료 (조정)
2	1.12.	방문	황○○	그린벨트 내 탈의실 설치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요청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과된 이행강제금(금 2,070,900원) 중에서 불법건축물 부분(금 1,597,500 원)은 부과 취소할 것을 권고	김진환	완료 (시정권고)
3	1.22.	인터넷	최○○	보안등 전구 교환 요청	2016년 우정읍 가로등(보안등) 연간 보수업체 선정 및 계약완료됨에 따라 2016.02.19.해당 보안등을 보수 처리하여 민원 해소함	박종풍	완료 (심의해소)
4	1.25.	인터넷	이○○	양육수당 소급지급 요청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신청일이 아닌 전입일로부터 소급하여 8개월분 양육수당 160만원을 지급하도록 의견 표명함	박종풍	완료 (의견표명)
5	3. 9.	방문	한○○	개발행위허가 준공 관련 조속한 처리 요청	당초 허가사항대로 준공처리가 이루어졌고 인접토지에 배수피해 관련 인과관계도 입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조속한 준공처리를 해줄 것을 시정 권고	조종익	완료 (시정권고)
6	3.22.	방문	권○○	도로점용료 과다부과 해결 요청	신청인의 도로점용료에 대한 1/N 부과 요구를 수용하고 관련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여 당초 점용료 38,049천원을 7,665천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되어 민원 종결함	박종풍	완료 (합의)
7	3.31.	방문	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 피해 방지 및 도로이용 관련 민원	축대와 성토사면에 대한 사면 안정화 조치가 되어 안정된 상태이며 주변 피해를 유발한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또한, 폐쇄된 기존 마을안길을 대체할 도로가 존재하여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민원 종결함	김진환	완료 (기각)

연번	접수 일자	접수 유형	신청인	민원제목	처리결과	주 관 옴부즈만	완료 여부
8	4. 7.	우편	김○○	취득세 부과 취소 요청	2013.7.5. 계약서 작성일에 아파트 매매대금 4억 7천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여 취득행위가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자진신고 한 사항으로 이후 경매로 인해 제3자가 취득했다 하더라도 취득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소지가 없어 이를 기각함	박종풍	완료 (기각)
9	4.18.	방문	조○○	매향리 횡집상가 영업권 및 생존권 보장 요구	현황상 도로이고 그 도로 이용에 대한 소유자와 횡집상가 상점주들과 분쟁을 겪고 있는 우정읍 매향리 ㉠ ㉠㉠ 번지는 조상땅 찾기 소송에 의해 당초 국유지에서 사유지로 변경되었는데, 관련 서류를 확인한 바, 공유수면에서 국유지로 신규 편입된 것으로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음을 민원인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보하고 재소송 여부에 대해 상호 협의토록 하고 종결함	박종풍	완료 (심의해소)
10	5.11.	방문	최○○	개인택시 대리운전에 따른 진단서 제출 관련 부당한 처리 시정 요청	인근 지자체 사무처리규정 등을 참고하여 관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국공립 병원 또는 종합병원 진단서 보완 요구는 부당한 행정처리로 판단하여 조사를 진행하던 중 피신청인이 즉시 시정하여 2016.5.17.대리운전 신고 처리를 하였기에 민원이 해소되어 종결함	조중익	완료 (심의해소)
11	5.30.	방문	윤○○	다세대주택(●●하우스) 진출입로 문제 해결 요청	다세대주택 진출입부지(봉담읍 와우리 ㉠㉠번지) 관련 경매로 취득한 소유자와 입주민간 민사적 분쟁으로 고충해소 차원에서 상호중재 및 대안제시 등 해결을 도모했으나 조정 불가로 민원 종결함	김진환	완료 (심의종결)
12	5.30.	인터넷	서○○	농지 농업용수 보장 요청	정수장 공사로 인해 매송면 ㉠㉠번지 농지에 농업용수 부족 시 대응책의 일환으로 관정 설치를 도모했으나 수자원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민원 종결함	조중익	완료 (심의종결)

연번	접수 일자	접수 유형	신청인	민원제목	처리결과	주 관 옴부즈만	완료 여부
13	6. 1.	방문	차○○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버섯 재배사 영업보상 요구	해당 버섯재배사는 '86년 이전에 건축되어 버섯 재배해 온 사실이 인정되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보칙(2007.4.12.) 개정으로 '89년 1월 이전 무허가 건축물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영업보상해 줄 것을 시정 권고	박종풍	완료 (시정권고)
14	6.28.	방문	이○○	압류등기 말소 신청	'87.5. 화성군에 의해 봉담읍 동화리 ㉠㉠번지는 압류되었고 이후 공매의뢰 등 체납처분 절차 없이 29년간 방치되어 관련법에 따라 재정시효 5년이 경과된 상태로 이에 압류시효 소멸이 된 것으로 판단되며 2015년 채권총괄 계산서에도 해당 채권이 부존재 하므로 압류 해제함이 타당하고 유사한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이런 민원에 대한 방침을 세울 것을 시정 권고	박종풍	완료 (시정권고)
15	7. 1.	방문	오○○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부당	해당 농지(장안면 덕다리 ㉠㉠번지)는 2012년부터 휴경상태였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휴경사유는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와는 무관해 보이고 배수관계 및 지형구조상 경작이 불가한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민원을 기각 종결함	김진환	완료 (기각)
16	7.11.	방문	김○○	압류해제 요청	'64.12. 화성군에 의해 서신면 송교리 ㉠㉠번지는 압류되었고 이후 공매의뢰 등 체납처분 절차 없이 50여년간 방치되어 관련법에 따라 재정시효 5년이 경과된 상태로 이에 압류시효 소멸이 된 것으로 판단되며 2015년 채권총괄 계산서에도 해당 채권이 부존재 하므로 압류 해제함이 타당하고 유사한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이런 민원에 대한 방침을 세울 것을 시정 권고	박종풍	완료 (시정권고)

연번	접수 일자	접수 유형	신청인	민원제목	처리결과	주 관 옴부즈만	완료 여부
17	7.29.	방문	박○○	공장시설 승인 신청 관련 조속한 처리 요청	공장부지 조성공사 및 배수계획 등을 통해 수계를 먹우저수지 반대방향으로 돌리는 배수로를 설치하여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경우, 저수지 상류에 해당하지 않아 농어촌 정비법 제22조를 이유로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공장 승인 신청 처리할 것을 시정 권고	박종풍	완료 (시정권고)
18	8. 3.	방문	이○○	지하수 고갈에 따른 피해발생 및 대책 요망	피신청인(화성시)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상수도 관로(메인관)를 신청인의 집 부근까지 연결해 주고 신청인이 상수도 신청 후 원인자부담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부서와 신청인 간 합의되어 민원 종결함	조중익	완료 (합의)
19	8. 3.	방문	유○○	생활 오폐수로 인한 피해방지 요청	덕우저수지 주변 개인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상자에 대해 방류수질 기준 준수 철저에 대한 사전안내 조치를 하였고 2017년 상반기 불시 일제점검 실시 후 초과 배출자에 대한 단속계획에 대해 관련 부서와 신청인 간 합의되어 민원 종결함	김진환	완료 (합의)
20	8.25.	우편	서○○	부적법하게 말소된 건축물대장 복원 요청	우정읍 조암리 ㉠㉠번지 지상에 '94.9.부터 현재까지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50㎡)의 건축물대장이 '15.03. 말소된 것에 대해 실제현황과 일치되도록 복원시키거나 또는 양성화 조치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새로 만들어 주도록 의견 표명함	박종풍	완료 (의견표명)
21	9.12.	방문	박○○	정당한 권원 없이 국유지로 편입된 개인 사유지 소유권 회복요청	국가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소유자로 등기하였고 선의·무과실 요건이 갖춰져 있어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은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저각시킬만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려워 이를 기각하고 민원 종결함	박종풍	완료 (기각)

연번	접수 일자	접수 유형	신청인	민원제목	처리결과	주 관 옴부즈만	완료 여부
22	9.13.	인터넷	박○○	신규 공장증설 예정부지가 첨단업종만 허용토록 하여 공장 승인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의 해결을 요청	기존 2개의 공장이 비첨단업종 및 첨단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신규 증설될 공장시설이 첨단업종에 해당되므로 향남읍 상신리 ㉠㉡번지에 공장입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개발행위허가를 검토해 줄 것을 의견 표명함	조중익	완료 (의견표명)
23	10.2.	인터넷	안○○	수원~인천 간 복선전철 사업으로 인한 완충녹지 해제 요청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수원~인천 간 복선전철 제2-2공구 노반신설공사 사업실시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완충녹지를 해제할 예정에 있고 해당 지역 지상부는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주택 신축여부가 결정될 것임을 안내하고 민원 종결함	김진환	완료 (심의해소)
24	10.4.	방문	양○○	고온항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국유지상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 요구	국유지상 무허가 건물도 보상대상이나, 당초 보상계약을 반복하여 보상이 불가하다고 한 것은 보상 관련 법령 및 신의성실,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손실보상을 하도록 시정 권고함	박종풍	완료 (시정권고)
25	10.5.	팩스	송○○	동탄2 신도시 유보지 내 가림막 및 헨스 설치 요청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에서 유보지를 관리하는 LH공사에 방치된 폐기물 처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안전헨스 설치, 안내문 게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청결유지명령서를 발부하여 조치토록 하고 민원 종결함	조중익	완료 (심의해소)
26	10.18.	방문	평○○	공공일자리 사업 중복참여에 따른 참여활동비 환급 요청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인이 2016.12.19. 취하원을 제출하여 이를 수리함	조중익	완료 (취하)
27	10.18.	방문	장○○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부당	신청인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항소 제기하여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사안으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에 의거 민원 종결함	박종풍	완료 (기각)

연번	접수 일자	접수 유형	신청인	민원제목	처리결과	주 관 옴부즈만	완료 여부
28	10.21.	방문	홍○○	이·미용업 폐업신고 철회 요청	신청인이 2016.11.28. 취하원을 제출하여 이를 수리함	김진환	완료 (취하)
29	10.27.	인터넷	유○○	도로 방음벽 높이 변경 요청	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사업시 행자인 수자원공사에서 방음벽 설치 관련 당초 계획안을 변경하여 높이 3~5m, 추가 연장 80m로 하여 신청인과 2차 면담시 상호간 원만히 협의 되었기에 당해 민원을 종결함	박종풍	완료 (심의해소)
30	11.14.	인터넷	박○○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관련 이용불편 시정 요청	해당 농지(장안면 장안리 ㉠㉠번지) 에 대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2016.11.16. 이미 발급되었고 발급 심사 시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본인 이 신청토록 한 업무요령 등이 별 문 제가 없어 보이고 동일 민원을 국민 신문고 등에 제기하여 기초처되었으 므로 민원 종결 처리함	박종풍	완료 (기각)
31	11.22.	인터넷	김○○	동탄보건지소 이용불편 호소 및 모자보건실 개선 요청	동탄보건지소에서 이용불편에 대한 개선점을 인지하고 즉시 시정조치계획(신분증 제시만으로 철 분제 공급 및 주1회 친절교육 실시) 을 통보하여 민원해소가 되었으므로 민원 종결함	김진환	완료 (심의해소)
32	11.25.	방문	박○○	상수도 관로 재설치 요청	2015년 상수도 설치 시 대행업체가 시공 당시 신청인의 입회하에 설치 하지 않아 정화조에 영향을 주었다 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아 이를 기각하고 민원 종결함	조중익	완료 (기각)
33	12.19.	인터넷	송○○	개발행위로 인한 인접농지 피해 해결 요청	-	박종풍	진행중
34	12.23.	방문	박○○	불법 농로 철거 및 관련 세금 부과 부당	-	김진환	진행중

### 3. 기타 민원처리 현황 (이첩·각하·상담처리 등)

#### (1) 이첩처리 민원 현황

연번	민원제목	처리사항	담당부서
1	옥외 불법광고물 단속 요청	이첩	건축산업과
2	항남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주변 도로공사 관련 피해방지를 위한 도로설계 변경 요구	이첩	지역개발과
3	마을 안길로 사용되는 현황도로를 공장부지로 확장 허용 요청	이첩	허가민원2과
4	노노카페 설치 중단 요청	이첩	희망복지과
5	동탄 센트럴파크 X게임장 내 시설물 수리 및 추가설치 요청	이첩	공원과
6	도로 용도폐지 철회 요청	이첩	건설과
7	동탄 세인트캐슬 주택단지 구분등기 변경 관련 간담회 개최 요청	이첩	건축산업과 주택경관과 도시정책과
8	구거 제방독을 복원하여 통행로로 개설 요청	이첩	마도면
9	건폐율 재조정 건의	이첩	도시정책과
10	고속버스 이용불편 해결 요청	이첩	대중교통과
11	동탄중앙로 출퇴근버스 주정차로 인한 차량소통 불편 해소 요청	이첩	건설교통과
12	개인택시 기사 불친절 신고	이첩	대중교통과
13	원룸 조성공사에 따른 소음 및 먼지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 요청	이첩	기후환경과
14	극심한 생활고에 따른 긴급지원 요청	이첩	복지정책과
15	항남프라자 주차장 빌딩에 대한 공영주차장 활용 또는 용도변경 요청	이첩	교통정책과 도시정책과
16	교통 운영체계 변경 요청	이첩	교통정책과
17	노인 복지시설 소망의 동산 관련 진정	이첩	노인복지과
18	해충방제 요청	이첩	보건행정과

연번	민원제목	처리사항	담당부서
19	도로변 잡초 및 불법현수막 제거와 도로파손 보수 요청	이첩	도로과 비봉면
20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 등 피해에 대한 민원제기 관련 담당 공무원의 소극적인 대응 지적 및 교체 요구	이첩	환경위생과
21	자동차 경주로 인한 소음피해 관련 행정단속 요청	이첩	기후환경과
22	향남 택지지구 내 타는 냄새에 대한 원인규명 및 해결대책 요청	이첩	기후환경과
23	동탄1 신도시 도로혼잡 문제해결 및 트램 추진 책임자 공개 요구	이첩	건설교통과 교통정책과
24	봉담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이용 시 안전대책 마련 요청	이첩	화성도시공사
25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관련 가산세 부과 이의제기 및 도로 개설에 따른 피해방지 요청	이첩	세정과 도로과
26	인접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배수 등 피해방지 요청	이첩	허가민원1과
27	상습 정체도로 도로확장 요청	이첩	건설교통과
28	방범 CCTV 설치 및 공원 내 편의시설물 설치 요청	이첩	안전정책과 공원과
29	버스정류장 조명 수리 요청	이첩	대중교통과
30	정류장 부근 가로등 보수 요청	이첩	건설교통과
31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관련 부당한 행정처리 시정 요구	이첩	건축산업과
32	건축물 공사 관련 일조권 및 소음 등 피해대책 마련 요청	이첩	건축과 기후환경과
33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원상복구 면제 요청	이첩	산림녹지과
34	도로 과속방지턱 및 미러 설치 요청	이첩	교통정책과

(2) 각하처리 민원 현황

연번	민원제목	처리사항	각하사유
1	마을버스 시간표 부착 요청	각하	현장확인 결과, 해당 버스정류장에 마을버스 시간표가 기부착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이 건은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하여 각하 처리함.
2	배수로 사용문제 관련 민원제기로 인해 공장설립 승인처리 지연해결 요청	각하	신청인이 관련 허가신청을 하지 않아 조사 진행이 어려워 각하 처리함.
3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이의제기	각하	해당기관(팔탄면)에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처리함.
4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조성공사로 인한 인접 주택 피해방지 요청	각하	사인 간 해결해야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각하 처리함.
5	건축물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표시 수정 요청	각하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각하 처리함.
6	포도 비가림사업 지원 요청	각하	2016년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지침에 따른 경영체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각하 처리함.
7	동탄 제2지구 지식산업센터(삼성테크노밸리) 관련 분양대행사의 과대광고 등에 대한 행정단속 요청	각하	사인 간 해결해야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각하 처리함.
8	산지 복구설계 승인신청 반려처분이 부당하니 이의 철회 요청	각하	행정심판 재결내용에 큰 하자도 없고 이후 신청인이 산지복구설계 승인 관련 재신청을 하지 않아 각하 처리함.
9	전신주 철거 요청	각하	한국통신 소관사항으로 직무 관할의 범위에 벗어나는 사항에 해당되어 각하 처리함.
10	봉담 호수공원 물놀이장 공사 현장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해결 요청	각하	시공사와 신청인 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각하 처리함.
11	주택 임대사업 관련 부가세 환급 요청에 따른 책임 있는 답변 요구	각하	화성세무서 소관사항으로 직무관할의 범위에 벗어나는 사항에 해당되어 각하 처리함.
12	하자 보증증권 발행여부 확인 요청	각하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최종 사용승인 처리된 사항으로 하자보증예치증서를 제출 받아할 의무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하여 각하 처리함.
13	화성시 정남일반산업단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관련 불합리한 사항 해결 요청	각하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직무관할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으로 각하 처리함.

(3) 접수 외 상담처리 현황

연번	민원요지	처리유형	내 용
1	주택단지 준공 관련 배수계획에 대한 민원해결 요청	상담해소	신청인과 해당부서(허가민원1과) 간 중재하여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하여 민원 해소함
2	개발부담금 관련 문의	상담안내	토지정보과 연계 처리
3	면사무소 직원에 대한 불만으로 해당 직원 전보조치 요구	상담안내	직원에 대한 인사사항은 소관 사항이 아님을 안내
4	임야지 내 전선 철탑으로 인한 손해 배상 요청	상담안내	한국전력 소관사항임을 안내
5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건축물 현황도 작성에 대한 문의	상담안내	관련 규정 확인 후 설명 안내
6	임야 필지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변경 항의	상담안내	토지정보과 연계 처리
7	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도로이용 분쟁해결 요청	상담안내	도로과 연계 처리
8	남양뉴타운 택지개발 내 도로맨홀로 인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상담안내	LH 남양뉴타운 사업단 소관 사항임을 안내
9	시도 69호선 관련 보상 문의	상담안내	건설과 연계 처리
10	정육점 매장 건축 관련 문의	상담안내	관련법 규정 범위 내 건축설계 할 수 있음을 안내
11	제부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토지수용 관련 문의	상담안내	관광진흥과 연계 처리
12	국유재산(도로부지) 임대 문의	상담안내	건설과 연계 처리
13	현황도로 이용 관련 분쟁해결 요청	상담안내	민법상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해 설명 안내
14	인접 주차장 운영 관련 위법여부 문의	상담안내	교통정책과 연계 처리
15	직원 불친절에 대한 징계 요구	상담안내	직원에 대한 인사사항은 소관 사항이 아님을 안내
16	도로점용 관련 사용동의 요구	상담안내	도로과 연계 처리
17	농지 임대차 관련 문의	상담안내	농정과 연계 처리
18	상수도 이용 관련 문의	상담안내	맑은물시설과 연계 처리
19	도로 기부채납 수용 요청	상담안내	회계과 연계 처리
20	건축 건폐율 산정 문의	상담안내	건축과 연계 처리
21	맹지화된 사유지 일부면적 시유지로 매수 요청	상담안내	회계과 연계 처리
22	사유지 도로 통행 관련 민원	상담안내	건축과 연계 처리

연번	민원요지	처리유형	내 용
23	개발행위 허가기간 도과 관련 문의	상담안내	허가민원2과 연계 처리
24	시유지 내 불법건축에 대한 원상복구 관련 문의	상담안내	회계과, 건축과 연계 처리
25	경매로 취득한 부지 내 불법건축물 철거 관련 문의	상담안내	담당부서 확인 결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리된 사항임을 안내
26	토지보상 관련 문의	상담안내	건설과 연계 처리
27	공시지가 과다산정에 따른 재산세 부과금액에 대한 이의 제기	상담안내	토지정보과, 세정과 연계 처리
28	시유지 내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관련 문의	상담안내	회계과, 건축과 연계 처리
29	공장설립 승인신청 관련 문의	상담안내	관련법 및 허가절차 설명 안내
30	하천부지 배수로 설치 관련 민원	상담안내	건설과 연계 처리
31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폐쇄된 현황도로 복원 요청	상담안내	허가민원2과 연계 처리
32	도로공사에 따른 농경지 피해 해결 요청	상담안내	도로과 연계 처리
33	건축허가 관련 문의	상담안내	관련법 및 허가절차 설명 안내
34	도로점용허가 관련 문의	상담안내	봉담읍 연계 처리
35	하천 불법점용 해결 요청	상담안내	남양읍 연계 처리
36	농지내 도로계획 변경 요구	상담안내	도로과 연계 처리
37	개발행위허가 준공 지연처리 관련 시정 요구	상담안내	허가민원1과 연계 처리
38	도로노선 변경 요구	상담안내	도로과 연계 처리
39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현황도로 폐쇄로 통행불편 호소	상담안내	대체도로가 존재하고 사유지에 해당되어 사인 간 문제임을 안내
40	지적측량 관련 문의	상담안내	토지정보과 연계 처리
41	도로보상 관련 낮은 보상비 항의	상담안내	건설과 연계 처리
42	개발행위허가 준공 관련 행정소송 항소 제기 부당	상담안내	행정소송 진행 중인 사항은 각하사유에 해당됨을 안내
43	민원제기로 인해 개발행위허가 지연처리 시정 요구	상담안내	허가민원2과 연계 처리
44	향남읍 내공사 주관 도로공사 관련 보상 문의	상담안내	내공사 소관사항임을 안내
45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여부 확인 요청	상담안내	복지정책과 연계 처리
46	도로공사로 인한 토지수용 보상 이의신청 제기	상담안내	건설과 연계 처리

연번	민원요지	처리유형	내 용
47	현황도로 이용불편 해소 요청	상담안내	사인 간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임을 안내
48	사유지인 농로 통행차단으로 영농행위 지장 해결 요청	상담안내	사인 간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임을 안내
49	양어장 설치 관련 문의	상담안내	관광진흥과, 허가민원1과 연계 처리
50	자활센터 운영 관련 문의	상담안내	복지정책과 연계 처리
51	도로공사 톨게이트 주변 조경수 벌목 항의	상담안내	한국도로공사 소관사항임을 안내
52	건축물 용도변경 요청	상담안내	건축과 확인 후, 용도변경 가능성을 설명 안내
53	개발행위허가 준공 관련 행정소송 항고 포기 요청	상담안내	행정소송 진행 중인 사항은 각하사유임을 설명 안내
54	보상 관련 문의	상담안내	해양수산과 연계 처리
55	지방세(재산세) 부과 근거 확인 요청	상담안내	지방세 납세증명확인원 발급으로 확인 가능성을 안내
56	산지전용허가 관련 문의	상담안내	허가민원1과 연계 처리
57	사유지내 지하수 관로 이전 요구	상담안내	사인 간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임을 안내
58	어린이집 폐쇄 유예 요청	상담안내	사회복지과 연계 처리
59	도로명 주소 정정 요청	상담안내	토지정보과 연계 처리
60	장기미집행 도로 지정해제 요청	상담안내	도시정책과 연계 처리
61	덤프트럭의 잦은 진출입으로 인해 마을안길 흙탕물 피해 해결 요청	상담안내	허가민원1과 연계 처리
62	송산그린시티 조성공사로 인해 현황도로가 폐쇄되어 이의 해결을 요청	상담안내	지역개발과 연계 처리

## 제 5 부

#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주요 처리사례





## 제5부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주요 처리사례

### 1. 그린피아 호텔과 정남IC간 도로확장 계획에 따른 건의

#### ① 민원요지

주관 옴부즈만	도로확장 계획 관련 기존 도로 지적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절감 및 도로
박종풍	곡선화 방지 요청

#### ② 조사내용

##### □ 신청 취지

봉담 와우리 그린피아 호텔과 정남IC간 도로확장 계획 관련 기존 도로 지적선을 최대한 활용하면 예산도 절약하고 직선화도 도모할 수 있는데 새로 사유지를 편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도로 곡선화 및 예산 낭비 우려.

##### □ 피신청인의 주장

(1) 당초 주민 의견(2015.7.2.) 및 도로과 회신 내용(2015.12.23.)

- 주민 의견: 도로 직선화 및 시민부동산, 돈까스건물 헐지 않도록 도로 노선 조정 요망.
- 도로과 회신: 세기섬유와 돈까스클럽 통과구간은 이격 거리가 협소하여 확장 필요폭원 확보시 선형 등을 고려할 때 건물 저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현 계획안 준용.

(2) 2016.1.12.시민옴부즈만-6호(고충민원접수,의견제출)에 대한 2016.1.18. 도로과 민원 관련 자료 및 의견 내용

- 당초 기존 도로 선형을 준용하여 양측확장을 계획하였으나 민원인이 기 의견 제출한 사항 있어 검토한 바 일부 선형 조정할 예정임.

##### □ 사실관계

(1) 당초(2015.12.23.)에는 주민들의 의견(2015.7.2.)을 별로 반영하지 않는 것(세기섬유와 돈까스클럽 통과구간은 이격거리가 협소하여 확장 필요폭원 확보시 선형 등을 고려할 때 건물 저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현 계획안 준용)으로 회신하였으나

(2) 2016.1.20.현재 도로 확장 설계 중에 있는 데, 민원인의 주장이 일부 반영되어 기존 도로선, 도로 부지를 최대한 활용, 편입부지 최소화로 예산 절감 및 직선화 유지 등 사항이 설계에 반영되어 실시설계 중이라고 답변 함.

(3) 주민의 반복적인 의견 제시 및 2016.1.5.옴부즈만실에 고충민원 제기 등으로 옴부즈만실에서 고충민원으로 접수 후, 검토한 결과 민원인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중이라 하고, 그 설계내용을 검토한 바, 당초 주민설명회 때는 수거리㉠-㉡외 4필지에 660제곱미터를 새로 도로부지에 편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가 264(2.5미터)제곱미터를 줄여(예산절감액: 78,281,200원, 공시지가 기준) 394제곱미터만 편입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 설계 중이라 답변 함.

### ③ 조사결과

#### □ 판 단

신청인의 신청취지와 피신청인의 주장 그리고 사실관계 등을 살피건대,

도로과에서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민원인 주장이 관철된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설계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본 민원을 조정, 합의된 것으로 보고 조사 종결 처리코자 함.

#### □ 결 론 (조정)

위 민원은 민원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본 민원을 종결 처리하고자 함.

## 2. 그린벨트 내 탈의실 설치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요청

### ①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그린벨트 지역인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번길 ●●번지에 탈의실
김진환	설치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부당하여 이의 취소를 요청

### ② 조사내용

#### □ 신청 취지

2012.05.12.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그린벨트지역인 상기 주소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내 탈의실 설치여부를 문의한 바, 당시 담당 공무원으로 부터 허가·신고 없이 설치 가능한 시설에 해당된다고 전화상 얘기를 듣고 이를 설치하였으나 2014년 초 민원신고에 따른 현장방문 시,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 불법이며 시설 용도 또한 탈의실로 볼 수 없고 관리사로 임의 적용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바, 이는 심히 부당한 처사로 공무원간 법리해석에 일관성이 없는 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으니 이의 해결 요청.

#### □ 피신청인의 주장

가. 민원인이 설치한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시설물은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사목 규정상 허용된 기초(40평방센티미터 이하) 외 콘크리트 타설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며 시설물 내 주방 및 난방기구,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더목 규정에 따른 임시시설로 볼 수 없음.

나.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관리사 등) 및 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하였기에 2015.11.2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음.

#### ※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행위자	위치	지목	위반행위	구조	용도	면적(m <sup>2</sup> )	이행강제금
황○○	비봉면 남전리 ●●	전	불법건축	조립식 패널	관리사	30	1,597,500 원
			형질변경	콘크리트 타설	건축부지	30	473,400 원

다. 또한, 당초 2012년 담당자의 전화상 녹취기록에는 기초 타설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 없으며 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에도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해당 처분으로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 □ 사실관계

가. 해당민원 관련 피신청인의 그 간의 조치내역

일 시	조치사항
2014.11.05.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
2014.12.23. / 2015.01.27. / 2015.02.12.	○ 상담민원 회신
2015.04.01.	○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회신
2015.04.13.	○ 현장확인 (32㎡ ⇄ 30㎡)
2015.04.14.	○ 상담민원 회신,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보
2015.11.25.	○ 이행강제금 부과 (금 2,070,900원)
2015.12.29.	○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나.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임시시설 설치 관련 국토교통부 공문(문서번호: 녹색도시과-2115(2015.5.1.) / 제목: 비닐하우스 내 임시시설 관련 건의에 대한 회신사례 전파)에 따르면, 임시시설의 재질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고 간이 세면장 등은 설치 가능함을 표명함.

건의 내용	회신 내용
○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임시시설을 경량판넬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시시설 용도에 샤워시설 추가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서 구조상 골조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닐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보관실, 난방용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 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임시시설의 재질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li> <li>○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임시시설을 철거가 용이한 비영구적인 경량판넬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 그 내부에 간이 세면장(샤워시설 포함)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li> </ul>

다. 2016.03.03. 현장 확인 시, 시설물 벽은 경량판넬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바닥은 콘크리트로 타설되었고 세면대 및 화장실 변기 등이 설치되어 있음(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 현장사진



③ 조사결과

□ 판 단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더목 규정에 따르면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제곱미터 이하 임시시설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사목 규정에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기초 외 바닥 콘크리트 타설은 위법하다고 하였는 바
- 나. 위 민원 해당 시설물은 바닥이 콘크리트로 타설되어 철거가 용이한 임시시설로는 보기가 곤란하고 화성시 고문번호사(법무법인 ○○ 등 3개소) 자문결과(2015.3.11./3.17.)도 마찬가지로 바닥 콘크리트 타설은 임시시설로 보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나 해당 시설 용도에 대하여는 신청인은 탈의실을 짓겠다고 시공 중에 있는 것을 피신청인이 상담민원 회신시 (2015.04.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 규정(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들어 관리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 사용되지 않는 해당 시설물의 외양적 형태를 유추하여 판단한 것으로 자의적 법해석의 여지가 있음.
- 다. 2016.3.3.현재 해당 시설물이 아직 완공 되지 않아 사용 중에 있지도 않고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시설물의 외벽 재질에 대하여는 별도 제한규정이 없으며 비영구적인 경량판넬(조립식 판넬) 설치도 가능하다고 하였고 그 내부에 간이세면장 등의 설치 등도 가능하다고 한 점, 또한, 해당 법령에 탈의실과 관리사에 대한 시설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해 시설이 관리사가 아닌 탈의실 용도의 임시시설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됨.

#### □ 결 론 (시정권고)

따라서 위 「판단」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그린벨트지역 내 임시시설(민원인은 탈의실이라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관리사라고 주장하나, 현재 미완공 및 미사용중) 설치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관련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이행강제금(2,070,900원) 부과 처분 중 불법 형질변경 해당 부분(473,400원)을 제외한 불법건축물 해당 부분(1,597,500원)에 대하여는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함.

#### ④ 해당부서 조치결과 (불수용)

신청인이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본 민원과 별도로 제기한 행정소송(2016구합61540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처분 취소) 결과가 기각 판결(1심 신청인 패소, 2심 진행 중)되었기에 불수용 처리됨.

### 3. 보안등 전구 교체 요청

#### ①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마을길 보안등 수리(교체)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해당기관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아 이의 해결을 요청
박 종 풍	

#### ② 조사내용

##### □ 신청취지

화성시 우정읍 석천안길 ㉠㉠번길 ●-◆(목조마을)앞 전신주 보안등이 2015년 11월 중순경부터 불이 나갔는데, 해당 주민센터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아직도 교체를 해주지 않아 밤길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의 해결 요청.

##### □ 피신청인의 주장

가. 단가 계약업체로 하여금 보수토록 지시하였으나 기 확보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예산 비용 부족으로 인해 조기 준공처리(12월경)됨에 따라,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음.

※ 2015년도 가로(보안)등 예산 및 집행현황

구 분	사업명	예산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2015년	생활환경 개선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132,000천원	131,601천원	399천원

나. 2016년 예산에 반영하여 업체선정 및 계약 완료가 되는대로 보수할 예정임.

#### ③ 조사결과

##### □ 결 론 (심의해소)

본 민원에 대해 읍부즈만 고충민원 조사개시 통보 이후 2016년 우정읍 가로(보안)등 연간 보수공사 신규업체 선정 및 계약 완료되어 피신청인(우정읍)이 당해 민원에 대해 2016.02.17. 보수처리 완료하였기에 당해 민원이 해소됨.

## 4. 양육수당 소급지급 요청

### ①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출생 및 전입신고 시 양육수당 미신청 대상자에 대해 안내를 해 주지 않아
박 종 풍	200만원 정도의 양육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이의 해결을 요청

### ② 조사내용

#### □ 신청취지

2015년 3월 충남 예산군에 아이 출생 신고, 5월 21일 병점1동으로 전입 신고 시 양육수당 신청 안내를 못 받았고, '16년 1월 수당 신청 안내를 받고, ' 16년 1월 신청하였으나, 지급 못 받은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분 양육수당 소급 지급 요망.

#### □ 피신청인의 주장

가. 현행 법령상 양육수당은 신청에 따라 지원,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 기한 경과 지연신청 시 소급지원 불가.

나. 본 사안은 신청 관련 고지의무가 개정법령( '15.9.19.)시행 전으로 신청 안내에 대한 법적 의무 없음.

다. 경기도 재결은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 지체장애3급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 판단으로 본 사안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함.

라. 양육수당 소급지원 불인정 재결 예[2014 충남 행심290 가정양육수당 미지급금 이행청구 (2014.11.19.)]

#### □ 사실관계

(1) 신청인 이●●는 2015년 2월 28일 남자 아이 출산 후, 충남 예산군 광시면에 3월 출생 신고시 양육수당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못 받아, 수당 지급 사실을 몰라 신청 못 해, 지급 받지 못함.

- (2) 그 후 2015.5.21. 화성시 병점동으로 전입 와서, 전입신고 시에도 아이 주민번호를 다 기재해 제출했는데도, 양육 수당 신청하라는 안내를 못 받아, 역시 신청 못해, 양육수당 미지급, 미 수령.
- (3) 다음해인 2016.1.21. 병점동 주민센터에서 양육수당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고서야 양육수당 지급사실을 알고, 신청하여, 1월분부터 지급받고 있어, 전입한 ‘15년 5월부터 12월까지 미 지급 받은 8개월분 양육수당 160만원 미 수령.
- (4) 2016.1.25. 인터넷으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실에 전입 신고시 양육수당 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해 주지 안 해서,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했으나, 이제라도 신청했으니, 그간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소급 지원해 달라는 고충 민원을 제기 함.
- (5)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34조의4에 따라 “영유아 보호자는 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청주의를 택하고, 신청하면 누구나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권리 발생. 다만, 출생일(전입일)부터 받을 권리가 생기는지 아니면 신청일부터 생기는지 애매하여 분쟁소지는 있음.
- (6)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⑤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법에 규정한 후, 대통령령에서 이를 정하지 않고, 법령에 위임 없이 국민에게 효력이 없는 지침(훈령)으로 신청일 기준이라 정해, 시민의 법 감정은 출생일 또는 전입일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 또는 희망하고 있는데, 관청에서는 신청일 부터 지급한다고 하여 민원이 발생.

### ③ 조사결과

#### □ 판 단

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84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은 ‘15년 3월부터 월20~10만원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어, 출생, 국적, 주민번호만 유효하게 보유한 본 사건의 경우, 일단 지원 요건은 충족시킨 것으로 보임.

나. 시민의 통상적 법 감정은 불이익을 주는 규제단속 규정은 소급적용하지 않으나, 이익을 주는 급부행정의 경우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당연히 소급적용을 기대하고 있음.

다. 보건복지부 지침 2014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대상 선정안내” 및 2015년 “보육사업 안내”에서 생후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 지원하도록 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상 소급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60일 소급 지원하도록 지침을 정한 것이지 법상 소급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위 지침(훈령)도 위법의 소지가 있음.

라. 또한 위 지침에서 “최초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영아에 대해 무상보육(보육료,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필히 안내 할 것” 이라고 규정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위 사람이 신청을 안 한 채 가만히 있거나 전입신고할 경우에는 이를 신청하도록 고지할 의무가 있는 바, 위 신청인은 출생(충남 예산군) 시 및 전입(경기도 화성시) 시 양육수당 지급대상이니, 양육수당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지 못해, 양육수당 지급대상임에도 대상임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사실을 놓고 볼 때, 화성시(병점동)에서 비용지원신청고지 의무를 100% 다 했다고 보기는 곤란함.

마. ‘16년 1월 화성시로부터 안내받고 곧바로 신청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전에 알았더라면 당연히 신청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늦게라도 신청했으니, 그 동안 고지를 안 해서, 알지 못해, 못 받은 수당을 늦게라도 신청했으니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무리해 보이지 않음.

바. 보건복지부 지침 상 소급지원 불가. 라는 화성시 주장에 대하여, 위 지침은 훈령으로 공무원은 지켜야 할 준칙으로 그 준칙에 따라 소급지원하지 않은 담당공무원의 일처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나, 그 지침은 국민에게는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국민은 법만 알고 법대로만 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민원 발생.

사. 양육수당 신청안내가 법적 의무가 아니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훈령(지침)에 출생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필히 안내하도록 지시가 있어 이를 유추해석하면, 전입시에도 당연히 안내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아. 소급지급이 타당하다는 2015년 경기도 행정심판은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상황, 지체장애 3급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종합적 판단으로 본 사안에 일률 적용이 타당치 못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2015년 지침.P.58.에 의하면, 양육수당지원은 국적과 주민번호를 보유한 0~5세 영유아는 소득무관 전(全)계층 지원. 이라 명시되어, 위 심판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결이라 일률적용이 타당치 못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함.

자. 양육수당 소급 지원에 대하여 ‘청구인 주장 이유 없음’으로 기각된 재결 예( 2014 충남 행심 290 가정양육수당 미지급금 이행청구(2014.11.19.))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법은 구 법에 우선하므로, 유추해석하면, 최근의 경기도 재결(경기 행심 715 양육수당지급의무 이행청구사건,2015.8.5.재결)은 구 재결(2014 충남 행심 290(2014.11.19.))보다 우선하며, 더욱이 경기도의 행정 심판은 경기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인 화성시의 상급 자치단체 재결로서 기속력이 있으므로 인접 자치단체의 재결 예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 됨.

차. 법령상 지침에 양육수당 신청, 통지, 방법, 절차 등을 위임하였을 뿐, 지급대상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위임하지 않아 지침이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권리제한사항을 담고 있어서 신청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현재 유사판례가 부존재.

카. 경기도 읍부즈만 의결(시정권고 제8호. 2015.12.16.), 가정양육수당 소급지급 요청, 피신청인 (00시장)에서도 가정양육아동에게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출생만 하면 지원조건을 충족한 것을 법령에 구체적 위임 없이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근거로 소급기한을 60일까지로만 한정하여 소급지원 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00시장이 수용하여 미지급된 양육수당 160만원을 소급 지급한 사례가 있음.

#### □ 결 론 (의견표명)

신청인의 신청 취지와 피 신청인의 주장 그리고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살피건대, 위 신청인의 가정양육수당 소급지급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으로 화성시 시민읍 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양육수당을 신청일이 아닌 전 입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의견을 표명하기로 함.

#### ④ 해당부서 조치결과 (수용)

시민읍부즈만 의견을 수용하여 미지급된 양육수당(160만원)을 전입일로부터 소급하여 2016.5.25. 지급하였음.

## 5. 개발행위허가 준공 관련 조속한 처리 요청

### ①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지속적인 제3자 민원제기로 개발행위 준공처리가 지연되어 이의 해결 요청
조 증 익	

### ② 조사내용

#### □ 신청 취지

신청인은 2015.08.18. 팔탄면 울암리 ㉠㉠-○번지 일원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고 이후 변경 허가를 거쳐 2016.02.24. 개발행위준공 신청을 하였는데, 인접 토지(팔탄면 울암리 ㉠㉠번지) 공장 소유주가 배수피해를 주장하며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고려한 배수피해 방지계획 대로 시공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를 검토한 후 처리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여 처리기한(2016.03.04.)내 처리되지 못한 상황으로 이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

#### □ 피신청인의 주장

당해 개발행위 허가지는 신청 당시 인접토지(팔탄면 울암리 ㉠㉠)보다 지형적으로 약 2m정도 높은 지형이었으며 그 경계에 미미한 배수로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후 부지 조성 공사로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인접토지 공장 소유주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신청인이 150mm 유공관을 설치하여 지하수위를 낮췄으나 유공관 심도(약30cm)가 너무 높아 지하수 처리가 완벽하지 않아 인접토지 공장 건축물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여 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등을 검토하여 준공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지연 처리되고 있음.

#### ※ 개발행위허가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신청지(m <sup>2</sup> )		제외면적(m <sup>2</sup> )
				부지	도로	
팔탄면 울암리	㉠㉠	답	1,329	0	85	1,244
상 동	㉠㉠-○	답	1,472	760	149	563
합 계			2,801	760	234	1,807
				994		

## □ 사실관계

### 가. 당해 민원 관련 개발행위허가 세부내역

일 시	내 용
2015.08.18.	개발행위허가 통보
2015.11.27.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
2015.12.24.	1차 보완서류 제출
2016.01.04.	2차 보완서류 제출
2016.01.22.	개발행위 변경허가 통보
2016.02.24.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처리기한 2016.03.04.)
2016.03.09.	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요청 (허가민원2과)
2016.03.09.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

### 나. 개발행위 준공신청 서류 검토사항

- 2015.08.18. 팔탄면 울암리 ㉠㉠-○번지 일원에 신청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고 이후 2016.01.22.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거쳐 2016.02.24. 개발행위준공 신청을 하였는데, 인접 토지(팔탄면 울암리 ㉠㉠번지) 공장 소유주가 배수피해를 주장하며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 하자 당초 피해방지 계획을 변경하여 신청지 경계에 유공관(D=150m/m)과 용출수 처리를 위한 수중(자동)펌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피신청인은 출장복명서(2015.08.18)상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저촉없음으로 판단하였는데, 이후 인접 토지(팔탄면 울암리 ㉠㉠번지) 공장 소유주가 배수피해를 주장하며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자 신청인의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 시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서(2016.1.22)상 피해방지계획 변경(옹벽형식변경, 계획고 변경, 우수처리계획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발행위 변경허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피신청인은 처리기한(2016.03.04.) 내 처리를 하지 않고 2016.03.15.까지 처리기한을 연장한 후 2016.03.09.에 화성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의뢰하였고 이의 결과를 반영하여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연장기한이 지난 2016.03.21. 현재까지 준공처리 하지 않고 있음.
- 2016.03.14. 개발행위허가지 현장방문 시 변경된 피해방지 계획대로 인접토지와 경계에 상기 배수처리 시설 설치를 확인하였고 다만, 인접토지 공장 소유주가 주장한 배수피해 관련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다. 당해 개발행위허가지 현장방문(2016.03.14.) 시 확인사항



### ③ 조사결과

#### □ 판 단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준공검사)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발행위허가 준공 신청에 대하여 당초 허가내용 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처리기한(2016.03.04.)내 신속히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인접토지(팔탄면 울암리 ●●) 공장 소유주가 배수피해를 주장하며 2016.03.10. 다시 민원을 제기하자 허가내용 대로 사업 완료한 신청인의 준공신청 처리를 보류하였고 처리기한이 도과된 2016.03.09. 시 고문번호사에 법률자문을 이유로 2016.03.15.까지 처리하여야 할 준공 민원을 지연처리 한 것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 아울러 신청인은 최초 개발행위허가(2015.08.18.) 시 제출된 피해방지계획을 보완하여 한층 강화된 배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2016.01.22.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득하였고, 피신청인도 변경허가 전 자체검토 시 배수처리 계획이 적정하여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2016.03.14.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석한 당해 개발행위허가지 현장방문 시 인접 민원으로 보완 강화된 배수처리 계획서상 변경허가 조건대로 시공 완료됨이 확인되고 배수피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 또한 확인 곤란.

라. 종합해 보면 신청인은 개발행위허가 내용대로 당해 개발행위허가지에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이로 인해 인접토지 배수피해 관련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설령 당해 개발행위허가지 내 배수시설의 하자로 인접토지에 배수피해가 발생한다면 수허가자인

신청인은 개발행위 변경허가 조건 3호에 의거 이를 민사적으로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것으로 피신청인이 제3자가 제기한 민원을 이유로 개발행위 준공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조속히 준공처리를 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결 론 (시정권고)

그러므로 신청인의 개발행위 준공 관련 조속한 처리 요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위 민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준공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권고함.

#### ④ 해당부서 조치결과 (수용)

시민옴부즈만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화성시 팔탄면 울암리 ㉠㉠-○번지 개발행위 준공신청 관련 2016.03.26. 준공처리 하였음.

## 6. 도로점용료 과다부과 해결 요청

### ①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팔탄면 해창리 ㉠㉠-3번지 등 8필지에 부과된 도로점용료가 부당하니
박 종 풍	이를 1/N로 부과하거나 감액 요구

### ② 조사내용

#### □ 신청 취지

2013.12.24. 화성시 팔탄면 해창리 ㉠㉠-3, ㉠㉠-4, ㉠㉠-5, ㉠㉠-6 등 8필지 1,595제곱미터를 신청인외 4인이 공동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신청인에게만 유독 3,000만원 이상의 점용료가 부과되어 과중하니 1/N로 부과하거나 감액 요구.

#### □ 피신청인의 주장

당초 부과 경위: 비록 공동 도로점용허가이지만, 사실상의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위 신청인에게는 위 점용면적 1,595제곱미터 중 진출입로 632제곱미터, 주차장 330제곱미터, 계 962제곱미터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그동안 미부과한 5년분을 부과하였고, 다른 4인에게는 진출입로 211제곱미터만 사용한 것으로 부과하여 위 신청인에 대한 부과금액이 38,049,000원으로 다소 과한 측면이 있음.

#### □ 사실관계

- (1) 주차구획선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위 신청인 ○○○에게 독점 부과한 주차장 면적 330제곱미터 부분에 대한 점용료는 주차장용도로 부과해선 안 되고, 점용료가 낮은 도로점용용으로 도로점용면적에 포함, 1/N로 안분 재 산정 부과하는 것이 타당.
- (2) 도로점용면적을 재 실측하여 125제곱미터 줄어든 실제점용면적을 1,47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위 민원인 외 4인에게 1/N(367.5제곱미터)씩 점용료를 안분 부과하는 것이 타당.
- (3) 또한 점용료가 매년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전년도 점용료 대비 10%이상 인상시에는 조정산식을 적용하여 점용료 인상을 줄이기 위해 2008년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부과분 계 3,022,700원(진출입로,2,144,700원, 주차장,878,000원)을 근거 및 기준으로 하여 2009

년부터 가상점용료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2012년분(1,203,600원)부터 2016년도 분(1,805,400원)까지 도로 점용료 계 7,665,700원 재 산정 부과.

(4) 당초 부과액 38,049,000원보다 30,383,300원이 줄어든 7,665,700원(5년분, '12년~16년)만 부과.

### ③ 조사결과

#### □ 결론 (합의)

도로과에서 당초 민원인 요구사항인 주차장 등 점용료는 1/N으로 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100% 다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측을 통해 점용면적도 줄여주고, 점용 효율이 높은 주차구획선을 제거하게 해, 낮은 도로점용효율을 적용했으며, 점용료 과다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조정료 조정산식 등을 적용한 결과, 당초 점용료가 38,049,000원에서 7,665,700원으로 줄어들어 민원인이 만족하고, 또한 주무과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민원은 합의, 조정으로 종결 처리코자 함.

## 7.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피해 방지 및 도로이용 관련 민원

### ①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일원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피해 방지 및 기존 마을길 이용 요구
김진환	

### ② 조사내용

#### □ 신청 취지

주곡리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높게 시공된 축대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를 낮추어 주어야 하며 대체 현황도로 포장과 함께 기존 바수계길을 복원하여 산업단지 내 도로와 연결을 해줄 것을 요구.

#### □ 피신청인의 주장

그 간 신청인은 상기 동일내용의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어 이에 다음과 같이 민원회신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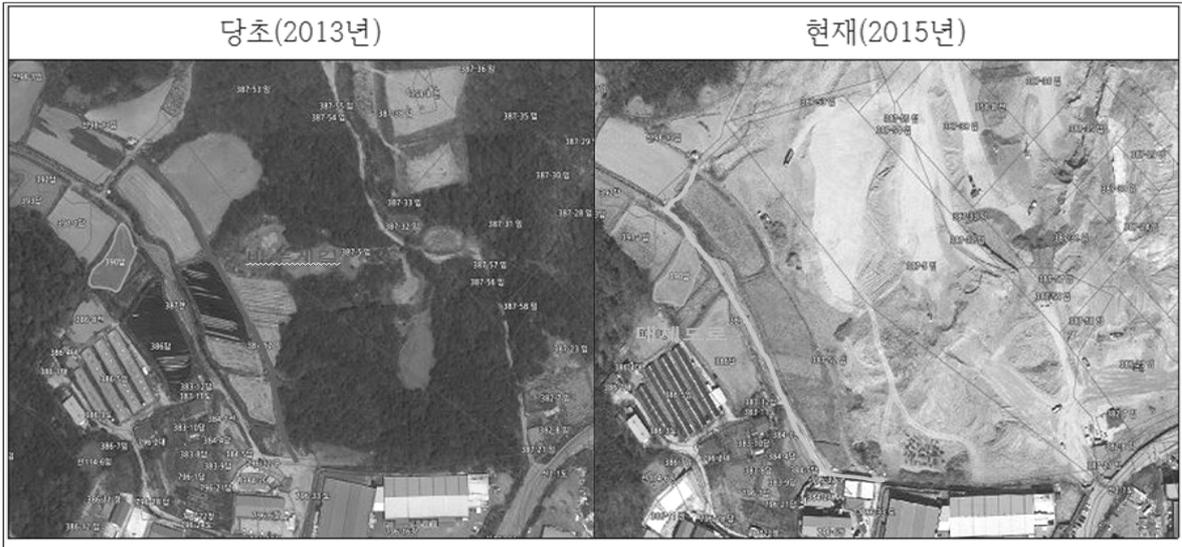
가. 인접 농지보다 높게 조성된 축대로 인한 해빙기 및 장마철 붕괴 우려 및 일조권 피해를 주장하나 현재 법면 안정화 처리(코아넷 및 seed spray)를 실시하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완충녹지 사면조성 및 농로이격 조치 등 피해예방 조치를 하였고 또한, 일조권 분석 결과 인접농지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기존 바수계길은 당초 임야관리를 위한 사유지 내부의 비포장 통행로로 현재 산업 단지에 편입이 된 사항으로 주변에 우회 가능한 대체도로(농어촌공사 소유 구거부지)로 통행이 가능한 상황임.

다. 아울러 대체도로의 포장에 대해서는 해당부지가 사업구역 밖의 부지로 관리기관인 한국 농어촌공사와 협의 후 농로포장 계획에 있음을 기 통보(2016.03.14.)함.

#### □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산업단지 조성지역 인근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기존 바수계길은 우정읍 주곡리 ㉠㉠-\*\*(임)번지 내 위치한 통행로였으며 추후 산업단지로 편입되어 현재 도로이용은 불가능하나 주변 통행가능한 대체도로가 존재함.



나. 한국농어촌공사 협의(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 화성수자원-208(2016.01.22.)) 결과, 현재 대체도로 내 구거부지(우정읍 주곡리 ●●●)에 도로포장(B=4m L=70m) 시행 가능함을 통보함.

다. 산업단지 부지 계획고 상승(인접농지 보다 10m 위에 위치)에 따른 축대(H=3m) 및 완충녹지 사면조성, 농로이격 조치 등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시공됨. (※ 완충녹지 사면은 추후 화성시에 기부채납 예정임.)

### ③ 조사결과

#### □ 판 단

가. 기존 바수계길 통행로는 사유지내 위치한 관습상 통행로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현재 산업단지 내 부지로 편입이 되었으나 주변 대체도로가 존재하고 구거부지 내 포장도 가능하다고 2016.01.22.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통보한 이상, 통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바수계길 복원 요구는 타당하지 않음.

나. 또한, 산업단지 부지 계획고(H=25m)와 인접 농지가 10m 정도 차이로 축대와 성토사면이 조성된 것으로 사면 안정화 조치가 되어 있고 현시점에서 주변에 피해발생을 유발한 증거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점, 또한, 피신청인이 해빙기 및 장마시 지속적인 예찰활동 등 철저한 예방 관리를 수차례 신청인에게 회신하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더 이상의 문제 제기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종결처리 함.

□ 결 론 (기각)

민원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위법·부당한 행위는 발견할 수 없고 신청인의 요구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위 민원을 종결하고자 함.

## 8. 취득세 부과 취소 요청

### ①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부동산 매매계약 후 취득세 신고를 했으나 추후 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사실상 취득을 못하였는데,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박 종 풍	

### ② 조사내용

#### □ 신청 취지

- 화성시 반송동 ㉠㉠㉠ 동탄나루마을 월드메르디앙 반도유보라 ㉠㉠동 ㉠㉠호에 대한 취득세 금 17,925400원(가산금 4,407160원 포함)의 취소를 원함.
- 위 물건을 매매계약 후 취득세 신고는 했으나 추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 사실상 취득하지 못하여 취득세 부과는 부당함.

#### □ 피신청인의 주장

- 2013.7.5. 매수인 ㉠㉠㉠, 매매금액 4억7천만원, 잔금일 2013.7.5.로 매매계약서작성.
- 2013.7.15. 대리인 법무사 ㉠㉠㉠ 취득세 신고 및 분할납부 신청.
- 매도인과 매수인이 쌍방합의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신고까지 한 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조항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공정 증서 등으로 입증하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행위가 유효하며 그 행위에 대하여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거기에 따른 취득세 부과 고지는 정당함.

#### □ 사실관계

- 선순위 은행 채권 때문에 살던 집이 경매에 처해지면 임대보증금까지 날릴 우려가 있어, 2013.7.5.전세 보증금 1억 5천만원은 매매가액에서 차감하고, 근저당설정금액(원금 3억 3천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가격 4억 7천 만원에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2013.7.15. 취득세 신고 및 분할납부 신청함.
- 이로써 취득의 주요 완성요건인 잔금 지불 또는 해당물건 인수 사용이 이행되고 잔금까지 계약 당일 자인 2013.7.5. 다 지불되어 물건 사용 중인 것으로 보임.

- 해당 물건이 취득 후 다시 경매된 것은 인수한 취득자가 승계한 근저당금액 3억 3천만원을 상환하지 않아 생긴 문제로 보임.

### ③ 조사결과

#### □ 판 단

신청인의 신청 취지와 피 신청인의 주장 그리고 사실관계 등을 살펴 본 결과,

지방세법상 취득 이라 함은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잔금납부 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행위세, 유통세이며, 따라서 취득행위가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이후에 해약 등이 된다하여도 그 해약 등은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지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에는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일반 원칙과 대법원2006.9.8.선고 2005두14394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과 같이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등을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판결과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취득세 신고 후에 실제로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7.5. 계약서 작성일에 매매금액 사억 칠천만원이 일시불로 지급 완료되어 취득이 완료되고 2013.7.15. 취득세 자진 신고한 것은 당연무효가 아닌 것으로 보임.

#### □ 결 론 (기각)

계약과 동시에 매매금액 일시 전액 지급, 물건 사용하여 사실상 취득에 해당되어 당초 과세 정당, 종결처리.

## 9. 매향리 횃집상가 영업권 및 생존권 보장 요구

### 1]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횃집상가 진출입에 이용되는 현황상 도로가 당초 국유지에서 사유지로 변경되면서 부당한 사용대가 요구 관련 분쟁에 대해 해결을 요청
박 종 풍	

### 2] 조사내용

#### □ 신청 취지

우정읍 매향리 ㉠㉠㉠번지 도로가 조상땅 찾기 소송에 의해 국유지에서 사유지로 변경되면서 소유주가 도로이용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에 매설된 우수관 등의 철거 및 건축물 건립 등 재산권 행사를 한다고 하니 당초 해당 토지를 진출입 도로로 해서 허가를 받은 횃집센터(우정읍 매향리 ㉠㉠㉠번지 일원) 상점주들에게는 영업권과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이 되어 향후 해당 토지에 건축허가 및 컨테이너 등 지장물 설치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

#### □ 피신청인의 주장

가. 우정읍 매향리 ㉠㉠㉠번지 일원 횃집센터는 1996년 당시 ㉠㉠㉠번지 국유지를 현황도로로 이용하는 것으로 하여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현재 ㉠㉠㉠번지에 우리시가 건축허가(개발행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법령이 없고

나. 도로지정 공고는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해당 사유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형평상 어려운 사항임.

#### □ 사실관계

가. 관련 소송자료 및 허가서류 일체를 검토한 바,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번지는 법원 판결문(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17909)에서 전제한 경기 수원군 우정면 매향리 ㉠㉠㉠ 임야(1,052평)에서 분할된 것이 아니라 2002.02.10. 연안공유수면 미등록 토지 신규신청(화성시 축수58160-1528호)에 의해 2002.05.28. 토지대장에 토지번호를 부여하여 2003.10.29. 국유지(재정경제부)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것이고

나. 당해 횃집센터는 1996년 진입도로 목적으로 현 위 우정읍 매향리 ㉠㉠㉠번지(그 당시 위 매향리 ㉠㉠㉠번지선 공유수면)에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점용면적:1,337 m<sup>2</sup>)를 득한 후, 적법하게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임.

### ③ 조사결과

#### □ 판단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관련 소송의 전제인 우정읍 매향리 ㉠㉠㉠번지가 ㉠㉠㉠번지에서 분필되었다는 사실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현재 국유재산관리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재소송 여부에 대해 신청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 결론 (심의해소)

가. 본 민원 관련 우정읍 매향리 ㉠㉠㉠번지 토지가 당초 공유수면에서 신규 취득된 국유지임을 확인하여 해당 사실을 관리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16.04.25. 통보하였고 신청인과 재소송 등의 협의를 하도록 안내하여 민원 해소, 종결함.

나.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내·외부 법률검토를 거쳐 본 건 국유지 환수절차(소유권 소송 및 관련 가처분 신청 등)에 착수하였음을 시민옴부즈만실로 통보[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기획실-23278호(2016.06.07.)]함.

## 10.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청에 따른 진단서 제출 관련 부당한 처리 시정 요청

### ① 민원요지

주관 <b>음부즈만</b>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청 관련 민간 개인병원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아 이는 부당한 행정처리로 이의 시정 요청
<b>조 증 익</b>	

### ② 조사내용

#### □ 신청 취지

신청인은 화성시로부터 개인택시를 인가받아 운행하여 오던 중 정신과 치료를 받기위해 대리운전을 신청하였는데, 신청서류에 개인병원(동탄 ○○○○병원)진단서를 제출하였는바, 화성시에서는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된 것만 인정하여 진단서 보완을 요구하였기에 이는 부당한 행정처리로 시정을 요구.

#### □ 피신청인의 주장

가. 화성시 대중교통과에서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오산시, 수원시, 용인시)의 경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규정 등에서 양도·양수 및 대리운전 시 진단서 발급기관을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로 한정하고,

나. 화성시의 경우 신규면허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4조(면허기준)제1항제3호에서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양도·양수 및 대리운전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양도·양수 신청 및 대리운전 시에도 개인택시 면허기준과 부합되도록 진단서의 발급기관을 위와같이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완을 요구함.

#### □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화성시로부터 개인택시를 인가받아 운행하여 오던 중 정신과 치료를 받기위해 동탄 능동 소재 ○○○○병원에서 2개월간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향후 1년간의 통원치료를 받기위해 대리운전을 신청하였는데, 신청서류에 개인병원(동탄 ○○○○병원)진단서를 제

출하였는바 피 신청인은 인근 지자체의 사무처리규정 등을 참고하여 자의적으로 판단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진단서로 보완 요구함.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를 제출토록 명시되어 있고 그 진단서는 국·공립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제한한다는 명문규정은 없음.

다. 2016. 05. 11 민원인이 시민옴부즈만에 위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옴부즈만이 2016. 05. 16. 민원접수 및 조사개시를 통보하자 피 신청인은 위 민원을 법규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하여 서류를 보완토록 한 행정처리가 잘못 된 것임을 인식하고 민원인에게 2016. 05. 17. 대리운전 신고 수리를 통보하여 위 고충민원이 해결됨.

### ③ 조사결과

#### □ 결론 (심의해소)

피 신청인이 인근 지자체의 사무처리규정 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발행 진단서 보완 요구는 부당한 행정행위이나 이의 잘못을 바로 인식하고 2016. 05. 17. 대리운전 신고 처리가 되었기에 본 민원이 해소되었음.

## 11. 다세대주택(●●하우스) 진출입로 문제해결 요청

### 1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다세대 주택 진출입로 사용뎡가 요구 관련 입주민과 소유자의 다통의 원인이 부적정한 행정처리에 있으므로 이의 중재 해결을 요청
김 진 환	

### 2 조사내용

#### □ 신청 취지

봉담읍 와우리 ㉠㉠-㉡번지 일원에 소재한 다세대주택(●●하우스)은 2012.2월경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이후 신청인 포함 25세대에 분양되었고, 이후 2016.4월 진출입도로로 사용된 토지(봉담읍 와우리 ㉠㉠-㉡)가 제3자에게 경매로 넘어가 해당 소유주가 ●●만원에 이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여 도로통행 관련 민사 간 분쟁 위기에 놓여 있는데, 관련 인허가사항을 확인해보니 행정처리에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화성시에서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바, 해당 토지 도로통행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

#### □ 피신청인의 주장

가. 위 민원은 해당 다세대 주택(●●하우스)의 진출입로 부지인 봉담읍 와우리 ㉠㉠-㉡번지 소유권자가 당초 건축주에서 임의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넘어가면서 불거진 해당 토지의 이용에 대한 다세대 주택 입주자와 제3자 간 민사적 분쟁에 해당됨.

나. 다만, 위 민원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 시 도로시설물 일부가 침범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봉담택지 개발 관련 도로 조성 시 관리주체인 LH공사의 귀책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 이에 LH공사 및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관계기관과 협의 완료 후 위 민원토지에 도로시설물로 사용된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구역 편입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부지 매입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

#### □ 사실관계

가. 관련 인허가 내역

- 2011.01.20. 개발행위허가 (봉담읍 와우리 ㉠㉠-㉡번지 등 2필지)

- 2011.04.26. 건축허가
- 2011.05.11. 개발행위 변경허가
- 2011.05.27. 도로점용허가 통보 (봉담읍 와우리 ㉠㉠-㉡번지 등 4필지)
- 2011.09.27. 개발행위 변경허가(2차)
- 2011.11.23. 동·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봉담읍 와우리 ㉠㉠-㉡번지 도시계획도로 지정 해제
- 2012.01.11. 도로점용 완료확인 통보
- 2012.01.18. 개발행위 준공 통보
- 2012.02.09. 건축물 사용승인

나. 위 민원토지(봉담읍 와우리 ㉠㉠-㉡)는 2011.05.27. 도로점용허가(점용면적:13㎡)를 득하였고 소유권자는 당초 건축주인 ○○○에서 2016.04.12. 임의경매로 인해 제3자인 ○○○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

다. 또한, 2011.11.23. 동·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대로 3-2) 편입해제 되었음.

라. 도로과 주관 관계기관 협의사항

- 해당토지가(㉠㉠-㉡번지)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인의 의견에 따라 현황 측량을 요청하는 사항이 있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요청하여 경계 측량한 결과, 지적32㎡ 중 일부가 보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약 5㎡추정)으로 측량결과 나타남
- 2016.08.30. 관계기관 협의 (LH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성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의견〉
  - 도로를 개설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8년 공사시 측량결과(좌표)에 따라 시공하였으나, 해피하우스 민원 관련하여 측량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측량시기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다는 의견
  - 〈한국국토정보공사 의견〉
  - 민원관련(㉠㉠-㉡번지) 토지 인근 약 30cm정도 지적선과 현황상 이격되어 있는 것으로 측량되었으며, 반대편 도로현황은 지적선과 일치함에 따라 측량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 종합의견
  - 2008년 측량시 도근점 등 복원하여 좌표 검토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관련 자료를 조속히 찾아 복원 가능 검토 등을 실시하여 최종 측량결과 도출

### ③ 조사결과

#### □ 판 단

- 가. 해당 민원의 본질은 위 민원 토지의 소유권 변경으로 인한 입주민과 소유권자의 다툼으로 관련 인허가의 부적정한 처리에 대한 행정책임은 별도 감사의뢰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사전 안내하였고 논외로 하였음.
- 나. 위 민원 발생시점(2016.05.30.) 당시 도로과 담당자와 면담 시 도로과 주관 경계측량 결과 해당 토지면적(32m<sup>2</sup>) 내 도로시설물이 상당부분(1/3정도) 침범된 것으로 확인되어 관리 주체인 LH공사의 귀책사항에 대해 상호 중재를 통해서 신청인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하였음.
- 다. 이후 관계기관(LH공사·LX공사) 협의 결과, 도로시설물(보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재측량 결과 5m<sup>2</sup>로 나타났고 측량결과 좌표에 대해 관계기관 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음.
- 라. 종합해 보면, LH공사의 귀책사항으로 책임져야할 도로시설물(인도)이 차지하는 면적이 당초 측량결과와 달리 그리 크지 않은 점, 재측량 결과에 대해 신청인의 불만 가중 등 상호 중재가 어렵다고 판단됨.
- 마. 이에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해 2016.10.04.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양해를 구하고 민원 종결의 불가피함을 설명함.

#### □ 결 론 (심의종결)

해당 민원은 소유권 변경에 따른 입주민과 소유권자의 다툼, 즉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상호중재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조정불가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 종결함.

## 12. 농지 농업용수 보장 요청

### 1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고속도로 및 정수장 관련 공사로 인해 농지 농업용수 고갈 우려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대책 마련 요구
조 증 익	

### 2 조사내용

#### □ 신청 취지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번지에서 30년간 벼농사를 해왔는데 비봉-매송간 고속도로공사와 정수장(매송면 천천리 ㉠㉡)공사로 인한 농업용수 고갈 우려로 2015. 9월경 민원을 제기한 바 화성도시고속도로(주)에서 민원해소를 위해 기존수로 보존연결공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이를 통해 농업용수가 확실히 확보될 수 있는지 사전 확인 설명이 필요하고 현재 위 공사로 인해 기존 수로가 폐쇄되어 있는 상태로 물 공급이 전혀 안되어 이에 대한 공급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

#### □ 피신청인의 주장

##### (1)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 수도건설사업단 측의 주장

위 사업단에서는 민원인 논 상류인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번지 일대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별도 정수장 구내 지표수 사용계획 및 기존 유역면적 변경사항이 없음에 따라 전량 우배수 관로를 통해 집중 배수되므로 농업용수 공급여건에는 변동이 없고, 기존 용수량 관련 최근 정수장 우배수 관로 후단 기존수로 연결지점 확인결과 일정수량이 흐르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2) 화성도시고속도로 주식회사 측의 주장

위 회사측에서는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하여 끊어진 수로(정수장 쪽에서 민원인 논으로 흘러 내려오는 수로)를 공사가 마무리 되면 연결해 주겠다고 하고, 또한 공사가 끝날 때 까지는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살수차를 이용 민원인의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 해주고 있었음.

## □ 사실관계

가. 민원인은 30여년 전부터 매송면 천천리 ○○번지 논 600여평을 농지 상류인 천천리 ㉠㉠번지 일대에서 농업용수가 흘러 내려와서 농사를 지어왔는데 몇 년 전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 수도권 수도사업의 일환으로 정수장을 건설하여 농업용수 보장이 어려워 졌고,

나. 또한 화성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하여 기존수로가 차단되어 농업용수 보장이 안되고 있음.

다. 민원인이 주장하는 농업용수를 보장코저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 건설사업단, 화성도시고속도로주식회사, 민원인 등, 시민옴부즈만이 참여 농업용수 보장 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회의결과, 화성시민 옴부즈만에서는 농업용수 부족시 대책의 일환으로 소형관정을 설치 추진코저 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별도 정수장 구내 지표수 사용계획 및 기존 유역면적 변경사항이 없음에 따라 전량 우배수 관로를 통해 집중배수 되므로 농업용수 공급에 변동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농업용수 부족상황 발생 시 조치계획 등 의견회신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아무런 답변이 없고, 화성도시고속도로주식회사 측에서는 공사 종료 때 까지 살수차를 이용 농업에 지장없도록 용수를 공급해 주고 있었고, 또한 공사 종료 후 민원인의 논 까지 끊긴 수로를 다시 연결해 주기로 함.

## ③ 조사결과

### □ 결 론 (심의종결)

민원인의 신청취지와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 수도건설사업단의 주장, 화성도시고속도로 주식회사의 주장 그리고 사실관계 등을 살피건대, 향후 농업용수 부족 시 대책의 일환으로 관정 등을 설치 추진코저 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사업단 측의 거부로 더 이상 대책을 추진키 어려워 민원을 종결하고자 함.

### 13.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버섯재배사 영업보상 요구

#### ①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토지수용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 20년 이상 영위 해온 버섯재배를 지속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영업보상 요구
박 종 풍	

#### ② 조사내용

##### □ 신청 취지

신청인은 화성시 송산동 ㉠㉠㉠-㉡번지 일원에서 20년 이상 버섯재배를 해 왔는데, 태안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수용되어 더 이상 버섯재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당연히 영업보상을 해 줘야하는데, 시에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니, 이의 해결을 요청.

##### □ 피신청인의 주장

가. 민원인은 버섯재배사에 대한 영업보상을 요구하나, 해당 버섯재배사는 무허가 건축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없어, 영업보상에 해당되지 않음.

나. 버섯재배사에 대한 건축 허가 및 적합한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했다면, 영업보상 대상임.

다. 영업보상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허가건축물이나 불법 형질변경 토지 등이 아닌 곳)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과 그 영업을 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일 경우 영업 보상대상임.

##### □ 사실관계

가. 위 태안도시계획도로 2-7호선 개설공사 사업인정고시일: 2013.01.02.

나. 위 민원인(㉠㉠㉠) 버섯재배:1986년 1월 10일부터 2016년 1월 현재까지 계속 재배 중(수원세무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 증명원 등).

다. 사업실적 등 : '97.2.5.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대상 조직 확정 통보(태안읍장), 2005년 태안농협 출하내역 등.

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제외)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2007.4.12.)제3조(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호, 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52조 및 제54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 ③ 조사결과

#### □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7조 제 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규칙 제45조는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 형질변경 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 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 화성시 건설과(보상팀)에서는 위 버섯재배사가 무허가건축물이기 때문에 영업보상이 안된다고 하나, 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2007.4.12.개정)제3조(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1989년1월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라고 규정.

다. 위 민원인 〇〇〇은 1986.1.10. 수원세무서에 “상호: 〇〇버섯농원” 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버섯재배를 해 오던 중, 위 태안도시계획도로 2-7호선 개설공사 사업인정고시일인 2013.01.02.현재 계속 버섯재배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상식적으로 버섯재배사 없이 버섯을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버섯재배사는 최초 위 버섯재배를 시작할 때인 '86년 1월 이전 건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최초 버섯재배는 '86년 1월 시작했기 때문에 위 법 개정에 따라 설사 위 버섯재배사가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위 규칙 보칙이 2007.4.12.개정되어 '89년 1월 이전 무허가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86년1월부터 버섯재배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영업보상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됨.

□ 결 론 (시정권고)

그러므로 위 건 신청인의 주장인 버섯재배사는 '86년 1월 이전에 건축되어 버섯 재배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위 규칙 보칙(2007.4.12.)개정으로 '89년 1월 이전 무허가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보상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기로 함.

④ 해당부서 조치결과 (수용)

시민옴부즈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신청인에게 2016.10.05. 영업보상비(금 12,791천원)를 지급결정 함.

## 14. 압류등기 말소 신청

### ① 민원요지

주관 옴부즈만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 번지에 30여년 전 화성군에 의해 압류등기가 되었는데, 그 원인이 불명하여 압류해제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의 해결을 요청
박 종 풍	

### ② 조사내용

#### □ 신청 취지

1987.5.27. 화성군이 압류한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 전 1,934제곱미터에 대하여 압류 원인을 밝혀 압류해제 요청.

#### □ 피신청인의 주장

가. 약 30여 년 전인 '87년 5월 화성군에서 위 부동산을 압류 하였는바,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어느 부서에서 어떤 채권 때문에 압류했는지 현실적으로 사실상 파악 불가.

나. 소관 부서를 알 수 없으니, 책임지고 앞장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할 부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다. 이로 인해 민원인은 장시간 고통을 겪고, 시장비서실, 징수과, 민원실, 옴부즈만실 등을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도 해결 못함.

#### □ 사실관계

가. 2015년 화성시 예산결산서상 채권총괄계산서에 신청인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음. 채권 없이 압류된 상태임.

나. 설사 압류 당시인 1987.5.27.전 소유자 ●●●에 대한 채권이 있었다라도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법원처럼 압류 후 소제기 등 절차 없이 30년간 내버려두었기 때문에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압류 시점부터 또다시 재정시효 5년이 경과되어 채권 소멸로 현재 민원인에 대한 화성시의 채권은 없고, 압류 정당성 상실됨.

다. 2016.6.29.현재 위 해당 토지에 대한 화성시의 압류는 불법이고 그 불법상태가 20년 이상 지속 됨.

### ③ 조사결과

#### □ 판 단

가.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화성시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어느 부서에서 압류했는지도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음으로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성시 재무규칙 제3조에 따라 화성시 채권총괄관리관 겸 징수관인 안전행정국장이 위 동화리 ●●● 전 1,934제곱미터에 대한 압류를 곧바로 해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됨.

나. 또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또다시 민원인이 이부서 저부서를 전전긍긍 하면서 고충 받지 않고 곧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침(룰)을 정할 필요가 있음.

#### □ 결 론 (시정권고)

그러므로 위 건 화성시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신청인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즉시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화성시 시민음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기로 함.

### ④ 해당부서 조치결과 (수용)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의 사무와 세외수입 체납에 관한 사항은 징수과에 분장되어 있고 향후 유사사례 민원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처리토록 하였고 해당 부동산은 2016.07.06. 압류해제 조치 완료됨.

## 15.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부당

### ①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개인 사정에 의해 부득이 농지를 휴경상태로 놔두었는데, 이에 따른 농지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당한 행정 처리로 생각되니 이의 철회를 요청
김진환	

### ② 조사내용

#### □ 신청 취지

화성시 장안면 덕다리 ㉠㉠㉠번지 답 3,763㎡ 소유자로서 2012년부터 농사를 지을 수 없어 해당 농지를 휴경상태로 놔두어 이로 인해 금년에 화성시 농정과로부터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3,300만원을 부과 받았는데, 이는 부과금액이 과다하고 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2012년 당시 해당 농지 주변 신청인 소유 임야지 훼손관계로 산림청과의 소송문제 및 인접농지 성토로 인한 피해, 남편의 지병에 따른 입원 등으로 인해 농사에 신경을 쓸 수 없었던 상태임을 감안하여 이의 해결을 요청.

#### □ 피신청인의 주장

가. 2012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시 해당농지를 현장 확인한 바, 휴경상태로 확인되었고 휴경에 다른 정황을 확인코자 농지법 제55조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농지법 제10조에 의거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년간 농지처분 의무부과를 통지하였음.

나. 1년간 농지처분 의무기간 중 소유농지를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법 제12조에 의거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하나, 신청인은 해당농지를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매도위탁계약을 체결치 않아 농지법 제11조에 의거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였음.

다. 처분명령 기간 종료 시 까지 신청인은 해당농지를 처분치 않아 농지법 제62조에 의거 공시지가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신청인 소유 부동산 압류처분 하였음.

라. 아울러 신청인은 소송으로 인해 소유농지를 경작할 수 없었으며 인접농지의 성토로 인해 수렁논이 되어 경작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에 부합하지 않아 행정 처분을 철회할 수 없음.

## □ 사실관계

### 가. 행정처분 처리내역 검토

* 2012. 12. 14.	2012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제출	*조사결과: 휴경
* 2013. 02. 12.	처분대상 농지 결정을 위한 청문참석 알림	*청문일시: 2013.03.13.
* 2013. 04. 03.	농지처분 의무부과	*처분 의무기간 2013.4.3.~2014.4.2.
* 2013. 05. 13.	농지처분 의무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 2014. 04. 03.	농지처분 의무기간 종료에 따른 재조사 요청	
* 2014. 04. 17.	재조사 결과 제출	*재조사결과: 휴경
* 2014. 05. 23.	농지처분 명령 통지	*처분명령기간 2014.5.22.~2014.11.21.
* 2014. 12. 03.	농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1차]	
* 2015. 01. 16.	농지 이행강제금 부과 [1차]	
* 2015. 07. 29.	농지처분명령 이행 촉구	
* 2015. 11. 30.	농지 이행강제금 부과 [2차]	
* 2015. 12. 08.	농지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통지	
* 2016. 02. 24.	농지처분명령 미이행 및 이행강제금 미납에 따른 이행촉구	

### 나. 관련 법률관계 검토

※ 농지법 시행령 제9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2.7.10, 2013.12.30., 2016.1.19]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 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명령을 받은 경우

카.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②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9조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 다. 화성시 공간정보시스템 연도별 위성사진 확인



#### 라. 신청인의 방문에 따른 의견청취

- 주변 토지 성토로 인하여 신청인 소유 농지에 배수 등이 원활치 않아 농사짓기에 여의치 않았고 주변 임야 토지 훼손에 따른 산림청과의 소송 문제와 남편이 지병으로 입원 가료 중에 있어서 부득이 해당 농지를 관리하지 못하였고
- 또한, 경황이 없어 화성시로부터 통보된 우편물 등도 제때 확인하지 못하여 청문회 및 농지처분 의무 등에 대응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함.

#### 마. 현장조사 확인

- 2016.07.13. 현장조사 확인 결과, 장기간 휴경상태로 인해 수풀이 우거진 상태이나 신청인 소유 농지를 포함한 주변 농지가 농업 진흥구역으로 비교적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고 배수로의 상태도 양호하였음.

- 신청인의 주장대로 인접 농지 성토로 인한 영향으로 해당 농지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해 보이지 않음.



### ③ 조사결과

#### □ 판 단

가.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2012년부터 해당농지는 휴경상태였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휴경사유는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와는 무관해 보이고

나. 피신청인이 통지한 농지처분 의무기간(2013.04.03.~2014.04.02.)에도 자경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해당 농지가 주변 농지 성토 영향으로 경작이 불가하다는 주장은 배수 관계 및 지형구조상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농지처분 명령 및 농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으며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음.

#### □ 결 론 (기각)

민원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위법·부당한 행위는 발견할 수 없고 신청인의 요구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위 민원을 종결함.

## 16. 부동산 압류해제 요청

### ①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 번지에 52여년 전 화성군에 의해 압류등기가 되었는데, 그 원인이 불명하여 압류해제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의 해결을 요청
박 종 풍	

### ② 조사내용

#### □ 신청 취지

1964.12.30. 화성군이 압류한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 전 2003제곱미터에 대하여 압류 원인을 밝혀 체납세금이 있으면 납부할 터니, 압류 해제 요청.

#### □ 피신청인의 주장

가. 약 52 년 전인 ‘64년 12월 화성군에서 위 부동산을 압류 하였는바,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어느 부서에서 어떤 채권 때문에 압류했는지 파악 불가.

나. 소관 부서를 알 수 없으니, 책임지고 나서서 압류를 해제할 부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

다. 이로 인해 민원인은 고통을 겪고, 징수과에서도 해결 못하고 읍부즈만실로 민원인 안내함.

#### □ 사실관계

가. 2015년 화성시 결산서상 채권총괄계산서에 위 신청인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화성시 채권없이 화성시가 압류한 형국 임.

나. 설사 압류 당시인 ‘64년도에 소유자 ●●●에 대한 채권이 있었더라도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법언처럼 압류 후 공매의뢰 등 체납처분 절차 없이 50년간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압류효력이 있는 압류 시점부터 다시 재정시효 5년이 경과되어 압류시효 소멸로 현재 민원인에 대한 화성시의 채권 및 압류권은 시효 소멸.

다. 2016.7.14.현재 위 신청인 토지상의 남아있는 화성군에 의한 압류 표기는 불법으로 즉시 삭제되어야 함.

### ③ 조사결과

#### □ 판 단

가.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화성시의 채권 및 압류 권은 시효소멸로 존재하지 않고 어느 부서에서 압류했는지도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성시 재무규칙 제3조에 따라 화성시 채권총괄관리관 겸 징수관인 자치행정국장(서기관 ○○○)이 위 송교리 ○○○ 전 2,003제곱미터에 대한 압류를 곧바로 해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됨.

나.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런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효 소멸된 압류를 찾아서 미리 해제하고, 또다시 이런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방침(률)을 정할 필요가 있음.

#### □ 결 론 (시정권고)

그러므로 위 신청인의 부동산에 대한 화성군의 1964년12월30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표기건은 시효 소멸되었고, 현재 그런 채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압류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기로 함.

### ④ 해당부서 조치결과 (수용)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의 사무와 세외수입 체납에 관한 사항은 징수과에 분장되어 있고 향후 유사사례 민원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처리토록 하였고 해당 부동산은 2016.12.23. 압류해제 조치 완료됨.

## 17. 공장신설 승인 신청 관련 조속한 처리 요청

### 1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공장신설 승인신청 관련 저수지와 반대방향으로 배수계획을 반영하였으나 관련법상 저수지 상류지역에 해당되어 승인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조속한 처리를 요청
박 종 풍	

### 2 조사내용

#### □ 신청 취지

2015.1.21.화성시 우정읍 화수리 ㉠㉠㉠-㉡ 번지 외 4필지 일원 14,045제곱미터에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을 이전, 설치하기 위하여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했으나, 신청지가 농업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한 떡우저수지 상류라 폐수배출시설공장은 안된다고 하면서,

수계를 변경하여 즉 우수, 오·폐수 등 배수계획을 저수지 반대쪽인 화수사거리 쪽(화옹호, 서해안방면)으로 돌리면, 위 부지 우수 등이 저수지로 흘러가지 않아, 저수지를 오염시키지 않음으로 공장 승인을 거절할 명분이 없어짐으로 설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는 담당부서 권유에 따라,

9부~10부 능선에 위치한 신청지의 수계가 수리역확상으로 변경이 가능한 지를 검토한 결과, 설계전문기관에서 2억원 정도 비용을 추가하면, 변경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어, 그와 같은 부지조성(성토포함)계획 및 배수 계획 등을 반영하여 다음해인 '16.4.28.공장 승인을 재신청하자,

담당부서에서 이번에는 말을 바꿔, 또다시 공장설립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서, 환경청에서 수계를 변경하더라도 폐수배출시설 아닌 공장만 협의가능하다는 회신이 왔다는 이유로 공장설립 승인을 내주지 않으나,

공장설립 계획상 수계가 변경되어, 계획대로 공장이 지어지면, 저수지 상류가 아니므로 저수지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없음으로, 저수지 수질보호를 위한 법 조문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니 조속히 공장설립 승인처리 요망.

#### □ 피신청인의 주장

(1) 위 공장 설립 승인 신청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이 계획 관리지역이고,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자연녹지에 해당.

- (2) 위 부지는 위 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10호와 제34조 등에 의거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하고, 폐수배출시설은 수질5종에 한하여 입지 가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이 없는 시설에 한하여 설립 가능.
- (3) 그런데,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설립제한)는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저수지로부터 수계 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 미터 이내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은 설립할 수 없는데, 위 부지는 먹우 저수지 상류 유하거리 약 700미터 지점이고, 위 공장은 자동차부품 제조시설(폐수배출시설 5종)에 해당되어 공장 설립 승인이 제한 됨.
- (4) 2014년 당초 공장 설립 승인 신청서 검토 시, 어려운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공장설립을 승인해 주는 방향에서 저수지 농업용수 수질 보전을 위해 위 공장부지상의 수계를 변경할 경우, 즉, 공장부지의 수계를 저수지 반대방향으로 변경하면 즉 우수, 오수, 폐수가 저수지 반대방향으로 흘러, 폐수배출시설 공장이라 할지라도 저수지가 오염될 리 없기 때문에 공장설립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적극적으로 공장설립을 허용하기 위하여, '15년1월 제출한 공장설립신청을 자진 취하하게하고, 수계 변경이 가능한 지 검토하게 한 후, 만약, 수계를 변경한 공장설립계획을 다시 제출하면, 공장설립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하자, 민원인은 당초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를 취하하고, 수계를 변경한 공장설립 승인신청서를 재작성하여 ' 16년4월28일 제출 하였는바, 이를 2016.6.28. 한강유역환경청, 농어촌공사 등 과 재협의한 결과, 위 청에서 수계 변경과 상관없이 또다시 폐수배출시설 공장이라는 사유로 공장 설립 협의 반려. 라는 통보를 받아 공장 설립 승인 곤란.
- (5) 수계를 변경하면, 공장허가를 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수계를 변경하면, 저수지 농업용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없음으로 이치상 허가를 안 내줄 이유가 없음으로 화성시로서는 그것으로 불허가할 이유는 없음으로 관련기관 협의 후 허가 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말했는데, 2016.4.28.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건설과 의견이 신청지는 농어촌공사 관리 먹우저수지 상류지역으로 농어촌공사와 별도 협의. 라는 의견이 있었고, 위 공사와 협의 결과, 환경부 한강유역 관리청과 별도 협의. 라는 회신을 받고, 지방환경청과 협의결과, 폐수배출 시설공장이고, 저수지 상류로 공장설립협의 반려. 회신을 받음.
- (6) 위 신청지는 공장부지 조성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되면, 우수, 오·폐수 등이 부지조성공사 및 배수계획에 따라 저수지 반대방향으로 자연적 표고 차에 의해 흘러감으로 저수지 농업용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없고 아울러 저수지 상류에도 해당되지 않으나, 위 공장 부지조성

공사 착수 전 현황 상태에서만 판단할 때는, 자연 배수가 저수지 쪽으로 흐르게 되어 저수지 상류에 해당되므로 위 법에 따라 폐수배출공장 승인이 제한되는데,

이때, 위 부지가 수계 상 상류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에 대한 판단 기준을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가 아닌 공사 착수 전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 공장부지 조성공사 완료 후에 수계가 변경되어 저수지 상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지조성 공사 착수 전 저수지 상류에 해당하는 위 지번에 대하여는 공장설립을 승인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

- (7) 피 신청인이 위와 같은 판단하는 데, 만약 해당 부지가 수계상 저수지 상류인지의 판단 시점이 부지조성공사 착수 전이 아닌 완공 후가 기준 이라는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오면, 그 해석에 따라 공장 설치를 승인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음.

#### □ 사실관계

가. 위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 ㉠㉡㉢-㉣ 번지 외 4필지 일원 공장부지 예정지 14,045제곱미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획관리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 지목은 공장용지, 평지임야, 전으로 구성된 경사도가 극히 미미한 평지 구릉지로 되어있어, 공장입구 쪽에서 공장 부지를 바라 볼 때, 공장부지는 중앙 최고 표고가 해발 약30미터정도로 부지 중앙이 가장 높고 부지 왼쪽 끝은 가장 낮아 최저표고가 해발 약27미터, 오른쪽 부지는 해발 약29미터 정도이며 공장예정부지는 중앙 정상 표고 해발 30미터의 9.5부 내지 9.9부 능선 상에 좌, 우로 길게 걸쳐져 있어, 현재 현황 상으로는 부지 좌측 지역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은 먹우저수지 쪽 우수관로와 연결되어 저수지로 흘러가고, 우측에 떨어진 빗방울은 저수지 반대편인 화수사거리 방향 우수관로와 연결되면 화옹호(서해안)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완전 구릉지 정상부근에 위치한 바,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경우, 수리역학상 부지조성 및 배수계획에 따라 공장부지 내 모든 우수, 오수, 폐수는 신설될 140미터의 배수관로(600밀리)를 따라 저수지 반대편인 화수사거리 방향 우수관로에 연결 및 유입되어, 부지 내 단 하나의 빗방울도 먹우저수지 쪽으로는 흘러가지 않고, 그 반대 방향인 화옹호 쪽으로 흘러 서해 바다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 먹우 저수지 농업용수 수질오염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 나. 위 공장부지에 공장설립이 승인되어 계획대로 공장부지가 조성되고 배수관로가 설치될 경우, 위 부지는 해발 기준 표고상으로는 저수지 상단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지만, 수계 상으로는

저수지 상류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빗물이 저수지 쪽으로는 흐를 수 없고, 반대편 방향으로 흘러,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설립제한) 적용 지역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 위 공장에서 제조하려는 품목은 공장설계도에 의하면, 자동차 동력전달장치 부품 무단변속기(30391), 전자제어식 제동장치(ABS)등 자동차부품생산으로 첨단업종에 해당되고, 위 업종은 조립금속제조업으로 폐수배출시설(5종)에 해당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배출되지 않음.

라. 위 민원 신청인은 현재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〇〇〇-〇에서 자동차부품공장을 운영하는 자로 위 화수리 해당 부지로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승인 가능 여부 등 전후 사정을 자세히 살피지 않은 채, 은행대출 등 65 억 원 등으로 기존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15년 1월 21일 공장 설립승인을 신청했으나, 신청한 공장이 폐수배출시설(5종)공장으로 수계 상 저수지 상류에 위치하여 농업용수 수질 보전을 위하여 공장설립 승인이 나지 않자 수계를 저수지 쪽이 아닌 그 반대편으로 변경하면 승인이 가능하다는 담당자 및 담당 팀장의 제안(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당초 공장설립 승인신청서류를 자진 철회한 후, 약1년여에 걸쳐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수계 상 저수지 상류에 해당하지 않도록 수계를 변경하는 배수계획 등 각종 인허가를 받고, 설계 및 계획을 세워 '16년 4월 28일 다시 공장설립 승인 신청하자, 담당부서에서 말을 바꿔, 같은 해 8월 5일 수계를 변경했지만,

폐수배출시설공장이고, 수계 변경 전에 상류였기 때문에 수계를 변경해도 공장승인이 안 된다는 한강유역관리청의 반려 회신을 이유로 8.10.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공장설립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주)◆◆◆은 극심한 경제적 손해를 입어, 회생불능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임.

### ③ 조사결과

#### □ 판 단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부지조성에 관한 법령과 현지 지형 및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 가. 쟁점1.

수계가 먹우저수지 쪽이냐? 그 반대편이냐? 에 대한 판단 시점을 공장부지 조성공사 전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공장부지 조성 및 배수계획과 방류수의 최종 방류지역을 표시한

도면대로 시공할 것을 전제로 그 전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에 대하여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가?

화성시 및 지방환경청 입장은 지금 현황 상 저수지 상류이고 현황 상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 제22조 위반으로 공장설립이 불가.라 하고 민원인은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공장 때문에 오염우려가 있어 공장설립을 제한하려는 것이니, 설계도 등을 보고 공장이 완성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수계를 판단해 달라는 요구. 현황상으로는 수계저측으로 공장설립 불가이나, 설계도면대로 시공했을 때는 수계변경으로 저수지 상류에 해당되지 않아, 공장설립이 가능한 상황 임.

문제는 결국 공장이 들어섰을 때, 저수지 농업용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를 따져서 공장설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공장설립 계획도면을 보고 판단하는 게 타당함. 만약 그것을 보지 않고 담당부서 및 환경지청 논리대로 자연 현황상태에서만으로 수계를 판단한다면, 현재 현황상태에서는 저수지 수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라도, 공장부지 조성공사 후, 지반이 변경되어 수계가 변경되어 저수지를 오염시키는 결과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장부지조성이 완성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그 도면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

본 건의 경우, 공장설립신청서는 완성 후에 저수지 수계가 아닌 것으로 구조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공장설립 승인 후 설계대로 시공하는지 감독, 확인하면 충분히 이행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됨. 그런 관리감독 하에 제대로 시공될 경우, 본 건 공장설립 승인 신청지는 저수지 상류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설립제한)을 이유로 공장설립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음. 수계가 변경되어 수계상 저수지 상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수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에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농어촌정비법 제 22조는 본 민원에 적용할 여지가 없는데 그 조항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공장설립 승인을 내 주지 않는다면, 이는 논리적 모순으로 보임.

이 건과 관련

위 농어촌정비법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입장(2016.7.20.제목: 법령해석요청. 농업기반과 -3205)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정의가 이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을 이행하고,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농어촌용수 수질보전을 위한 위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여 폐수배출시설 공장설립 승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또한 위 부 유권해석(2016.8.29.농어촌정비법 질의회신(저수지 상류지역의 의미 및 반대해석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2AA-1608-366633)에 의하면,

농어촌정비법제22조에서 저수지 상류 일정지역에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취지는 “농어촌용수 수질보전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제공하기 위한 것 등으로 공장 설립 전에 공장부지 공사 및 배수관로 등의 설치를 통해 수계를 달리하여 공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전량이 저수지로 유입되지 않아 저수지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수계가 바뀌므로 저수지 상류로 볼 수 없으며 공장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하고 있고,

한편, 화성시 법률해석 자문을 받고 있는 고문번호사인 법무법인 이래(2016.8.31.제목: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저수지 상류지역의 의미 및 반대해석 가능여부)의 자문의견에 의하더라도, “농어촌정비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의 저수지 상류지역의 의미 및 적용 범위를 명시적으로 밝힌 유권해석 레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나, 본 사안의 경우 공장설립이 예정된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번지 외 4필지는 먹우저수지보다 상부에 위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① 귀 시가 위 공장설립 승인처분을 하면서 당해 공장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오·폐수, 우수 등 공장 전체의 자연방류수 수계가 자연유하방식으로 저수지 반대방향으로 흐르도록 부지조성계획 및 배수계획을 세울 것을 명할 수 있고, ②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는 신청인이 전량 수거하여 위탁 처리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며 ③ 이와 같은 부지조성 및 배수계획에 따르면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오폐수 등 자연방류수는 저수지 수계와 달리 반대방향으로 수계가 변경될 것이 예정된 사안이어서,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 상 상류 방향’ 과 그 수계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공장설립예정부지가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저수지가 오염될 우려가 없고, 이는 인근 주민들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염려가 극히 적다고 사료 됩니다.

그렇다면 이상의 법령의 규정취지 및 적용범위에 대한 합목적적 해석에 의할 때, 본 건 공장부지는 위 법에서 제한하고자 하는 저수지 상류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시가 본 건 공장설립승인 신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하여 불허한다면 신청인은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쟁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사건 공장의 신축, 운영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 등 공익이 침해받을 가능성은 없거나 아주 경미한

반면에 본 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자 (주)◆◆◆이 입는 경제적 손해는 극심하다고 할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하여 공장건설승인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임.

## 나. 쟁점 2.

본 민원이 최초 접수된 2015.1.21. 화성시 담당부서 및 담당자는 수계를 변경해서 저수지 농어촌 용수의 수질오염 여지를 없애면, 공장설립을 해도 무방할 것이므로 공장설립을 승인해 주겠다고 구두 약속한 것은 실질적으로 저수지 오염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절차를 거쳐 승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표시였지,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승인해 주겠다고 뜻이 아니며, 2016.4.28. 수계를 변경해서 다시 신청하였으니 작년 약속대로 공장설립을 승인해 달라는 민원인의 요구에 대하여 담당자는 본인도 승인해 주려고 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했는데, 위 청에서 이번에도 폐수배출공장은 수계 변경과 상관없이 협의를 거절하는데, 담당자로서 어떡하느냐? 라며 공장설립 승인을 내 주지 않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담당 부서 직원으로서 기관장을 대신해서 민원인에게 한 약속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국민에게 한 약속과 같은 것으로 고도의 신뢰성을 유지하여야 함으로 다른 이유로 함부로 번복되어서는 안 될 것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모순행동 금지의 원칙, 금 반언(일구이언금지)의 법칙에 위배될 소지(대법원 1995.6.16.선고94누12159 판결. 법령상 취득세 부과 대상이지만 담당자가 면제해준다고 약속했으므로 법령 내용과 관계없이 약속을 지켜(면제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더 부합. 유사한 예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계약입찰 공고를 법령에 위배되게 잘못된 경우에도 공고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법령 내용보다 공고를 우선 적용하여 공고 내용대로 집행)가 있어 보이므로, 설사 위 공장설립 승인이 법령에 위배된다손 치더라도 법령준수(불승인)을 통해 얻을 경미한 이익보다는 민원인의 신뢰보호(승인)의 이익이 더 크다 할 수 있으므로 공장설립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 결 론 (시정권고)

그러므로 본 건 공장부지 조성 공사 (성토 포함) 및 배수계획 등을 통해 수계를 먹우 저수지 반대 방향을 돌리는 자연배수로를 설치하여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경우, 저수지 상류에 해당하지 않아 농어촌정비법 제22조를 이유로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함.(공장설립 승인을 검토할 것)

④ 해당부서 조치결과 (진행 중)

피신청인이 옴부즈만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2016.09.28.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동 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이에 민원처리기간 연장 및 관련법령 해석에 대해 2016.12.22.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의뢰하여 검토 진행 중에 있음.

## 18. 지하수 고갈에 따른 피해발생 및 대책 요망

### ①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화성시에서 한해대책 일환으로 농업용수용 중대규모 관정 설치로 인해
조 증 익	신청인 집에 기 설치된 소규모 관정에서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의 해결을 요청

### ② 조사내용

#### □ 신청 취지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㉞㉞-㉞번지 민원인이 거주하는 집에 소규모 관정이 설치되어 있는데 최근 화성시에서 한해대책으로 인근에 농업용수용 중대규모 관정(지하 120미터)을 설치하여 이의 영향으로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 요망.

#### □ 피신청인의 주장

화성시 건설과에서는 2016년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민원인의 집 인근에 농업용수용 중대규모 관정을 설치함.

#### □ 사실관계

가. 민원인은 3년 전 현거주지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계까지 해놓고 건축업자가 준공을 득하지 못한 채 도주하여 상수도를 해결하지 못하고 집 근처에 소규모 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등을 사용하고 있던 중, 시에서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민원인의 집 인근(8미터 지점)에 농업용수용 중대규모 관정을 개발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관정을 사용할 때는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물이 나오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었음.

나. 시에서 발주한 중대규모 관정개발 때 관정개발업자가 소규모관정(지하30미터)과 중대 규모관정(지하120미터)의 물줄기가 달라서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해서 인근에 설치해도 좋다고 동의해 줌(소규모관정과 중대규모관정은 8미터 떨어짐).

### ③ 조사결과

#### □ 판 단

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수도를 연결하여 해결하기로 하고, 건설과(○○○ 팀장),

맑은물사업소(●●● 주무관), 신청인(○●○), 시민옴부즈만이 합의하에 맑은물사업소 시설팀에서 기반시설로 상수도 관로를 민원인의 집 부근까지 연결하여 주고, 이후부터 민원인은 상수도 신청을 하여 연결하는 조건으로 2016.10.25. 합의함.

□ 결 론 (합의)

신청인의 신청취지와 피 신청인의 주장 그리고 사실관계 등을 살피건대, 위와 같이 건설과 ○○○ 팀장, 맑은물사업소 ●●● 주무관, 신청인 등이 상수도를 설치하여 민원을 해결하기로 합의(합의서첨부)되어 당해 민원을 종결하고자 함.

## 19. 생활오폐수로 인한 피해방지 요청

### 1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덕우저수지에 주변 마을로부터 정화되지 않은 생활 오폐수 방류로 인해 악취, 해충 등의 생활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의 해결을 요청
김진환	

### 2 조사내용

#### □ 신청 취지

덕우저수지 인접에 위치한 신청인의 집 근처로 주변 마을에서 정화되지 않은 채 흘러나오는 오폐수로 인하여 악취, 해충 등의 피해를 겪고 있어 수차례 관계부서에 해결 요청을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재차 민원을 제기함.

#### □ 피신청인의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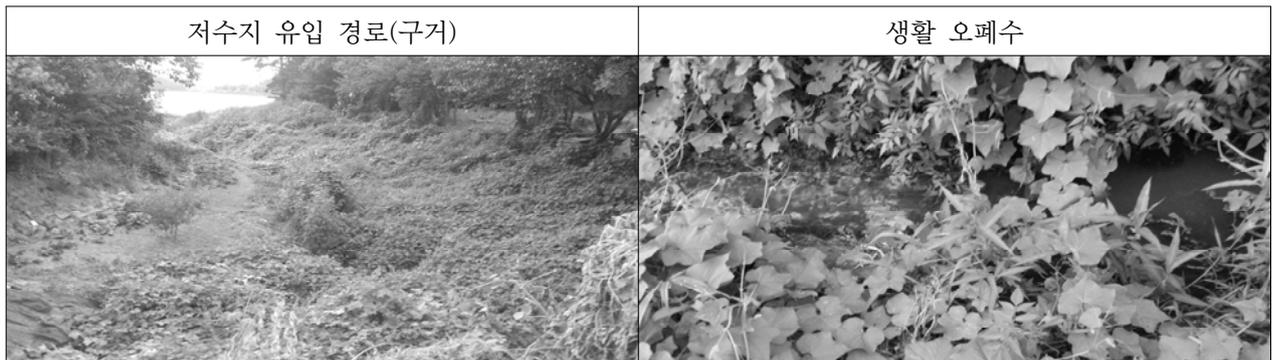
가. 현재 농어촌공사로부터 저수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관계 대책마련 요청이 있고 상기 민원내용도 동일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현재 기술진단 용역을 통하여 오수관로 설치를 검토한 바, 지형상 구배관계에 문제가 있어 신규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나. 다만, 덕우저수지 주변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상자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 사실관계

가. 상기 민원장소를 2016.08.21. 방문하여 현장 확인한 바, 주변 주택과 영세형 공장에서 유입되는 생활오폐수가 정화 없이 덕우저수지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랑 주변은 각종 해충의 서식지에 알맞은 환경이고 악취도 유발되고 있는 상황임.

#### ※ 현장 및 위성사진



나. 신청인은 봉담읍 덕우리 ㉠㉠번지에 위치한 구거부지 정비와 생활오폐수 유입 차단을 원하는 상황이며, 피신청인은 아래 사진(보라색 점선)과 같이 100미터 정도의 오수관로 개설 여부에 대해 지형 상 구배관계의 문제로 자연유하가 어려워 공공하수처리장으로의 유입은 불가한 것으로 2016.10.14. 판명됨.



다. 위 민원접수 후 피신청인은 2016.10.14. 화성시 봉담읍 덕우저수지 주변 개인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상자(27명) 전원에게 연1회 이상 정화조 청소, 전기설비 전원 정상가동,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등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사전안내 조치함. [화성시 하수과-7440(2016.10.17.)호]

라. 위 민원의 해소를 위해서는 덕우저수지로 정화되지 않은 생활오수 유입의 차단이 관건으로 덕우저수지 주변 개인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2017년 상반기 불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배출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단속 필요.

### ③ 조사결과

#### □ 결 론 (합의)

이에 2016.10.31.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단속계획에 합의(합의서 별첨)하여 민원이 해결되었으므로 당해 민원을 종결함.

## 20. 부적법하게 말소된 건축물대장 복원 요청

### 1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토지분할에 따른 지번변경을 못해 실제 건축물 현황과 건축물대장이 불일치되어 존재하다가 말소되어 불법건축물이 되었으니 당초 건축물대장 복원 요청
박 종 풍	

### 2 조사내용

#### □ 신청 취지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000-4번지(전,553제곱미터)에 건축물2동(무허가 주택1동, 사무실1동)이 있었고, 사무실에 대한 건축물대장(주택의 건물대장은 없음)이 있었는데, 그 후 그 필지가 000-4번지(주택 존재)와 000-58번지(사무실 존재)로 분할되어, 신청인이 000-58 토지 상에 존재한 건물(사무실)을 매입하였는데, 위 000-4번지가 분할될 때, 전 소유자가 현황 건물과 일치되게 건축물대장 지번을 정리하지 못한 채, 실제로는 000-58에 건물이 존재하고 건축물 대장상에는 000-4에 존재하는 것으로 기록된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 필요에 따라 000-4지번 상 그 건물의 말소 신청을 한 바(당초 현황 건물이 000-58에 존재하는데, 000-4에 있는 것으로 건축물 대장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는데, 이를 정정하지 않고, 그 대로 000-4 건물 1동을 말소 신청하고 000-4에 있던 무허가 주택은 2013.3.1. 말소되었다고 신고하니, 000-4가 맨땅임으로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상으로 000-4에 있고 실제로는 000-58에 있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말소) 건축물대장은 말소되고 실제로는 000-58지상에 존재하는 당초 적법 건물이었던 건물이 불법건축물이 되었으니 원래대로 건축물대장을 복원 바람.

#### □ 피신청인의 주장

가. 2015.3.10.위 조암리 000-4번지 상 사무실 건물1동을 전 소유자(000)가 해당 지번 건물을 2013.3.1.기 철거한 것으로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을 하였는 바, 과태료 부과 후 같은 달 13. 건축물 대장을 말소시킴.

나. 현 민원인(000) 주장은 건축주(000) 본인이 아닌 제 삼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다. 절차상 행정 오류가 없음.

라. 행정처분을 철회할 사유가 되지 않음.

마. 불법건축물 양성화 신청 시, 도시 지역내 연면적 200m<sup>2</sup> 이하로, 현행 법령에 적법할 경우, 양성화 조치 가능함.

#### □ 사실관계

가. 2010년~2012년 항공 사진 판독 결과, ○○○-4번지에는 1동 건물, ●●●-58번지에는 2동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됨.

나. 2013년 항공 사진 판독결과, ○○○-4번지는 나대지, ●●●-58번지는 3동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독 되고,

다. 2015년 항공 사진 판독결과, ○○○-4에는 새로운 주택이 들어섰고 ●●●-58은 2016.9. 현재까지 변동 없이 3동 건물이 존재한 것으로 보임.

라. 위 조암리 ○○○-4지번 553m<sup>2</sup>은 '96.5.9.전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되고,' 99.2.6.그 중 276m<sup>2</sup>가 ●●●-58로 분필됨.

마.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94.9.15. 위 지번 ○○○-4상에 조립식 사무실 50m<sup>2</sup>가 전 소유자(●●●)에 의하여 사용 승인되어 신규 등록 되었다가 2015.3.13.철거에 의해 말소된 것으로 기록 됨.

바. 화성시 2016년도 재산세(건축물 등)과세대장 등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상 ○○○-4에 기록되었다가 기록상으로만 말소된 위 건물은 '94.9.15. 전 소유자(●●●)가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 존재한 것으로 되어있고, 위치는 ○○○-4가 아니고, ●●●-58으로 관리번호가 부여되어 과세되고 있고, 2009년 이후 2016년 까지 매년 재산세(2016년의 경우 7,070원)가 위 ●●●-58지번에 위치한 것으로 하여 ●●●-58지상에 부과되고 있음.

사. 2016년8월12일 전 소유자(●●●)가 현 민원인 (○○○) 에게 위 조암리 ●●●-58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금액 17,000,000원)을 한 것으로 파악 됨.

아. 위 조암리 ●●●-58번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중로1류(폭20~25미터)도로에 접함.

※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4.1.14, 2015.1.6] [[시행일 2015.7.7.]]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관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1.20,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③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2.11.16, 2015.6.4 제209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 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이 경우 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포함한다.

※ 판례(대법원 1989.12.12.선고 89누5348 판결)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실제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조사결과

#### □ 판 단

신청 원인 및 피신청인의 입장 그리고 사실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이건 건물은 당초 '94.9.15.위 조암리 ○○○-4번지 상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었음.

가. 그 후 위 지번이 ●●●-58로 분필되는 과정에서 본건 건축물대장이 ●●●-58로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4번지로 계속 존재하다가(그 후 재산세 대장은 제대로 ●●●-58로 수정됨), ○○○-4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그 잘못된 지번 ○○○-4상에 건축물대장상으로만 존재하던 그 건축물대장 기록을 누군가가 필요에 의해 말소 신청하여, 2015.3.13.말소된 것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 됨.

나. 그 결과, 실제상 건물은 ●●●-58에 '94년부터 현재까지 존재하나, ○○○-4지번으로 잘못 기재되었다가, 잘못된 말소신청에 따라, 정당하게 말소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부적정하게 말소된 ○○○-4 건축물대장을 실제 현황과 일치되게 ●●●-58번지 상의 건축물대장으로 복원시켜 달라는 민원인 주장은 사실과 부합된 것으로 판단되고, 건축법 제38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21조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후 피신청인이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고 한 위 내용에 따라 위 민원 요청은 무리한 요구는 아닌 것으로 판단 됨.

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과 실제 현황이 일치되도록 직권으로 정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건축물대장의 작성취지에 부합되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 민원인 편의를 위해 말소된 ○○○-4 건축물대장을 ●●●-58로 지번 변경 후 복원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됨.

라. 다만, 말소된 지 이미 상당 기간(1년6개월)이 경과되어 행정의 공정력이나 기타 여건상 현실적으로 건축물대장의 복원을 이행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그 건물(실제로 '94년부터 현재까지 존재하여 건축물대장상 말소되기 전까지 적법했던 ●●●-58 위 건물) 양성화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그 건물을 양성화시켜 건축물대장을 생성시켜 주는 것도 민원인으로서의 약간 부담스럽지만 같은 효과를 가져 오는 것임으로 양성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됨.

본 건 조암리 ●●●-58 지번 건물 50㎡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신청 시, 도시 지역 내 연면적 200㎡ 이하로, 현행 법령에 따라 특별한 다른 위법사항이 없을 경우, 양성화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됨.

#### □ 결 론 (의견표명)

따라서 이 건 '94년부터 '16년 현재까지 실제 존재한 건축물이 잘못된 지번에 등재된 사유 등으로 말소된 본 건 건축물대장을 실제와 부합되게 복원시켜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함(말소된 건축물대장을 복원시키거나 다른 이유로 복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양성화조치 등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만들어 주기 바람).

#### ④ 해당부서 조치결과 (일부 수용)

건축주 본인이 신청에 의해 철거신고가 접수되어 처리된 건으로 절차상 행정 오류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복원은 불가하나 해당 건축물 양성화 신청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할 시 건축물대장 생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21. 정당한 권원없이 국유지로 편입된 개인 사유지 소유권 회복 요청

### 1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번지 일원 도로부지는 당초 사유지로 정당한 권원 없이 국유지로 편입되었기에 당초 소유자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
박 종 풍	

### 2 조사내용

#### □ 신청 취지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 -㉣번지(2016.3.24.㉠㉡-㉢에서 분필) 등 2필지(76㎡)는 당초 신청인 부친 ○○○ 소유 토지인 구포리㉠㉡-㉣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95.11.27. 화성시가 아무런 통보 없이 무주부동산 공고 후 국유지(국토해양부, 도로)로 편입하여 개인소유권 침해를 겪고 있으니, 원소유자에게 돌려주기 바람.

#### □ 피신청인의 주장

위 구포리 ㉠㉡-㉢ 외 1필지 토지(76㎡)는 '68.3.15.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 토지 ㉠㉡-㉣(840㎡)에서 '73.12.26. 필지 분할되고 지적법 제34조에 의거 농로(도로)로 대위 신고 되어, 미등기 토지로 있다가, 1994.5.2.무주부동산공고를 거쳐 구 국유재산법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1995.11.27. 토지대장을 정리, 국(건설교통부)으로 1996.12.24.소유권보존 등기가 이행된 사항으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판결을 받아야 함.

#### □ 사실관계

- 위 구포리 ㉠㉡-㉢(76㎡)은 1968.3.15. 부친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254평,840㎡)에서 1973.12.26.분할된 후 소유권 미등기 상태가 지속 됨(토지이동 사유 :지적법 제34조에 의거 대위신고(농로).
- 1973. 3.26. 일자 부로 위 지번 ㉠㉡-㉢은 지목이 전(田)에서 도로(道路)로 바뀜.
- 1994.5.2. 화성군 무주부동산 공고(화성군 태안읍 병점리 ㉣-㉤외 1874필지)시 위 구포리 799-3도 소유권 미등기를 사유로 무주부동산 공고 목록에 포함 됨.
- 1995.11.27. 위 ㉠㉡-㉢번지 국(소유자 등록).

- . 1996.12.24. 위 ㉠㉠-㉡번지 국(건설교통부).
- . 2016.10.현재. 위 ㉠㉠-㉡번지는 공부 및 현황 상 도로(농로)로 사용 중.
- . 민법 제245조 제1항은 취득시효 요건으로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등기할 것을 요구하며, 제2항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할 것과 아울러 소유자로 등기되었을 것 및 선의·무과실의 요건이 추가하고 있는데, 제1항의 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 내지 ‘일반취득시효’라 부르며 제2항의 취득시효는 ‘등기부 취득시효’라 하는데, 위 토지는 등기부 취득시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 . [대법원 1982.9.28, 선고, 81사9,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245조에 소위 평온한 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데 법률상 용인할 수 없는 강폭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라 함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위요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하 생략).

### ③ 조사결과

#### □ 판 단

- . 위 구포리 ㉠㉠-㉡은 당초 부친 소유의 전 ㉠㉠-㉢에서 '73년도에 국가와 매매계약서 등이 없이 분필되어 도로(농로)로 지목 변경된 후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국유화 된 것으로 보임.
- . '73년도 즈음에는 농로, 새마을도로 개설 등으로 화성군 관내 수천 필지가 분필되어 도로로 편입되어 국유화 조치가 된 예가 있으나, 그 당시 토지소유자가 도로 개설에 따른 구두 기부에 의해 국유화된 것인지 아니면 권원없는 국유화인지 여부를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곤란한 실정이나 위 ㉠㉠-㉡ 필지도 그 당시에 장기간 미등기를 이유로 무주부동산공고 절차를 거쳐 국유화 된 것임.

따라서 설사 위 ㉠㉠-㉡ 필지가 부친 소유 토지 ㉠㉠-㉢에서 분필된 사실이 명백하고, 매매 계약서 등 국가에서 매입한 증빙이 없다고 하더라도 권원의 유무를 따지기 전에 '73년도에 도로로 지목 변경 후 분필되어 현재까지 도로(농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94년 무주부동산으로 위 ㉠㉠-㉡번지가 공고된 사실, '95년 국으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판단컨대,

국가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소유자로 등기한 것 그리고 선의·무과실의 요건이 갖춰져 있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임.

그런데,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위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저각 시킬만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한 사실이 없음.

#### □ 결 론 (기각)

국가의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 지번 도로(76㎡)에 대한 등기부 취득 시효에 의한 취득은 정당하고, 신청인은 위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저각 시킬 만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 하였음.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 함.

## 22.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한 개발행위허가 어려움 호소 및 해결 요청

### ① 민원요지

주관 옴부즈만	첨단 및 비첨단업종 2개의 업종으로 등록된 공장에서 인접부지에 첨단업종으로 공장증설을 계획했으나 관련 규정 등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의 해결을 요청
조 중 익	

### ② 조사내용

#### □ 신청 취지

신청인은 화성시 향남읍 서해로 ㉠㉠-㉠(9,942㎡)에서 장애인 콜택시 등을 생산하는 업체(◎◎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증가하는 시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 공장과 인접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생산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정 등으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

#### □ 피신청인의 주장

가. 화성시 허가민원2과에서는 추가로 증설하고자하는 토지(향남읍 서해로 ○○-◎번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제 1항 제 16호 (별표17) 규정에 의거 자연녹지지역 내에는 일정 규모 미만의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공장만 입지 가능하여,

나. 위 일원에서 사업(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외 1종)을 영위 중인 ◎◎주식회사의 경우 비첨단업종(자체 및 특장차 제조업, 업종코드:30201) 및 첨단업종(자동차 부품 제조업, 업종코드:30320) 기존 2개의 업종으로 공장 등록되어 있어 입지 불가에 따른 공장증설이 불가함.

## □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는 2006. 12. 06.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번지에 비첨단업종(자체 및 특장차 제조업, 업종코드:30201)과 첨단업종(자동차 부품 제조업, 업종코드:30320)등 2종의 제조업을 등록하고 운영해 오던 중 2013. 06. 24. 추가로 첨단업종을 등록하여 운영하여 왔고, 이후 신규 아이템 개발 및 제품 수요 확대에 따른 공장증설이 불가피하여, 인접부지인 상신리 ㉠㉠-㉡번지(임야, 6,034m<sup>2</sup>)를 매입하여 공장증설을 하려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나. 허가민원2과에서는 위와 같이 해당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국토계획법에 의거 첨단업종의 공장만 입지가 가능하여 비첨단업종이 포함된 2개의 업종으로 등록된 위 공장에 대하여 공장증설을 불허하고 있는 실정임.

다. 위 공장은 비첨단업종과 첨단업종 2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으나 2013. 06. 24. 공장증설 때는 첨단업종만 분리해서 등록한 전례가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1항 제16호 [별표17] 에 따라 첨단업종의 증설은 위 지역에서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추가로 증설한 공장시설이 자동차용 부품제조업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5] 의 규정에 따라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시설임.

라. 2016. 09. 22. 시민옴부즈만실에서 허가부서 주무관, 팀장, 과장, 규제개혁팀장, 도시정책과주무관, 시민옴부즈만이 모여 심의한 결과, 공장증설이 예정된 위 상신리 ㉠㉠-㉡번지에 첨단업종공장 증설이 가능한 것으로 의견 일치됨.

## ③ 조사결과

### □ 판 단

따라서 공장증설이 예정된 상신리 ㉠㉠-㉡번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제16호 [별표17]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첨단업종의 증설이 가능하므로 비록 기존 2개의 공장이 비 첨단업종 및 첨단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신규 증설될 공장시설이 첨단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장증설이 가능하고, 또한 2013. 06. 24. 공장증설 때도 첨단업종을 분리해서 등록한 전례가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결 론 (의견표명)

그러므로 공장증설이 예정된 신청인의 위 상신리 부지는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첨단업종의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입지이고, 신청인의 증설예정공장은 자동차용 부품제조업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5) 의 규정에 따라 첨단업종에 해당됨으로 피 신청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검토해줄 것을 의견표명 함.

④ 해당부서 조치결과 (진행 중)

관련 부서(도시정책과)에서 상급기관 질의를 통한 기술적 검토 중으로 협의 진행 중에 있음.

## 23. 수원~인천 간 복선전철사업으로 인한 완충녹지 해제 요청

### 1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수원~인천간 복선전철사업 관련 철도계획이 지하화되어 신청인의 토지에 지정된 완충녹지 해제여부 등에 대한 문의
김진환	

### 2 조사내용

#### □ 신청 취지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번지 등 4필지가 수원-인천 간 복선전철사업으로 인하여 2011년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주택 신축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2015년에 철도계획이 당초 지상에서 지하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고 화성시 담당자도 지정된 완충녹지가 해제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 완충녹지를 해제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언제쯤 해제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철도가 지하로 설치되면 지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기를 바라며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조치 요망.

#### □ 피신청인의 주장

○ [도시정책과 ☞ 도시정책과-17002(2016.10.10.): 고충민원 관련 자료 제출]

가. 봉담읍 수영리 ㉠㉠-㉡번지 일원의 완충녹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을 통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안으로 입안되어 있으며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2016.08.19. 주민열람 공고절차를 진행한 바 있고, 2016년 10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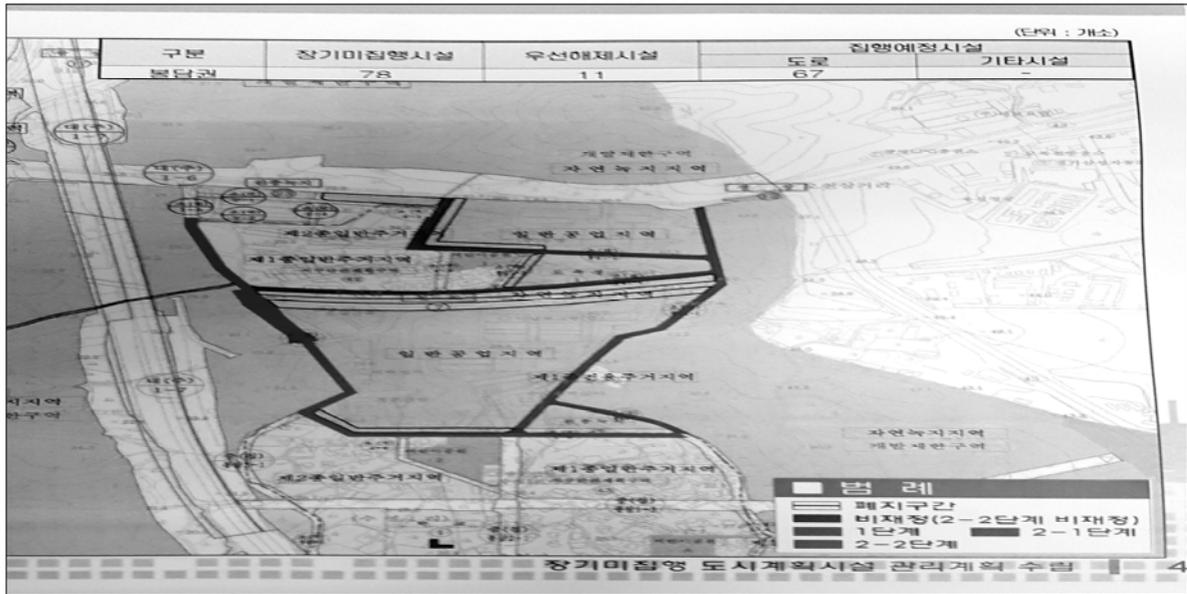
○ [교통정책과 ☞ 2016.10.04. 광역교통팀장 면담 및 교통정책과-17500(2016.10.24.)호]

가. 수인선 복선전철 지하화 계획에 따른 상부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공원조성 사업 추진여부 검토 중임.

#### □ 사실관계

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고 (화성시 공고 제2016-2448호) 관련 녹지 결정(변경)조서에 따르면 위 민원토지에 설정된 완충녹지는 폐지 예정되어 있음.

※ 관계 도면



나. 이에 도시정책과에서 2016년 제11회 市도시계획위원회(2016.10.19.)에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상정하였고 그 심의결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8820(2016.10.27.)호]에 따르면 당초 수인선 철도의 완충녹지로 현재 지하화 계획 등에 따라 폐지를 요청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교통정책과)에서 당해 부지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등을 수립 예정으로 폐지에 대한 재검토 필요 의견이 제시되어 반영되지 않음.

다. 2016.11.02. 교통정책과에 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함.

라. 교통정책과 의견 회신(2016.11.11.)에 따르면, 당초 수인선 복선전철(고색~한대) 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05호)에 따라 위 민원 토지에 완충녹지가 지정되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수인선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2-2공구 노반신설공사」와 관련 기존주택 구간의 완충녹지 해제를 위해 2017년도 사업실시계획 변경 고시에 반영할 예정에 있고 동 지상부는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 중에 있음.

### ③ 조사결과

#### □ 결 론 (심의해소)

위 신청인의 신청 취지, 피신청인의 주장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민원인 토지 관련 완충녹지 해제 문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수인선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2-2공구 노반신설공사」 사업실시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완충녹지를 해제할 예정에 있고 주택신축 제한 문제는 화성시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신축가능 여부가 결정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당해 민원을 종결함.

## 24. 고온항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국유지상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 요구

### ①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고온항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국유지상 무허가 건물에 대해 당초 계약과 다르게 보상거부를 하여 이의 해결을 요청
박 종 풍	

### ② 조사내용

#### □ 신청 취지

신청인은 1998년 건축해서 2016년까지 사용하고 있는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번지 소재 조립식 가건물(난방, 가스, 전기시설 등 포함)32㎡에 대한 보상을 시청에서 해 주려다가, 갑자기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니 당초 감정한 가격(7,146,600원)대로 보상 요구.

#### □ 피신청인의 주장

본 지장물 보상과 관련하여 당초에는 보상하려고 하였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허가 건축물도 보상할 수 있지만,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 등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사례가 있어 현재까지는 보상대상으로 보지 않아 보상금 지급하지 않고 있음. 앞으로 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 사실관계

본 건 보상 문제가 대두된 위 우정읍 매향리 ㉠㉠번지 무허가 가건물이 있는 지역은

- 2014.10.14. 화성시 공고 제2014-2425호.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결정 및 실시계획 열람 공고(고온항 진입도로).
- 2014.12.30. 화성시 고시 제 2012-418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실시계획 고시. 사업 개요 : 도로 신설 연장 318미터, 폭 10미터, 준공예정일: (2015.12.31.)
- 2015.08.19. 보상 계획 공고(고온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 감정평가업자 3인이 산정한 감정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

※ 보상 절차: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 ⇒ 감정평가 ⇒ 손실보상협의 ⇒ 보상금 지급.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수용재결.

- 보상 협의 요청 및 보상협의 계약 체결 : 제1차.2015.11.3. 제2차. 동년 12.9. 제3차. 2016.3.7.
- 손실보상협의 계약서 작성: 2016.7.14. 불법건축물(7,146,600원) 포함 총 보상계약 금액:19,116,600원.
- 2016.03.08. 불법건축물 처리 협조 요청( 해양수산과 ⇒ 우정읍)
- 2016.04.13. 건축물 이전(철거) 명령 통보(우정읍 ⇒ 신청인)
- 2016.6. 고발(우정읍 ⇒ 화성서부경찰서)

본 건 무허가 가건물(난방, 가스, 전기시설 등 포함32㎡)는 1998년 건축되었다 하고, 2006년 이래 보관 중인 항공 사진에 나타나고 있으며 2016년까지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음.

본 건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금은 2016.10.14. 지급 됨.

### ③ 조사결과

#### □ 판 단

- 이 건 무허가 건물(난방, 가스, 전기시설 등 포함32㎡)의 경우, 주거용건물이 아닌 위법 건축물의 경우, 철거 등 원상복구 명령으로 수용이전부터 철거될 수밖에 없어 사회통념상 거래의 대상이 될 여지도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라고 피 신청인이 보상거부의 근거로 제시하는 사례(유권해석, 판례. 대법원2001.4.13. 선고, 2000두6411,판결;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되고 공공사업용지내의 토지에 정착한 지장물인 건물은 통상 적법한 건축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나, 주거용 건물이 아닌 위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와 그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 사회통념상 거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 그 위법의 정도가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객관적으로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거래의 객체도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용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와 동일 유사하다고 보기 곤란함.

(이유 : 1998년 건축된 이래 2014년 사업 고시가 이루어질 때 까지 단 한 차례도 철거명령, 고발 및 철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 오히려 그 철거명령 전에 이미 보상 공고 및 협의가 있었던 사실. 무허가 건물도 보상해야 한다는 판례와 일단 사업 고시가 난 후에는 다른 법령, 즉 민사집행법 등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행정대집행 등의 방법으로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로지 보상법령만을 적용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 사실(서울행정법원 1999.2.24. 선고 98구617 판결(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취소). 사업인정고시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무허가 건축물이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도 현행법상 소유권 기타 재산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며

당해 부지의 수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장물의 보상범위에 관하여 토지수용법은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과 무허가 건물의 경우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고, 지장물인 건물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서도 무허가건물을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허가, 불허가를 구별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특별한 법률상 근거 없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이에 관한 보상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행정청의 철거명령 등 조치를 가지고 ...중략...

철거를 할 수 없으며 행정 대집행 법 제 2조 소정의 요건으로 보면 행정 철거 대집행은 최종적인 강제조치수단으로서 불법건축물이라 하여 항상 모든 경우 대집행절차를 취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보상을 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건축법의 관계 규정에 의한 철거명령 등 행정청의 조치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결과로서 당해 건물이 지장물로서 이전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수용에 관한 관계 법령 자체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이고, 건축법 등의 관계규정 등을 근거로 토지수용법에 의한 보상을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보상이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이고 또한 감정평가에 의하면, 건물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가치가 0(제로)가 아니어서 거래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건의 경우 피 신청인이 보상을 거부하려고 인용한 위 사례 즉, 사회통념상 거래의 대상이 될 여지도 없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 예외적으로 보상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 판례와는 동일유사하지 않음.

※ 화성시(건설과)에서 도로건설 사업시행 고시 이전에 철거명령 및 고발한 무허가건물(비닐하우스에 대하여 3,274만원 보상, 화성시 건설과-27834(2015.11.25.) ) 일지라도 보상을 한 선례가 다수 있음.

- 또한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피신청인(화성시청)이 1차부터 3차까지 보상 협의 요청(청약)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감정가액대로 보상받기로 하는 승낙이 이루어져 민법상 청약과 승낙이 있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2016.7.14.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그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으로 위 계약을 번복해서는 아니 되고 당초 계약대로 이행함이 타당함(이유 :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 원칙. 판례: 대법원, 1995.6.16.선고,94누12159판결. 요지: 구청장의 지시에 따른 총무과 소속직원의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약속에 대하여 신의칙을 적용한 사례).
- 또한 1998년 건축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2014년 사업고시, 2015년 보상공고 이후 보상기간 중인 2016년에 이르러 예전에 없던 철거 명령 및 고발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자진 철거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 보상 불가한 것으로 당초 계약 내용을 번복한다면, 이는 불공정한 행위(권리남용, 보상을 거부하기 위하여 일부러 철거 명령 및 고발 등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 라고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음)로 보일 소지가 있음.

- 따라서 그러지 않으려면, 위 건물이 설사 보상 대상에서 제외(보상 불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가정할 경우라도 피 신청인은 시민으로부터 관청으로서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 적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시민에 대한 신뢰이익(당초 계약대로 집행)을 보호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상하는 것이 타당.

#### □ 결 론 (시정권고)

그러므로 위와 같은 법령 취지 및 사실관계와 그 간 사업추진 경위 그리고 판례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무허가 건물(난방, 가스, 전기시설 등 포함 32㎡)에 대한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화성시 시민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본건 지장물을 보상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기로 함.

#### ④ 해당부서 조치결과 (수용)

시민옴부즈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우정읍 매향리 ㉞㉞번지 소재 무허가 건물(난방, 가스, 전기시설 등 포함 32㎡) 보상과 관련하여 소유자와 협의 계약이 체결된 지장물에 대하여 2017.01.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의거 손실보상금 (7,146,6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25. 동탄2 신도시 유보지내 가림막 및 헨스 설치 요청

### 1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동탄2 신도시 사업구역 내 유보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쓰레기 무단투기 및 비산먼지 등 환경문제와 어린이 안전 문제가 우려되니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요구
조 증 익	

### 2 조사내용

#### □ 신청 취지

동탄신도시 리베라CC 부근(오산동 ㉠㉠-㉡, 오산동 ㉢㉢-㉣ 및 동탄면 목리 산㉤㉤번지 일원)에 장기간 유보지로 남아 있어서 향후 입주민(반도유보라아파트)들에게 환경 및 어린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비산먼지와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가림막 및 헨스 등 보완 조치 등 요구.

#### □ 피신청인의 주장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에서는 위 부지에 대하여 2016. 10. 13. 현장 확인한바 동 부지는 LH 공사에서 동탄 2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계속사업을 해 오면서 붙임과 같이 유보지내 안전 헨스가 없고 쓰레기가 방치되어 환경 및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동년 11. 1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청결유지명령을 통보하여 동년 12. 09.까지 방치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안전헨스 설치, 안내문 게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청결유지명령서를 발부함.

#### □ 사실관계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신도시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동탄면 일원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오던 중, 민원인이 제기한 위 부지는 2016. 10. 13. 시민읍부즈만과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 주무관이 현장 확인한바 동탄 신도시 리베라CC 부근(오산동 ㉠㉠-㉡, 오산동 ㉢㉢-㉣ 및 동탄면 목리 산㉤㉤번지 일원)에 동탄 2신도시 건설을 위한 유보지로서 붙임과 같이 안전헨스가 없고,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 향후 인근 입주민들에게 환경 및 어린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에서 2016. 11. 1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청결유지명령을 통보하여 동년 12. 09.까지 방치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안전헨스 설치, 안내문 게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청결유지명령서를 발부함.

### ③ 조사결과

#### □ 판 단

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성시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에서 위 부지를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행정명령인 청결유지명령서를 발부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므로 위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됨.

#### □ 결 론 (심의해소)

신청인의 신청취지와 피 신청인의 주장 그리고 사실관계 등을 살피건대, 위와 같이 화성시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에서 위 부지를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방치된 폐기물 처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안전휀스 설치, 안내문 게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청결유지명령서를 2016.11.10. 발부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므로 위 민원을 종결하고자 함.

## 26.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부당

### 1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화성시 반송동 ㉠㉠-㉡번지에 신청인이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는데, 이로 인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아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취소 요청
박 종 풍	

### 2 조사내용

#### □ 신청 취지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번지 대지 228.8㎡는 실 소유자가 신청인 외 3인이나 2008.7.22. 신청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여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명의신탁)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니 취소 바람.

#### □ 피신청인의 주장

도봉세무서로부터 통보되어 온 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공동명의인으로 지분등기시 등기절차 및 매매의 어려움으로 신청인 단독 명의로 등기한 사항으로 토지매입시 대금지급 및 토지 매도시 그 매각대금을 지분대로 나눠 간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과징금부과처분 정당함. 또한 신청인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에서도 기각 결정. 한편 이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 현재 2심 진행 중인 사안.

#### □ 사실관계

- 2014.9.12. 도봉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료 통보(명의수탁자:장영자.지분3/4 명의신탁자: ○○○ 지분1/4, ●●●지 분1/4, 신청인 지분1/4, 부동산, 화성시 반송동 ㉠㉠-㉡ 228.8㎡,2008.7.22. 신청인 단독소유로 등기) 받음
- 2015.1.8.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사전예고 통보
- 2015.3.31.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외 2인(각12,240,800원)]
- 2015.4.1. 부동산실명법 위반 고발, 동년 5.11.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기소유예)
- 2015.7.2. 행정심판 청구
- 2015.10.21. 행정심판 재결(청구 기각)
- 2016.3.14. 행정소송 제기

- 2016.9.6. 행정소송 원고 패소 판결
- 2016.9.27. 항소 제기(2심 계류 중)

### ③ 조사결과

#### □ 판 단

본 건의 경우 ‘16.10.18. 민원 접수 후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행정소송 2심에 계류 중인 사실을 알았음으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22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실관계 등 내용 검토 전에 각하하는 것이 타당.

#### □ 결 론 (기각)

신청인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항소 제기하여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사안으로 위 조례 제2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민원 기각 종결 처리 함.

## 27. 도로 방음벽 높이 변경 요청

### ①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관련 방음벽 높이가 낮아 소음 및 진동 등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니 이의 변경설치 요청
박 종 풍	

### ② 조사내용

#### □ 신청 취지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문호교 부근에 위치한 ●●교회 인접 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관련 방음벽 설치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높이가 2~3미터에 불과해 도로개통 시 소음 및 진동, 분진 등의 피해발생이 예상되므로 방음벽 높이를 5~7미터로 변경하여 설치해 줄 것을 요청.

#### □ 피신청인의 주장

- 동서진입도로 2공구 STA 5+600 매송방면 방음벽의 높이 및 연장 추가설치 요구.
- 2016.10.25. ●●교회 방음벽 설치 관련 1차 면담.
  - 당초 설계의 높이 및 연장 등 설명하였고 신청인이 7m 이상 높이를 요구하였으나 불가함을 설명
- 2016.10.31. ●●교회 방음벽 설치 관련 2차 면담.
  - 교회건물 인접 구간은 5m 방음벽 설치 협의 완료

#### □ 사실관계

- 동서진입도로 방음벽은 환경영향평가에 의거 설계되었으며 동 구간은 당초 높이 2m, 연장 60m로 계획됨.

### ③ 조사결과

#### □ 결 론 (심의해소)

-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에서 2차 면담시인 2016.10.31. 신청인에게 변경 계획안(방음벽 3m~5m, 추가 연장 80m)을 제시하여 상호 원만히 협의되고 민원이 해소되었기에 본 민원을 종결함.

## 28.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관련 이용불편 시정 요청

### ①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관련 대리신청 시 이용불편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시정 요청
박 종 풍	

### ② 조사내용

#### □ 신청 취지

신청인은 2016.11.11. 장안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산업팀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관련 당사자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 처리하려고 했는데, 2016.06.부터 화성시 내부규정에 의거 대리 신청은 불가하다고 안내를 받아 관련 규정 확인을 요청했으나 담당자가 당일 부재중이라 바로 확인을 못했고 이에 2016.11.14.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상기 규정 확인을 재차 요청했으나 직접 방문을 해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 관련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적 태도와 관련 규정으로 인한 이용불편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시정 요청.

#### □ 피신청인의 주장

-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신청 시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 하도록 하였음.
- 특히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심사 시 농지여건 및 농기계 등의 수급도 검토되어야 하지만, 소유자의 신체조건, 노동력 확보방안, 영농계획 등의 실현가능성 등 사람에 대한 자격심사가 매우 중요하다 보고 가급적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심사를 받으라는 취지에서 업무처리 요령을 시달한 것이며 본인이 아니면 민원접수를 거부하라고 한 것은 아님.
-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를 소유할 권한이 생기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행정사항이 따르는 바, 헌법 제121조, 농지법 제6조, 제8조, 제10조 등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농지취득 후 자경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사항을 사전 예방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침을 시달하여 발급기관 자체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한 지침임.

□ 사실관계

■ 민원처리 경위

일 시	내 용
2016.11.11.(금) 17:50	- 농지취득 담당자 출장관계로 다른 직원이 민원인 응대 - 법률사무소 직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농지취득 담당자와 상담 후 요구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함을 안내
2016.11.11.(금) 18:10	- 농지취득 자격증명 관련 사후원상 복구계획서 제출 필지 (장안면 장안리 ㉞㉞번지) 현장 확인 후 현장에서 퇴근
2016.11.14.(월) 09:00	- 법률사무소 직원과 농지취득 자격증명 위임 관련 유선통화
2016.11.14.(월) 10:00	- 농정과 담당 주무관에게 관련 지침 문의 “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관련 업무처리 요령 시달 [농정과-13815(2016.6.24.)] ”
2016.11.16.(수)	-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인 및 법률사무소 직원 2명 내방)

■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업무처리 요령 보완 시달 [농정과-24133(2016.11.18.)]

☞ 농지취득 자격증명 관련 민원접수 및 사전심사 등에 대하여 업무처리 시 민원인과의 의견대립이 없도록 조치토록 함.

■ 국민신문고 이첩민원 처리 결과 [감사관-6318(2016.11.28.)]

☞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관련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조치함.

③ 조사결과

□ 결 론 (기각)

본 건 장안면 장안리 ㉞㉞번지에 대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2016.11.16. 기 발급되었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은 발급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신청인의 신체조건 등 본인 면담이 필수적이라 대리인으로는 심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본인이 신청하도록 한 업무요령 등이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또한 같은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여 화성시 감사관-6317(2016.11.28.) 기 조치되었음으로 종결 처리함.

## 29. 동탄보건지소 이용불편 호소 및 모자보건실 개선 요청

### ①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철분제 수령을 위해 동탄 보건지소를 방문하였는데, 이용불편 호소 및 모자보건실 개선 요청
김진환	

### ② 조사내용

#### □ 신청 취지

민원인은 임신 5개월 차로서 동탄 보건지소에 철분제를 구입하기 위해 동탄 보건지소를 방문하였으나 산모수첩을 지참하지 않았다하여 수령거부 되었으며 모자보건실 이용에도 불편함이 있어 직원들의 친절과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함.

#### □ 피신청인의 주장

가. 철분제 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신 초 12주 이내 모자보건지원실에 주소가 화성시로 되어 있는 임산부가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록하면 임신 기 초검사 및 엽산제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록 이후 철분제 최대 5회 지급 가능)

나. 임신기간 중 분만예정일 변경, 주소지 변동 및 개인정보 확인 차 매 방문시 확인이 필요하므로 산모 수첩과 신분증을 확인한 후 철분제를 지급해 왔기에 위 신청인은 산모 수첩 미지참으로 인해 수령거부 처리되었음.

다. 모자보건지원실에는 기간제 근로자 1인과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1인(환경부에서 지원하는 대규모 코호트 사업인력으로 2017.01.까지 한시적 파견 인력임) 등 총 2인이 근무 중임.

#### □ 사실관계

가. 관련 담당자와 유선 통화로 확인한 바, 임산부에 엽산제 및 철분제 등을 지급하는 것은 「건강한 아기 행복한 엄마 지원사업」 일환으로 시에서 전액지원 되는 사업이며 위 신청인은 2016.8.26. 임신 초기에 지급되는 엽산제 2통을 수령하였고 이후 2016.11.22. 산모수첩 미지참으로 수령 거부되었음.

※ 보건지소 임신부 등록 개인별 엽산제·철분제 지급 기준

구 분	엽산제	철분제
임신 12주 이내	2통	-
임신 16주 이상	-	최대 5통

나.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2016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사업지침) 등을 살펴본 바, 산모수첩 미지참으로 철분제 등을 수령거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고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화성시 보건소에서도 최초 임신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분증 제시만으로 철분제 및 엽산제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 이에 피신청인은 2016.11.30. 의견회신 내용에 향후에는 보건지소 임신부 등록자에 한해 신분증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신청인이 모자보건지원실 방문 시 이용환경이 불편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은 관계 직원에 대해 주 1회 기간제 근로자 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임을 통보해 음.

라. 한편, 2016.12.09. 동탄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보건지소장(○○○)을 면담하면서 당해 민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보건지소장도 보건지소를 방문하는 신청인을 포함한 임신부 등 시민들이 향후 보건지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계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친절교육 실시 및 임신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분증 제시만으로 철분제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언급하였음.

### ③ 조사결과

#### □ 결 론 (심의해소)

신청 취지 및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이 보건지소 이용 불편에 대해 개선점을 바로 인지하고 즉시 시정 조치계획을 2016.11.30. 통보하였기에 이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당해 민원이 해소되었으므로 본 민원을 종결함.

### 30. 상수도 관로 재설치 요청

#### ① 민원요지

주관 읍부즈만	상수도 관로를 시공사에서 임의로 설치하여 기 매설된 정화조에 영향을 주어 이의 재설치를 요구
조 증 익	

#### ② 조사내용

##### □ 신청 취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㉞㉞번지 신청인의 집에 2015년 상수도 관로 인입공사 시 신청인이 입회하여 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입회하여 하지 않고 시공사에서 임의로 설치하여 기 매설된 정화조에 영향을 주는 바, 상수도 관로를 재설치 해줄 것을 요청.

##### □ 피신청인의 주장

화성시 맑은물 사업소에서는 2015년 12월 신청인의 급수공사 신청에 의해서 대행업체가 현장에 임하여 신청인의 입회하여 계량기 등 위치를 선정하고 급수공사 설계 후에 비용을 부담하고 시공되어 아무런 절차 등의 하자 없이 설치 완료되어 사용하여 오다가, 금년도에 신청인의 집 정화조 재설치 문제로 관로를 끊고 다시 설치를 해야 할 문제가 있어 비용이 다시 소요되는 부담이 있는 바,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공토록 함.

##### □ 사실관계

가.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에는 2015년 신청인의 마을에 상수도 메인관로 사업을 완료하고, 신청인이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 동년 12월 대행업체가 현장답사를 하여 계량기 등의 위치를 선정하고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하여 오다가

나. 신청인이 2016년 12월 정화조 공사를 다시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상수도관이 정화조 옆을 통과 지장을 주어 부득이 상수도관을 끊고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관계로 상수도 급수 공사비를 다시 부담해야 하는 바 비용부담이 억울하다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다.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신청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행업체에 최소한의 공사비(80만원)로 다시 급수공사를 시공케 함으로써 신청인이 이를 수용하고 부담하여 공사가 완료됨.

### ③ 조사결과

#### □ 판 단

신청인이 설치한 상수도는 벌써 1년 전 급수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급수되었으며, 당시 신청인이 주장한 상수도 설치 시 입회하에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으면 당시에 주장하여야 하나 1년이 지난 지금 정화조 공사로 인한 상수도 재설치 소요비용이 발생되어 민원을 제기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 결 론 (기각)

신청인의 신청취지와 피신청인의 주장 그리고 사실관계 등을 살피건대, 위와 같이 2015년 상수도 설치 시 대행업체가 시공 당시 신청인의 입회하에 설치하지 않아 정화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아무런 하자 없이 시공되어 현재까지 상수도를 사용하여 오다가 정화조 공사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하자 신청인이 상수도를 비용 없이 재설치 해 달라는 요구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기각 종결하고자 함.

# 제 6 부

## 부 록





## 제6부 부 록

### 1. 언론보도 등 홍보사항

#### (1) 기호일보 (2016.02.25.)

🏠 > 뉴스 > 지역 > 경기

## 화성 시민옴부즈맨 성공적 활약

행정민원 총 95건 해결 성과 전직 감사원·경찰관 등 참여

조홍복 기자 hbj@kihoilbo.co.kr 2016년 02월 25일 목요일 제9면

댓글 0        

폰트 + -   

지난해 6월 1일 야심차게 출범한 ‘화성시 시민옴부즈맨’이 당초의 설립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민옴부즈맨은 행정의 불허가 반려 사안을 비롯해 관내 도로 확·포장에 따른 지장물 보상 문제, 골프장 건설에 따른 영농민의 통행권 보장 요구와 같은 75건의 고충민원과 20여 건의 생활민원 등 총 95건의 굵직굵직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민옴부즈맨이란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위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을 때 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제도화한 행정통제 수단으로, 행정이 법에 따라 잘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행정관료들의 직권남용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감찰하게 하는 일종의 행정감찰 제도를 말한다.

화성시 시민옴부즈맨은 지난해 5월 시의회의 임명 동의를 거쳐 감사원 출신의 박종풍 씨, 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김진환 씨, 화성서부경찰서 경무과장을 지낸 조중익 씨 등 전문성과 사회적 지위가 있는 3명의 인사가 위촉됐으며, 여기에 시에서 파견된 박대현 주무관 등 4명으로 구성돼 시청 본관 1층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개소 초기에는 옴부즈맨의 기능과 역할을 시민들은 물론 시 직원들도 정확히 알지 못해 제 기능을 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하나둘 찾는 시민들의 고충민원이 빠른 시간 내 해결되면서 이제 이곳은 화성시민들의 민원 해결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편, 일부 민원인들은 시민옴부즈맨을 찾는 민원인과 처리 업무에 비해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 상담할 때마다 불편함은 물론 대기할 장소조차 없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시의 옴부즈맨 확대 운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화성=조홍복 기자 hbj@kihoilbo.co.kr

(2) 화성저널 (2016.03.25.)

## 화성시 최초의 시민 옴부즈만 3인

집행부-시민 중재자로 고충민원 전담 해결

유석현 기자 ☎ | 기사입력 2016/03/25 [13:14]

인구 100만 대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화성시는 개발과 인구유입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제3의 중립적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6월1일부터 화성시는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화성시 최초의 시민 옴부즈만 3인을 만나봤다.

###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뜻으로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또는 비사법적 시민권의 보호제도를 말한다.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3인

- ▲박종풍 대표 옴부즈만은 감사원 공공감사국 부이사관, (재)국가관세정보망 연합회 상임감사를 역임했으며 경력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근거를 마련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 ▲김진환 옴부즈만은 화성시의회 부의장 및 화성시의회 의장을 맡은 경력을 바탕으로 주로 행정부와 시민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다.
- ▲조중익 옴부즈만은 화성서부경찰서 경무과장, 화성동부경찰서 지구대장(동탄, 안용) 등을 지냈으며 민원 조사 및 분석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 화성시의 시민 해결사 옴부즈만을 아시나요?

시민 옴부즈만 3인방 박종풍, 조중익, 김진환씨 대변자 역할 '특특'

박수철 기자 scp@kyeonggi.com | 노출승인 2016년 05월 11일 11:23 | 발행일 2016년 05월 12일 목요일 | 제0면

댓글 0



폰트 + - ㄹ ㄴ ㄷ



"해묵은 고충민원에 대한 해결 실마리가 보일 때 가장 보람있습니다."

화성시와 시민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제 3자의 입장에서 처리하는 '시민 해결사'들이 있다. 바로 화성시 시민 옴부즈만 3인방인 박종풍·조중익·김진환씨다.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대리인(Agent)이란 뜻이다.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일 화성시의 첫 시민옴부즈만으로 임명됐다. 당시 화성시는 도시개발과 인구 유입에 따라 급증하는 고충민원을 행정기관만이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경기도내 지자체 중 4번째로 시민옴부즈만제를 도입했다.

폭넓은 행정지식을 바탕으로 시민과 잘 조화할 수 있는 인물들을 뽑았다.

(4) 경기중앙신문 (2016.05.31.)



세계속의 경기도  
Global Inspiration

빠르고 정확한 뉴스

# 경기중앙신문

www.ggiapp.com

2016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IN수원

2016. 5. 10(화) ~ 5. 22(일)

수원세종관 및 수원화성 일원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연예

갤러리

포토

비즈니스

기사정보

인기 지방선거, 교육감
 검색
지세히

홈 > 뉴스 > 사회 뒤로가기 >

메일보내기
오류신고
프린트
추가
가

## 민원고충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화성시 옴부즈만

2016년 06월 31일 (화) 16:09:37
김승원 기자 kimsonet@korea.com

g
f
t
o
n
s
y

**[경기중앙신문]**



경기 화성시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 옴부즈만이 있어 민원인들에게 호응을 얻고있다.

시민 옴부즈만은 2015년 6월1일에 설립 됐으며, 민원인 들과 집행부 들 사이에 소통을 연결해 주며 민원인들의 불만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시민 옴부즈만 위원들은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와 시 의회 동의를 거쳐 위촉 했으며, 행정에 밝은 위원 3명과 시청 감사담당 직원1명으로 구성 돼 있다.

▲화성시 옴부즈만,김진환 위원

시민 옴부즈만은 1년동안 100여건의 이상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처리 했으며, 찾아온 민원인들의 상담을 통해 해결한 것도 80여건이 넘는다.

지난해 접수된 군통신공사 관련해 공사대금 직불지급액 5천여만원을 업체와의 합의 해 처리 해 눈길을 끌었으며, 올해 봉담 와우리부근과 정남C간 도로확장 계획을 집행부와 민원인 과의 충돌을 조정 합의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지난 1년간 시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김진환 위원은 “민원인들이 부담 하거나 일 처리가 어려워 사무실을 찾아오지만,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와 민원인들과의 중간 역할을 해 문제를 해결 해 나가 민원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 내는데 도움이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ZION** 시온여성병원

women's hospital

경기중앙신문 실시간뉴스    여수출상담 희망 · 수원시, 세계화장실협회, 캄보디아바 · [수원시뉴스]건강취약계층 상주 시설

- 130 -

(5) 홍보 리플렛 배포 (2016.09.05.)

### 기존 행정구제 제도와의 비교

구분	읍부즈만	행정심판	행정소송
목적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불만·부담을 받은 경우 권익구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행정감독	행정작용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익구제
성격	비정송제도	정송제도	정송제도
기간	제한없음	행정처분후 90일 이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범위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 부작위·불편·부당 등 포괄적	행정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	행정의 적법성 유무 (세관관·감찰·남용 포함)
접근성	접근성 높음	행정소송보다는 접근이 용이	접근성이 매우 어려움
비용	무료	행정소송보다는 경제적 부담은 적은 편	경제적 부담이 높음

18274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Tel. 031-369-3227, 3704 / Fax. 031-369-1788

The Way to Better Living  
같이 열리는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www.hscity.go.kr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시민의 권익을 함께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

## 사람이 먼저인 화성

### 익을함이 없는 화성!

66

화성시민의 고통을 귀담아 들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 시민옴부즈만 소개

옴부즈만이란 무엇인가?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뜻이며,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통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또는 비사법적 시민권의 보호제도입니다.

### 옴부즈만의 주요 특징

- 중립성**: 행정 및 일반부처부터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집니다.
- 포괄성**: 광범한 분야에 걸친 모든 부처의 과실, 무응답, 지연 등 광범위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요청·권고**: 행정작용 직접 취소·변경하는 권한이 없으며,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 접근용이성**: 행정소송 행정관 등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고충민원 해결

고충민원이란 무엇인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고충민원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모사전송 및 우편: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1층 시민옴부즈만실
  - 인터넷: 시민옴부즈만 게시판에서 신청 가능
    - 주소: www.hscity.go.kr
    - 위치: 홈 > 시민참여 > 시민옴부즈만 > 고충민원 신청
  - 전화문의: 031-369-3227, 3704 (팩스 031-369-1788)

### 처리 절차

- 고충민원 신청: 방문, 모사전송, 우편 및 인터넷 등으로 신청
- 인원분류: 기재사항 및 내용검토, 단순민원 부서 이첩
- 조사여부 결정: 운영회의에서 조사여부 및 주관 옴부즈만 선정,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조사개시 통보
- 조사 실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후 60일 이내 조사 완료
- 조사결과 확정: 운영회의에서 조사결과 심의 의결
- 조사결과 통지: 신청인 관계기관에 3일 이내 통지

### 고충 민원 사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반복적인 고충민원, 아직도 해결 안되셨나요?  
화성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로 인해 불편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신청 관련 불허가·반려처분 시 그 사유에 위법·부당이 있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과태료 및 취득세 부과 등에 위법·부당이 있는 경우  
무허가 건물 철거 등 행정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의해 권익침해를 당한 경우

(6) 시 홈페이지 홍보배너 및 BIS 표출 (1차: 2016.05.16.~06.17. / 2차: 2016.11.18.~12.16.)

[화성시 날씨정보 / 화성시 대기환경정보](#)

[공직 / 선거 비리신고 자세히보기](#)

[모바일 홈페이지](#)

[메일](#)

[ENGLISH](#)

[中 國 語](#)

[日 本 語](#)

[화면크기](#)

The Way to Better Living  
같이 열리는 화성시 **사람이 먼저**의 힘

[회원가입](#)

[로그인](#)

[시민참여](#)

[전자민원](#)

[화성시소개](#)

[행정정보](#)

[문화관광](#)

[사회적 공동체](#)

[분야별정보](#)

[정보공개](#)

[전체메뉴 보기](#)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시민의 고충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

옴부즈만은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시민권의 보호제도입니다.

[시정알림방](#)

[보도자료](#)

[주간시정](#)

[입법예고](#)

[입찰안내](#)

[공고/고시](#)

[채용정보](#)

- 양노3리 경로당 신축공사(민간자본보조) 입찰공고 2016.05.23
- 원평2리 경로당 신축공사(민간자본보조) 입찰 공고 2016.05.03
- 2016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전자입찰 공고 2016.03.31
- 비봉가압장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용역 입찰 공고(경기-전기) 2016.03.25
- 2016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변호판(단기,특재) 제작(단기계약)구입 2016.03.24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 비대위, 지방재정계약 철회 촉구  
2016-05-23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 비대위, '제17회 화성 호 마...'  
2016-05-22

**동네조폭  
조폭 피해사례  
신고해 주세요**

절대 비밀보장 합니다.  
[자세히 보기](#)

**안녕하세요  
채인석입니다**

- 인사말
- 열린시장 게시판
- 시장방침
- 공역사업
- Live인식C
- 채인석 핫-라인 (부채공직자 신고)

**자주 찾는 정보**

직원찾기

조직도

민원상담신청

콜센터

자치법규

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화성에서  
는 TV

화성시 의회

충무공상소

항공사진

민원 24

부대-공익

교육포털

**시민 맞춤형  
정보제공신청**

[바로가기](#)

**제부도배달**

2016-05-25(수)  
8:45 ~ 17:17  
20:13 ~ 5:05

관련사이트  
Link site

[+ 사업소](#)

[+ 부서별 홈페이지](#)

[+ 읍/면/동사무소](#)

[+ 화성시 패밀리 사이트](#)

# 화성시시민옴부즈만

시민의  
고충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고충민원 신청안내  
방문: 화성시청 시민옴부즈만실(1층)  
전화문의: 031-369-3104, 3227

- 132 -

## (7) 화성소식지를 통한 시민옴부즈만 홍보



### 고충민원 해결 위한 '시민 옴부즈만' 운영

화성시에서는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시민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만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대리인이라는 뜻이다.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서,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시민 옴부즈만은 시와 산하기관, 시의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단체·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발생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해결한다. 또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하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 시민 옴부즈만의 기능

- 시민권리 구제 기능
- 행정의 민주적 통제 기능
-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기능
- 행정개혁 기능
-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 기능

운영장소 화성시청 본관1층 시민옴부즈만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369-1788)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화성시 홈페이지 시민옴부즈만 게시판에서 신청 가능  
고충민원 처리기한 60일

문의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실 031-369-3704, 3227

### 대설대비 국민행동요령

#### 가정에서는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을 내가 치운다.
- 내 집 주변 빙판길에는 영화갑옷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한다.
-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을 삼간다.
- 차량, 대문, 지붕, 옥상 위에 쌓인 눈을 치운다.
- 넓은 가옥은 안전 점검을 하여 붕괴 사고를 예방한다.
- 고립 지역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 농촌산간에서는

- 병과가 우려되는 농작물 재배시설은 빙판대 보강 또는 비닐 필기 등으로 보호한다.
- (※ 눈이 20cm 정도 쌓이면 전깃줄이 끊어지고, 소나무 가지가 부러진다.)
- 비닐 필기 작업 시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한다.
- 비닐하우스에 친 차광막 등은 사전에 제거하여 피해를 줄인다.
- 직물을 재배하지 않는 빈 비닐하우스는 비닐을 걷어낸다.
- 고립 지역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 해안에서는

- 각종 선박 등을 대비, 임출항을 통제하고 결박 조치를 한다.
- 수산 중·양식 시설은 어류 등이 통사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한다.
- 주민, 낚시꾼, 관광객 등 해안 접근을 막는다.
- 해안도로 운행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안전장구 부착 후 통행 한다.

#### 보행자는

- 가급적 외출을 자제한다.
- 외출 시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

### 육아가 재밌어지는 아이러브맘카페 프로그램

영유아기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향남 아이러브맘카페에서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세계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수업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프로그램 해당 요일과 시간을 체크하면 이용할 수 있다.

아이러브맘카페에서는 보육전문요원이 상주하는 가운데 놀이 프로그램, 육아상담, 다양한 보육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곳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화성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이다.

장 소 자유놀이실 이용신청 인터넷 접수(<http://www.hsicare.or.kr>) 선착순 마감



### 시민에게 시정참여의 기회를! '정책제안 공모'

화성시에서는 10월 11일까지 정책제안을 공모한다. 로써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화성시 정책을 이번 공모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넓히고,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장려·계발해 시정에 반영함

기 간 9월 12일 ~ 10월 11일 대 상 화성시민(화성시 소재 직장인, 학생 포함)  
공모방법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우편, 방문  
- 국민신문고 : 국민행복제안 - 공모제안 - 2016 화성시 정책제안 공모  
- 우편/방문 : 화성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읍·면·동 주민센터  
공모주제 화성시 6대 역점시책 중점 추진방향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

6대 역점시책	중점 추진방향
따뜻한 성장, 희망을 주는 도시	사회적 공동체 활성화, 좋은 일자리 창출지원, 농축수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꿀벌과 울림, 가보고 싶은 도시	차별화된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예술-체육 기반 조성, 관광 인프라 구축
나눔과 배려, 소외가 없는 도시	복지기반시설 확대, 맞춤형 복지 제공, 안심보육 환경 조성
생각이 크는, 배움이 좋은 도시	창의지성교육 도시 정착, 미래 교육 환경 조성, 평생학습도시 실현, 청소년 역량 강화
소통과 믿음, 안전한 행복 도시	참여행정 구현, 안전도시 기반 구축, 쾌적한 환경, 준비된 미래 도시
쾌적한 환경, 준비된 미래 도시	생활이 편리한 교통 조성, 쾌적한 도시환경 마련, 100만 대도시 도시기반체계 구축

대상내용 최고 300만원(화성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따라 장안등급별 차등 지급  
수상자 발표 시 홈페이지 내 공지, 개별통지(12월)

문의 화성시 기획예산담당관 031-369-3199

### 동탄3동 한마음 축제

문화를 즐기며 계절의 계절, 동탄3동에서 풍성한 문화공연으로 이웃과 어우러지는 '한마음 축제'를 준비했다. 대로 꾸며지며, '안성 남사당 배우들이 풍물단이 출연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다.

### 고충민원 해결해 드려요 '시민 옴부즈만'

고충민원 어떻게 해결할까? 시에서 운영 중인 시민 옴부즈만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옴부즈만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대리인이라는 뜻으로,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서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화성시의 시민 옴부즈만은 시와 산하기관,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발생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해결한다. 또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하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 시민 옴부즈만의 기능

- 시민권리 구제 기능
- 행정의 민주적 통제 기능
-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기능
- 행정개혁 기능
-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 기능

운영장소 화성시청 본관1층 시민옴부즈만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031-369-1788)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화성시 홈페이지 시민옴부즈만 게시판에서 신청 가능  
고충민원 처리기한 60일

문의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실 031-369-3704, 3227

(8) 타시군 우리시 옴부즈만 벤치마킹



① 남양주시 옴부즈만 방문 (2016.01.25.)



② 여주시 직원 방문 (2016.09.01.)

## 2.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3. 12. 31 조례 제 895호  
일부개정 2015. 2. 27 조례 제 981호  
일부개정 2017. 1. 9 조례 제1186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소속기관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제33조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2. “소속기관등”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소속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사회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신청인”이란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2장 옴부즈만의 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개정 2017. 1. 9)

② 옴부즈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하되,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2017. 1. 9)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옴부즈만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1. 9)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신설 2017. 1. 9)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② 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 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해제되지 아니한다.

1. 제4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제11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때
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제6조(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옴부즈만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기 관할을 정한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 주민들의 권익 보호·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에 대한 조사·처리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가 옴부즈만에게 위임·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3.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4.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5. 기타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전문개정 2017. 1. 9]

**제7조(옴부즈만의 책무)**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처리에 있어 공정하고도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그 직위를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대표옴부즈만)** ① 옴부즈만이 다수인 경우에 대표옴부즈만과 부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한다.

②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7. 1. 9]

**제9조(회의)** ① 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하며,

대표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재적옴부즈만이 1명일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 1. 9)

1. 의견표명,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대표옴부즈만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의 심의·의결은 재적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옴부즈만이 2명일 경우에는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무 관할)** 옴부즈만이 제6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분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제11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11조의2(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 ② 옴부즈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옴부즈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옴부즈만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선임을 위하여 화성시 옴부즈만추천위원회 (이하 “추천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옴부즈만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7. 1. 9)
- ③ 시장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1.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2. 지역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3. 지역의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④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옴부즈만 추천

대상자를 의결하며, 복수로 추천도 가능하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옴부즈만 상호간의 관계)** 옴부즈만은 직무범위를 각기 달리하여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자문기구)**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17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5.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관계 소속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소속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9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구체적 증거나 사실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할 경우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9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소속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소속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2017. 1. 9)

**제22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17. 1. 9)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서 정한 직무 관할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6.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23조(합의권고 및 조정)**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을 할 수 있다.

**제24조(시정의 권고와 의견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관계 소속기관등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관계 소속기관등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5조(제도개선의 권고와 의견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및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6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그 소속기관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관계 소속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결정의 통지)**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의 의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소속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과 점검)** 옴부즈만은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다.

**제31조(운영상황의 보고와 공표 등)**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9)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2조(국민권익위원회와의 관계)** ① 고충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옴부즈만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간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또는 중앙차원의 법·정책·제도 등에 관한 사안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제4장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

**제33조(사무국)**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대표옴부즈만이 겸직하고 사무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 ③ 읍부즈만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파견 또는 채용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읍부즈만의 활동과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시장은 읍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27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9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의 진행)** ①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회의는 대표옴부즈만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하며,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간사의 사무는 파견 공무원이 수행한다.

③ 의안의 제안 설명은 조사에 참여한 옴부즈만이 한다.

④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 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은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고충민원의 심의를 의결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의결서의 경정)** ① 옴부즈만은 제2조제5항에 따른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결서 경정이 있는 때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옴부즈만의 기피·회피)** ① 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피신청을 받은 옴부즈만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대표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대표옴부즈만이 한다.

④ 옴부즈만이 조례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표옴부즈만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위원회)**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자문기구로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대표옴부즈만이 되며, 위원은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100분의 60 이상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중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

2.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⑦ 옴부즈만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5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⑧ 회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⑨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등)**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읍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례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읍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서의 보완)** ① 읍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읍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읍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읍부즈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9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읍부즈만은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② 읍부즈만은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합의 권고 및 조정)**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합의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읍부즈만이 이를 확인한다.

- ② 읍부즈만은 조정을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정회의는 읍부즈만이 주재한다.
- ③ 읍부즈만은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관계 부서 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조정회의에 참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신청인 및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따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시정의 권고와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시정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관계 소속기관 등의 회신기한 등 읍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조례 제25조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와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제도·시책 등의 현황 및 문제점
2. 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관계 소속기관 등의 회신기한 등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은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②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은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옴부즈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실태의 확인과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① 옴부즈만은 조례 제30조에 따른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과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이 되는 관계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소속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조례 제31조에 따른 옴부즈만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이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소속기관 등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사무국의 업무)** ①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안내·접수 및 민원 조사·처리 지원
2. 옴부즈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옴부즈만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고충민원 편람·서식 등의 비치
5. 그밖에 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② 옴부즈만 운영 사무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이 부재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옴부즈만이 대행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시장은 고충민원의 처리에 적합한 공무원 또는 직원을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파견 후 복귀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보직부여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옴부즈만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가점을 부여하는 등 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제17조(활동비 지원)** 옴부즈만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의 지급기준은 4급 상당 공무원 연봉의 50퍼센트 수

준으로 지급한다.

**제18조(공인)** ① ombudsman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기록의 관리)** ① ombudsman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 처리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 준영구
2. 심의·의결 관련문서 : 5년
3. 일반문서 : 3년

**제20조(정보의 공개)** 민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등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ombudsman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은 생략

## 4.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세칙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운영전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활동비”란 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2. “활동비월액”이란 활동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써 4급 상당 공무원 평균 연봉의 2분의 1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활동기간”이란 옴부즈만이 위촉된 날부터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제2장 근무 규정

**제3조(기본자세)** ① 옴부즈만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일 및 근무시간)** ① 옴부즈만의 1주간 근무시간은 20시간으로 하며, 평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옴부즈만의 1일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09:00 ~ 18:00) 내에서 지정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옴부즈만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 지정은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대표옴부즈만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운영회의가 개최되는 월요일에는 합동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근무상황부의 관리)** ① 옴부즈만의 근무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제6조(신분증 제시)** 옴부즈만은 「화성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분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출장)** ① 옴부즈만은 출장 중에는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옴부즈만 근무일(근무시간)에 다른 옴부즈만이 부재중인 경우 출장을 지양하고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에 주력해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관내·관외출장을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읍부즈만은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읍부즈만이 임기만료 또는 해촉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후임자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사무의 인계인수는 「화성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연락체계의 유지)** ① 읍부즈만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읍부즈만의 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제11조(대표읍부즈만 선임기간)** 조례 제8조에 따라 호선된 대표 읍부즈만의 선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 3 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12조(고충민원 상담과 신청)** ① 읍부즈만은 고충민원 상담시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② 고충민원 신청은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7조제2항 단서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문맹이나 문서 이해능력의 부족 등으로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이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다수인 관련 민원)** “다수인”이란 5명 이상을 말한다. 다만, 다수인 관련 민원의 신청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서로 다른 2 이상의 고충민원을 동시에 신청한 때에는 이를 고충민원별로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분할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신청서의 보완)** ① 읍부즈만은 「화성시 시민읍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문서·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2회에 걸쳐 보완을 하지 아니하여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종결처리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고충민원기록표)** 고충민원을 접수한 읍부즈만은 민원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기록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17조(신청인의 권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옴부즈만은 민원의 조사에 대한 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후에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신청의 취하)** ① 옴부즈만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청인이 고충민원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그 고충민원을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면으로 취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기록으로 남겨 처리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고충민원을 취하하여 고충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본을 고충민원기록표와 함께 편철하여야 한다.

**제19조(처리의 원칙)** ① 진행 중인 2 이상의 민원이 같은 내용일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관계 행정기관 등이 고충민원 처리과정에 직접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고충민원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여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조)** 옴부즈만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옴부즈만에 동일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안 즉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당해 고충민원의 조사·처리방침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의 종결 등)** ① 조례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옴부즈만에서 각하한 민원을 그 사유의 해소없이 다시 제기한 경우
2. 옴부즈만에서 이미 처리한 민원과 동일한 민원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이첩된 경우
3. 신청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4. 법령의 해석이나 행정절차 등의 관한 질의
5.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없이 종결하거나 그 민원사항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2.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3. 시행규칙 제9조에 해당되는 경우

③ 옴부즈만은 제2항과 같이 처리할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처리기간의 연장)** ① 조례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정의 의뢰가 필요한 경우
2. 신청인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처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옴부즈만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회의 심의 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처리기간의 계산)**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조사방법)** ① 고충민원의 조사는 조례 제20조제1항의 각 호에 의하되, 당사자 주장내용,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해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고충민원 신청서의 사본을 송달하고 설명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라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이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독촉을 할 수 있다.

④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의 의뢰는 감정인 또는 감정기관,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출석조사)** 옴부즈만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26조(실지조사)** ① 옴부즈만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거나 현지에서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들을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신청인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내용·일시·장소 등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진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진술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합의 및 조정)** ①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서가 제출되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이 신청인의 민원을 사실상 수용한 경우에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합의서 또는 조정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신청인과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합의에 참여한 옴부즈만인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사안에 대한 이행결과를 확인하고 사후관리카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결과 보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제29조(결정의 통지 등)**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3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계 행정기관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 ② 처리결과 통지는 문서로 하며 신청인이 원할 경우 인터넷·팩스도 가능하다.
- ③ 옴부즈만은 결정내용이 권고 또는 의견표명인 경우 의결서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제30조(재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에서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하거나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 ② 옴부즈만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후 운영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 ③ 재심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관계 소속기관에서 다시 재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대표옴부즈만 결재로 중지·종결 처리한다.

**제31조(처리결과 이행실태 사후관리)** ① 옴부즈만은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사안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서 통보한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사후관리카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옴부즈만은 매월 처리결과 이행실태 확인·점검하고 필요시 이행촉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2조(운영상황의 보고와 공표 등)** ① 옴부즈만은 조례 제31조제1항에 의거 매년 12월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사항 및 운영결과를 집계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운영상황은 공고하여야 한다.

## 제 4 장 운영회의

**제33조(운영회의 개최)** 고충민원 조사여부 결정 및 결정사항 심의·의결을 위하여 운영회의를 매주 월요일에 개최한다.

**제34조(조사여부 결정)**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여부를 결정한다.

- ② 고충민원 내용이 운영세칙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조사없이 종결처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제35조(주관 옴부즈만의 지정)** ① 조사심의를 필요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옴부즈만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주관 옴부즈만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옴부즈만의 소속·성명·연락처를 기재하고 조사실시를 통지해야 한다.

**제36조(심의·의결)**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대하여 결정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② 심의·의결 직후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결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에 의결에 참가한 옴부즈만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 ③ 옴부즈만은 심의·의결된 고충민원 결정사항을 신청인과 관계 행정기관에 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의 의결서를 통지해야 한다.
- ④ 옴부즈만은 재심의 사안에 대하여도 의결서를 작성하고 신청인과 관계 행정기관에 의결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 제 5 장 자문위원회

**제37조(자문위원 위촉)**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읍부즈만이 위촉한다.

1. 도시계획, 건축, 토목, 환경, 교통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도시계획, 건축, 토목, 환경, 교통 등의 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등으로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그 밖에 고충민원 처리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읍부즈만이 인정하는 자

**제38조(위촉해제)** 읍부즈만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임기만료 또는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자문위원회 참석 또는 개별자문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9조(회의소집)** ①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6항에 의거 심의할 안건이 있는 경우 대표 읍부즈만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개별자문)** 읍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위원에게 개별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특정 분야에 국한된 사항으로 자문위원회 개최가 불필요한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개별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1조(수당 등 지급)** 자문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개별자문을 수행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 6 장 사무국 운영지원

**제42조(활동비 지급기준)** ① 시행규칙 제17조 및 「화성시 시민읍부즈만 운영 세칙」 제3조 제2호의 “4급 상당 공무원 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에 따른 별표 33 중 4급(상당) 공무원 연봉한계액의 평균 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② 읍부즈만의 활동비는 활동비월액에 따라 지급하며, 월 실제 근무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경우 별표1에 따른 산식에 의거 지급한다.

**제43조(활동비 지급기관)** 읍부즈만의 활동비는 화성시에서 지급한다.

**제44조(활동비 지급방법)** ① 읍부즈만의 활동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활동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항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직접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활동비 지급일)** ① 활동비의 지급일은 매월 5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성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 날 지급한다.

③ 위촉해제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해제일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관리대장)** ①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관련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관련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7조(사무결재의 기준)** ① 읍부즈만의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읍부즈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결재기준은 별표2와 같다.

## 부 칙

이 세칙은 읍부즈만 운영회의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활동비 산식

※ 월 실제 근무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경우

<p>■ 활동비 월액 × ( 월 실제 근무시간 / 80 시간 )</p>
---

[별표 2]

### 사무결재 기준

단위사무	사무 처리내용	기안자		결재자	
		주무관	주 관 시민옴부즈만	사무국장 (대표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	일반민원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 이첩	○		○	
			○	(1인결재)	
	고충민원 신청의 보완 취하		○	(1인결재)	
	조사가 불필요한 민원인 경우, 조사의 중지·종결 (각하, 이송, 이첩)	○		○	
	조사실시 통지		○	(1인결재)	
	출석 및 실지조사 관련 참석요청		○	(1인결재)	
	처리기간 연장		○	(1인결재)	
	이해당사자간 조정 또는 합의		○	(1인결재)	
	필요시 자문위원회 개최		○	(1인결재)	
	고충민원 기각		○	(1인결재)	
	고충민원 조사결과 결정사항 통지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등)		○	(1인결재)	
	재심의 결정사항 통지		○	(1인결재)	
	처리결과 이행실태 관리			○	(1인결재)
		○		○	○
	감사의뢰		○	(1인결재)	
	운영상황 보고서 작성		○	○	
사무국 운영지원	옴부즈만 근무상황 관리	○		○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		○	

※ 별지 서식은 생략